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I)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010-10

www.mogef.go.kr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I)

2025.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I 권
차 례
 Contents

제1편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I. 청소년정책 현황 3
 II. 2025년도 사업 주요사항 11
 III. 2025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0

제2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I. 청소년정책위원회 69
 II.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70
 III.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74
 IV.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77
 V.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79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I. 청소년 참여 증진 89
 II.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48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91
 II.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241
 III. 청소년활동사업 표준 운영 277
 IV.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377
 V.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86
 VI.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408
 VII.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422



제1편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I. 청소년정책 현황	1
II. 2025년도 사업 주요사항	11
III. 2025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20

제2편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

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69
I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10
III.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67
IV. 청소년쉼터 운영	197
※ 청소년복지시설 참고자료 및 서식	301
V.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406
VI.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426
VII.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454
VIII.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515
IX.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83
X.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709
XI.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활용	768
XII.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787

제3편 청소년 보호사업

I.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867
II.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905
III.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970
IV.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981
V.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991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사업 담당과 및 연락처 〉

구 분	담 당 과	전 화 번 호
청소년 참여 증진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34 02-2100-6249(운영위)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7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정책과	02-2100-623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청소년활동사업 표준 운영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9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0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3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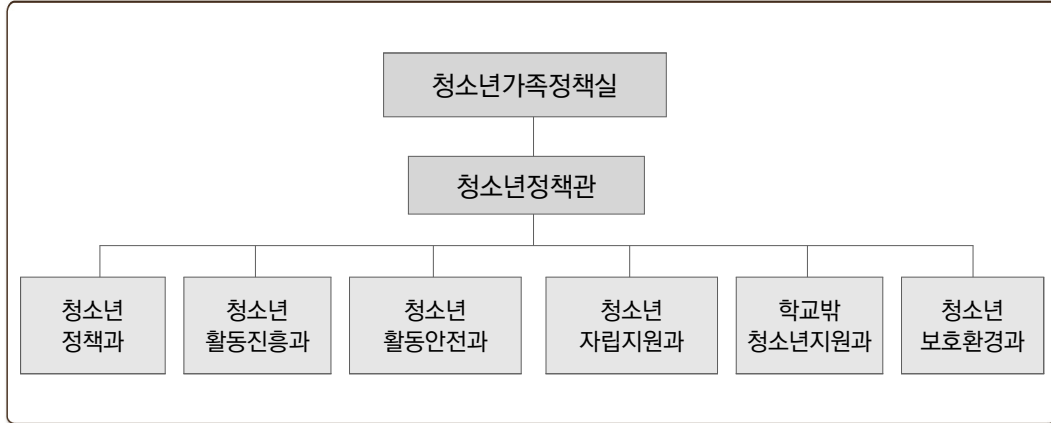
제 1 편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 I. 청소년정책 현황
- II. 2025년도 사업 주요사항
- III. 2025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시기〉	〈담당기구〉	〈주요기능〉
'85. 2 ~ '88. 6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기획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	
'88. 6 ~ '90. 9	체육부 청소년국	○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	
'90. 9 ~ '93.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 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 청소년기본법 제정('91.12.31)
	↓	
'93. 3 ~ '98. 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97.7.7)	○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3.9) ○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 청소년보호법 제정('97.3.7)
	↓	
'98. 2 ~ '05.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8.7) ○ 청보위 총리실소속으로 분리('98.2.28) ○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03.12)
	↓	
'05. 4 ~ '08. 2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보위 통합,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위원회 설치('05.4.27)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변경('06.3.30)
	↓	
'08. 3 ~ '10.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통합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08.12)
	↓	
'10. 3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10.11)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12.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2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신설('15.2.26)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18.3)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23.2)

■ 조 직



■ 주요업무

청 소 년 정 책 과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청소년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관련 행사 등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정책 총괄,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립수련원 운영·관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평가 실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 복지정책 총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상담·통합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보호정책 총괄,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 유해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단 점검·제도,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역기능 해소 등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
청소년 기본법	'91.12.31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24.3.26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22.12.27 개정, '23.6.28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정비
청소년활동 진흥법	'04.2.9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4.3.26 개정, '24.9.27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장관에 대한 지자체의 수련 시설 현황 '보고'를 '통보'로 변경
청소년복지 지원법	'04.2.9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10.24. 개정, '24.4.25.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 마련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21.3.23. 개정, '21.9.2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보호법	'97.3.7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사항을 규정	〈'24.3.26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을 반영한 조문 정비 〈'21.12.7, 개정, '22.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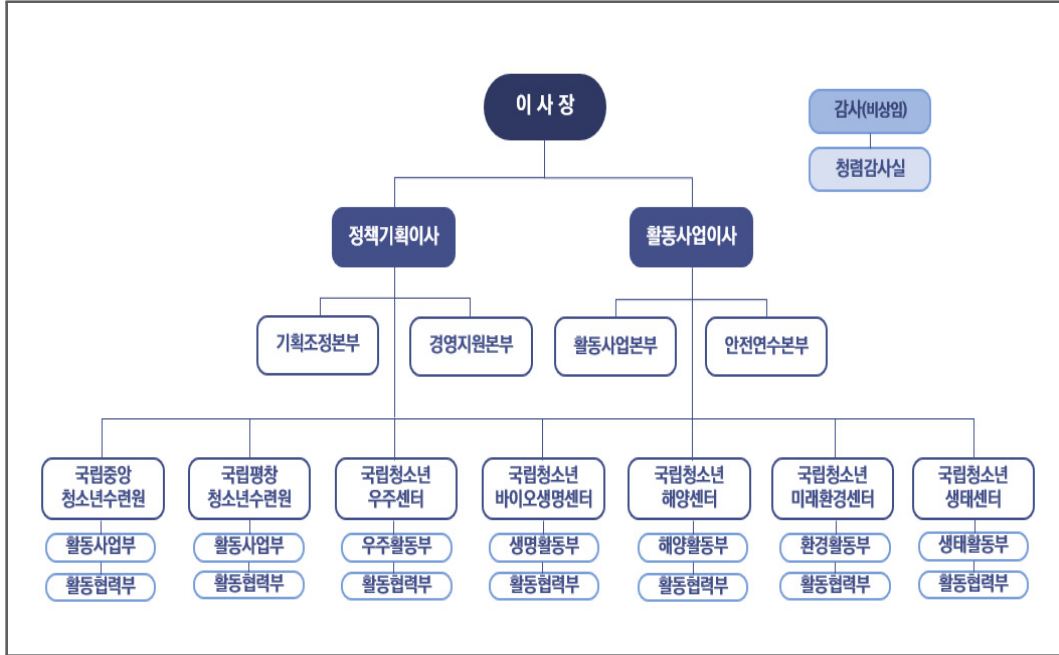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 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4.5.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체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학교장의 동 센터 연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p>〈'24.3.26 개정, '24.9.2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사전동의 없이 센터로 정보연계가 가능한 대상을 초·중에서 고등학교단계 까지 확대 ■ 건강검진 근거 마련 및 교육지원 주체로 교육감 명시 등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81.4.13	(사)한국청소년연맹지원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p>〈'11.5.19. 개정, '11.5.19.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p>〈'10.5.17. 개정, '10.5.1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스카우트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69.7.28	스카우트활동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p>〈'11.5.19. 개정, '11.5.19.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p>〈'10.5.17. 개정, '10.5.17.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우트 주관단체에서 정한 표지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대상	연령(만 나이)	소관부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공연법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경찰청
	운전면허	18세 이상 (원동기 16세 이상)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법무부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소년보호사건 14세 미만)	법무부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법무부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투표권	19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연령	(교장보호) 20세 이상 (그 외) 18세 이상	인사혁신처
청년기본법	청년	19~34세 이하	국무조정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	15~29세 이하 (공공 15~34세 이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년근로자	15~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 청소년 기본법 규정 준용

**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4.12.31. 기준, 단위 : 개소)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기능	이용기간	시설종류
1	청소년수련관	199	청소년 (9~24세)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2	청소년수련원	152	청소년 (9~24세)	숙박 제공 및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3	청소년문화의집	346	청소년 (9~24세)	정보·문화·예술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 실시	-	활동 시설
4	청소년특화시설	14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	-	활동 시설
5	청소년야영장	35	청소년 (9~24세)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	-	활동 시설
6	유스호텔	104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활동 시설
7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17	청소년 (9~24세)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진흥, 역량개발, 참여 활성화 등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	지원 기관
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40	위기청소년 (9~24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상담·보호· 의료·자립지원	-	이용 시설
9	청소년쉼터	137	가정 밖 청소년 (9~24세)	가출예방, 상담 및 보호, 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일시(7일 이내) 단기(3~24개월) 중장기(3~4년)	생활· 이용
10	청소년 자립지원관	13	쉼터 등 퇴소 청소년 (19~24세 이하)	쉼터 등 퇴소 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 여건 마련을 지원	1~2년	생활· 이용
11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8	소년법 처분 청소년 (1호 보호자감호위탁)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	처분기간 내	생활 시설
12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22	학교밖청소년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	이용 시설
13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3~18세)	인터넷·스마트폰과 차단된 환경에서 상담· 교육·활동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1~4주 과정	생활 시설
14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2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9~18세)	상담·치유 등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7박8일, (단기과정) 4주(오름과정) 16주(디딤과정)	생활 시설

7

정부 포상(청소년 분야) 및 장관표창 현황

구분	훈격	포상 시기	대상
청소년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5월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지방청소년활동정책 진흥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자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보호 분야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활동 청소년지도자
전국청소년지도자 대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9월(예정)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 수행기관 및 개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성과 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2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유공자, 유공기관, 우수사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2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2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유관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전국 또래상담 성과보고대회	장관표창, 장관상	11월	우수 운영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수 지도교사 및 지도자, 또래상담자
매체분야 청소년 보호 유공자 포상	장관표창	11월	매체 분야 청소년보호활동 단체 및 개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장관상	12월	청소년수련시설

II

2025년도 사업 주요사항

1

청소년정책과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청소년 특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 목적·기능 :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 설정·점검 및 추진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대상 : 9~24세 청소년 ○ 구성 : 청소년 총 100~150명 내외를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 운영 : 구성(1월~3월) → 출범식(3월) → 정책발굴활동(4월~9월) → 결과보고회(11월) 	02-2100-6234
청소년 참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목적·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청소년 의견 반영 ○ 운영주체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 주요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 	02-2100-6234
청소년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 우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8세 청소년 또는 19~24세의 초·중·고 재학생 ○ 우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 우대내용 :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02-2100-6243
청소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발급대상 : 9~18세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도 : 공적 신분증,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 또는 할인,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가능 ○ 교통카드 : 3개(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중 신청인이 택일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02-2100-6243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평가체계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정책 영역별 실적 중심의 평가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 중심의 평가 ○ 평가지표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 구성(총 12개 지표) ○ 결과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별 정책컨설팅에 활용 	02-2100-623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 생리용품 구입 비용 월 14,000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02-2100-6242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 개최 : 5월 중 ○ 참석대상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 : 현장체험부스, 경진대회, 멘토 특강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강연·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02-2100-6234
청소년의 달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 개최 : 5월(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막식과 통합 운영) ○ 참석대상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 및 보호유공자 시상 등 	02-2100-6242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 포상대상 :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일반인, 단체·기관, 청소년 등 72명 (개) ※ 포상규모는 해당연도 공고에 따름 ○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민총리표창, 장관표창 ○ 공모시기 : 매년 1월 ~ 2월 ○ 포상시기 :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 	02-2100-6242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37조 ○ 주요기능 :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청소년기관(시설)과 연계·협력 기능 강화 ○ 운영 : 전국 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진흥원 협력 운영 	02-2100-6252
청소년활동 사업 표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19조 ○ 주요기능 : 청소년년활동사업 등 법령 제정 취지 반영한 중앙단위 정책을 지역단위 지자체 시행계획 및 개별 공공수련시설까지 한 방향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분야 운영모형 가이드안 배포 	02-2100-625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 기타대상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 지원내용 :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건강한 성장 및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02-2100-6259
청소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 목적·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 반영 ○ 설치현황 : 전국 331개 ○ 운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진·개선 	02-2100-6255
청소년 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24조의2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 지도 분야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 양성 : 등급별(1·2·3등급) 자격검정(필기, 면접)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자(30시간 이상)에게 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 2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 필요 	02-2100-6257

3

청소년활동안전과

사업명	주요내용	문의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제19조2 ○ 대상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 사업내용(실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평가 :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 운영상황, 인사 및 조직 등 운영 관련 제반 사항 평가 - 안전·위생점검 :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결과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http://www.youth.go.kr)공개 	02-2100-6262, 6269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공공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지도사 기본급(30%) 지원(정규직전환 수당도 지원 가능) 	02-2100-6263, 6266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수련활동 및 비숙박 수련활동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도 높은 활동 ○ 신고처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 신고인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 신고방법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www.youth.go.kr) 	02-2100-6262, 6267

4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청소년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02-2100-6277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 사업목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청소년동반자 배치현황 : 1,398명('24년 기준) 	02-2100-6280
청소년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32조 ○ 사업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대상 : 1순위 : 9~19세 미만, 2순위 : 19~24세 	02-2100-6278
청소년 자립지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2조 ○ 사업목적 : 시설 퇴소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 지원대상 : 1순위 : 시설 퇴소 후기청소년, 2순위 : 그 밖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02-2100-6278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보호기간 : 보호기간 6개월, 법원(소년부 판사)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 연장가능 	02-2100-6281
청소년 상담사 양성 및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사업목적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상담 인력 선발 및 양성,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별(1·2·3등급) 필기·면접시험 합격 후 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 	02-2100-6280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전국 교육청에 설치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 제도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를 위해 법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연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2-2100-63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센터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2개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자립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 직업역량강화 사업 및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등 - (의료·복지) 건강검진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02-2100-6319, 631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검진내용 :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진 등 	02-2100-6319, 6315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 지원대상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 사업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전화1388 	02-2100-6316, 6313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02-2100-6316, 631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사업목적 : 중도입국·다문화·북한이탈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지원 ○ 지원내용 : 맞춤형 정보제공, 기초 한국어, 진로지도, 문화 활동 등 	02-2100-6312, 6314, 6318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조, 제48조 ○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 개선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소 점검단속 및 계도활동 	02-2100-6299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대상 :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전환기(초1,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위험수준별 맞춤형 상담·치유 등 종합서비스 운영 	02-2100-6296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등 ○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해소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인터넷치유캠프, 가족치유캠프 운영 	02-2100-6296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35조 ○ 설립목적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치료 및 상담, 대안활동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위험군(주의사용자군+ 위험사용자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02-2100-6296

사업명	주요 내용	문의처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설립목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기숙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대상 : 정서·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 	02-2100-6308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8조 등 ○ 목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법 이행여부 점검 - 온라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조치 노력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모니터링 	02-2100-6293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세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III

2025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신규사업 추진 * '25년 11개 지역 시범운영 	

2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 청소년 참여 증진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청소년 특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별회의 기획추진단 및 지역회의(전원 선발직, 총 100~15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지역회의 위원의 경우 시·도별 4~6명 추천하여 선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 및 시·도 추천을 통해 총 100~15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청소년증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 비교통 4,700원, 교통 6,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 비교통 4,700원, 교통 6,800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1-3 지원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구분</th> <th>지원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순위 지원대상</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 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td> </tr> <tr> <td>일반 형 기타 지원대상</td> <td>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신설)</td> </tr> <tr> <td>주말 형 지원대상</td> <td>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td> </tr> </tbody> </table>		대상구분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 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일반 형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신설)	주말 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구분</th> <th>지원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순위 지원대상</td>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 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td> </tr> <tr> <td>일반 형 기타 지원대상</td> <td>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은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td> </tr> <tr> <td>주말 형 지원대상</td> <td>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td> </tr> </tbody> </table>		대상구분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 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일반 형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은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주말 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변경
	대상구분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 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일반 형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신설)																				
주말 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대상구분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 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일반 형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은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주말 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1-5 사업 예산	<p>□ 사업예산 : 31,104백만원</p> <p>○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5개소 운영 지원</p> <p>- 1개소당(40명 기준) 평균 예산 : 181.2백만원</p>	<p>□ 사업예산 : 30,006백만원</p> <p>○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5개소 운영 지원</p> <p>- 1개소당(40명 기준) 평균 예산 : 174.6백만원</p>	변경																		

- 1)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 2) (신설)
- 3) (신설)

- 1)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 2) <초등> 초6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중등> 중3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 가능(~2월까지)
- 3)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초등 저학년(1~3학년)인 경우 참여 가능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3-1 연간 운영 일수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u>대체(임시) 공휴일의 경우 지역여건과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 결정 가능</u> 	변경
3-2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자율 운영)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자율 운영) * <u>토요일 운영 시, 주말체험활동 실적 인정 가능(1회, 운영일수 무관)</u> * <u>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업무매뉴얼 참조</u> 	변경
3-3 대기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자 및 <u>이수자 관리</u>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 <u>운영종료일 기준 업무지원서비스에서 당해연도 청소년 이수처리 필수</u> 	변경
3-3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참가 청소년 대상 정기적인 면담 실시(반기별 1회)</u> 	변경
3-3 귀가지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u>도보·차량</u>) 운영 * (신설)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u>전자출결시스템 활용</u>)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 운영 * <u>귀가방법 예시 : 보호자 동행 개별 귀가, 귀가차량 운영 등</u>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 (<u>전자출결시스템 활용</u>) * <u>「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자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안내(2019, 여가부)</u>, 관련 운영 필수 	변경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3-4 운영 인력 전문성 개발	* 신규 종사자는 직무 교육(팀장, 담임) 외에 신규 입사자 교육 수료 필수	* 신규 종사자는 직무 교육 외에 신규 입사자 교육 수료 필수(6시간)	변경																																																																	
3-4 강사 인력 확보 및 관리	○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 마련하여 시행 * 채용시 <u>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회보서 등</u>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 체계 마련하여 시행 * 채용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채용 가능하며,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회보서 등)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변경																																																																	
3-7 예산 편성	○ 예산규모 : 31,104백만원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개반 (30명)</th> <th>2개반 (40명)</th> <th>3개반 (60명)</th> </tr> </thead> <tbody> <tr> <td>기본형</td> <td>121,078</td> <td>181,207</td> <td>255,312</td> </tr> <tr> <td>농산어촌형</td> <td>124,600</td> <td>186,343</td> <td>262,094</td> </tr> <tr> <td>장애형</td> <td>-</td> <td>153,379</td> <td>214,996</td> </tr> <tr> <td>다문화형</td> <td>-</td> <td>166,139</td> <td>-</td> </tr> <tr> <td>탄력운영형</td> <td>74,328</td> <td>-</td> <td>-</td> </tr> <tr> <td>주말형</td> <td>49,24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통학버스 운영비 미포함</p>	구 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형	121,078	181,207	255,312	농산어촌형	124,600	186,343	262,094	장애형	-	153,379	214,996	다문화형	-	166,139	-	탄력운영형	74,328	-	-	주말형	49,240	-	-	○ 예산규모 : 30,006백만원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개반 (30명)</th> <th>2개반 (40명)</th> <th>3개반 (60명)</th> </tr> </thead> <tbody> <tr> <td>기본형</td> <td>119,891</td> <td>179,173</td> <td>252,342</td> </tr> <tr> <td>농산어촌형</td> <td>123,133</td> <td>183,909</td> <td>258,591</td> </tr> <tr> <td>장애형</td> <td>-</td> <td>151,636</td> <td>212,345</td> </tr> <tr> <td>다문화형</td> <td>-</td> <td>164,343</td> <td>-</td> </tr> <tr> <td>탄력운영형</td> <td>72,882</td> <td>-</td> <td>-</td> </tr> <tr> <td>주말형</td> <td>48,1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통학버스 운영비 미포함 ※ 예외적 운영 단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개반 (20명)</th> <th>1개반 (25명)</th> </tr> </thead> <tbody> <tr> <td>기본형</td> <td>98,349</td> <td>109,120</td> </tr> <tr> <td>농산어촌형</td> <td>100,510</td> <td>111,821</td> </tr> </tbody> </table> </p>	구 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형	119,891	179,173	252,342	농산어촌형	123,133	183,909	258,591	장애형	-	151,636	212,345	다문화형	-	164,343	-	탄력운영형	72,882	-	-	주말형	48,100	-	-	구 분	1개반 (20명)	1개반 (25명)	기본형	98,349	109,120	농산어촌형	100,510	111,821	변경
구 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형	121,078	181,207	255,312																																																																	
농산어촌형	124,600	186,343	262,094																																																																	
장애형	-	153,379	214,996																																																																	
다문화형	-	166,139	-																																																																	
탄력운영형	74,328	-	-																																																																	
주말형	49,240	-	-																																																																	
구 분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기본형	119,891	179,173	252,342																																																																	
농산어촌형	123,133	183,909	258,591																																																																	
장애형	-	151,636	212,345																																																																	
다문화형	-	164,343	-																																																																	
탄력운영형	72,882	-	-																																																																	
주말형	48,100	-	-																																																																	
구 분	1개반 (20명)	1개반 (25명)																																																																		
기본형	98,349	109,120																																																																		
농산어촌형	100,510	111,821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3-7 예산 편성 기준	국고 보조금	항목	세 부 내 용	국고 보조금	항목	세 부 내 용	변경																																																												
	사업비	급·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 급식비는 정부지원단가 (5,000원) 이상으로 예산 범위 내 자율편성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 에서 부담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사업비	급·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출석인원 또는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 급식비는 예산범위 내 자율 편성(1인1식 5천원 이상)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 에서 부담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캠프비, 주말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체험활동비 등) * 캠프 운영 시 해당 예산에서 지출 가능																																																													
3-7 운영 유형별 예산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형</td> <td>1개반</td> <td>47%</td> </tr> <tr> <td>2개반</td> <td>48%</td> </tr> <tr> <td>3개반</td> <td>47%</td> </tr> <tr> <td rowspan="3">농산어촌형</td> <td>1개반</td> <td>45%</td> </tr> <tr> <td>2개반</td> <td>47%</td> </tr> <tr> <td>3개반</td> <td>45%</td> </tr> <tr> <td rowspan="2">장애형</td> <td>2개반</td> <td>56%</td> </tr> <tr> <td>3개반</td> <td>54%</td> </tr> <tr> <td>다문화</td> <td>2개반</td> <td>52%</td> </tr> <tr> <td>탄력운영형</td> <td>1개반</td> <td>42%</td> </tr> <tr> <td>주말형</td> <td>1개반</td> <td>29%</td> </tr> </tbody> </table>			유형별	비율	기본형	1개반	47%	2개반	48%	3개반	47%	농산어촌형	1개반	45%	2개반	47%	3개반	45%	장애형	2개반	56%	3개반	54%	다문화	2개반	52%	탄력운영형	1개반	42%	주말형	1개반	29%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형</td> <td>1개반</td> <td>48%</td> </tr> <tr> <td>2개반</td> <td>49%</td> </tr> <tr> <td>3개반</td> <td>48%</td> </tr> <tr> <td rowspan="3">농산어촌형</td> <td>1개반</td> <td>46%</td> </tr> <tr> <td>2개반</td> <td>48%</td> </tr> <tr> <td>3개반</td> <td>46%</td> </tr> <tr> <td rowspan="2">장애형</td> <td>2개반</td> <td>58%</td> </tr> <tr> <td>3개반</td> <td>56%</td> </tr> <tr> <td>다문화</td> <td>2개반</td> <td>54%</td> </tr> <tr> <td>탄력운영형</td> <td>1개반</td> <td>43%</td> </tr> <tr> <td>주말형</td> <td>1개반</td> <td>31%</td> </tr> </tbody> </table>			유형별	비율	기본형	1개반	48%	2개반	49%	3개반	48%	농산어촌형	1개반	46%	2개반	48%	3개반	46%	장애형	2개반	58%	3개반	56%	다문화	2개반	54%	탄력운영형	1개반	43%	주말형	1개반	31%	변경
	유형별	비율																																																																	
기본형	1개반	47%																																																																	
	2개반	48%																																																																	
	3개반	47%																																																																	
농산어촌형	1개반	45%																																																																	
	2개반	47%																																																																	
	3개반	45%																																																																	
장애형	2개반	56%																																																																	
	3개반	54%																																																																	
다문화	2개반	52%																																																																	
탄력운영형	1개반	42%																																																																	
주말형	1개반	29%																																																																	
유형별	비율																																																																		
기본형	1개반	48%																																																																	
	2개반	49%																																																																	
	3개반	48%																																																																	
농산어촌형	1개반	46%																																																																	
	2개반	48%																																																																	
	3개반	46%																																																																	
장애형	2개반	58%																																																																	
	3개반	56%																																																																	
다문화	2개반	54%																																																																	
탄력운영형	1개반	43%																																																																	
주말형	1개반	31%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예외적 운영</th> <th>유형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일 반 형</td> <td rowspan="2">기본형</td> <td>1개반(20명)</td> <td>58%</td> </tr> <tr> <td>1개반(25명)</td> <td>52%</td> </tr> <tr> <td rowspan="2">농산어촌형</td> <td>1개반(20명)</td> <td>56%</td> </tr> <tr> <td>1개반(25명)</td> <td>51%</td> </tr> </tbody> </table>			※ 예외적 운영		유형별	비율	일 반 형	기본형	1개반(20명)	58%	1개반(25명)	52%	농산어촌형	1개반(20명)	56%	1개반(25명)	51%																																																		
※ 예외적 운영		유형별	비율																																																																
일 반 형	기본형	1개반(20명)	58%																																																																
		1개반(25명)	52%																																																																
	농산어촌형	1개반(20명)	56%																																																																
		1개반(25명)	51%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3-7 회계관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u>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 시 검증 실시</u>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 관련 	신설
3-9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운영기관 중 <u>도 지역 소재 기본형, 탄력운영형</u> 일정 : '25년 1~9월 - 1~2월 : 사업 종합평가 평가지표 자문회의 - 3월 : 사업 종합평가 사업설명회 및 교육 - 3~4월 : 자체 평가서 제출 - 5~6월 : <u>현장평가</u> - 7~8월 : 운영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 9월 :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운영기관 중 <u>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u> 일정 : '25년 1~9월 - 1~2월 : 사업 종합평가 평가지표 자문회의 - 3월 : 사업 종합평가 사업설명회 및 교육 - 3~4월 : 자체 평가서 제출 - 5~6월 : <u>서면평가</u> - 7~8월 : 운영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 9월 : 결과보고 	변경
3-9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 및 활용 ○ <u>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 및 활용 ○ <u>서면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u> 	변경
3-12 수탁자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자격기준: '<u>청소년육성·보호·교육</u>'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자격기준: △'<u>청소년육성·보호·교육</u>'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u>사회복지사업법</u>」상 사회복지법인 △「<u>사립학교법</u>」상 학교법인 등 	변경
3-13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군·구 (필요시 시·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운영기관 자체 리모델링의 경우 일시휴업 불가(대체 공간 확보 필요)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군·구 (필요시 시·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운영기관 자체 리모델링의 경우 일시휴업 불가(대체 공간 확보 필요) * <u>대체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여가부 별도 협의(비대면 전환, 긴급돌봄 대체 등)</u> 	변경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4 행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월별 현황 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분기별 현황조사 결과 3개월 이상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월별 현황 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현황점검 결과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변경																																																																																																								
붙임1 예산편성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탄력 운영형 (15명)</th> <th>1개반 (30명)</th> <th>2개반 (40명)</th> <th>3개반 (60명)</th> <th>주말형 (30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건비</td> <td> <table border="1"> <tr> <td>급여</td> <td>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td> <td>25,008 (2,084) 천원x 12개월 x1명</td> <td>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td> <td>30,528 (2,544) 천원x 12개월 x1명</td> <td rowspan="2">12,684 (1,057) 천원x 12개월</td> </tr> <tr> <td>담임</td> <td>-</td> <td>24,744 (2,062) 천원x 12개월 x1명</td> <td>49,488 (2,062) 천원x 12개월 x2명</td> <td>74,232 (2,062) 천원x 12개월 x3명</td> </tr> </table> </td> <td>정규직 전환 비용</td> <td>* 정부 지원단가: 1인당 2,829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 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td> </tr> <tr> <td rowspan="5">사업 운영비</td> <td>급식비 (간식비 포함)</td> <td colspan="5">*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 단가(5,000원) 이상으로 자율 책정 가능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td> </tr> <tr> <td>일반 운영비</td> <td colspan="5">*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td> </tr> <tr> <td>차량 운영비</td> <td colspan="5">*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자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td> </tr> <tr> <td>보험</td> <td colspan="5">* 10,000원(최소기준임)x청소년 수</td> </tr> <tr> <td>직무 역량비</td> <td colspan="5">* 200,000원x운영전담 인력 수</td> </tr> </tbody> </table>	항 목	탄력 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건비	<table border="1"> <tr> <td>급여</td> <td>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td> <td>25,008 (2,084) 천원x 12개월 x1명</td> <td>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td> <td>30,528 (2,544) 천원x 12개월 x1명</td> <td rowspan="2">12,684 (1,057) 천원x 12개월</td> </tr> <tr> <td>담임</td> <td>-</td> <td>24,744 (2,062) 천원x 12개월 x1명</td> <td>49,488 (2,062) 천원x 12개월 x2명</td> <td>74,232 (2,062) 천원x 12개월 x3명</td> </tr> </table>	급여	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	25,008 (2,084) 천원x 12개월 x1명	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	30,528 (2,544) 천원x 12개월 x1명	12,684 (1,057) 천원x 12개월	담임	-	24,744 (2,062) 천원x 12개월 x1명	49,488 (2,062) 천원x 12개월 x2명	74,232 (2,062) 천원x 12개월 x3명	정규직 전환 비용	* 정부 지원단가: 1인당 2,829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 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 단가(5,000원) 이상으로 자율 책정 가능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일반 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					차량 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자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					보험	* 10,000원(최소기준임)x청소년 수					직무 역량비	* 200,000원x운영전담 인력 수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탄력 운영형 (15명)</th> <th>1개반 (30명)</th> <th>2개반 (40명)</th> <th>3개반 (60명)</th> <th>주말형 (30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건비</td> <td> <table border="1"> <tr> <td>급여</td> <td>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td> <td>25,644 (2,137) 천원x 12개월 x1명</td> <td>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td> <td>31,296 (2,608) 천원x 12개월 x1명</td> <td rowspan="2">13,008 (1,084) 천원x 12개월</td> </tr> <tr> <td>담임</td> <td>-</td> <td>25,368 (2,114) 천원x 12개월 x1명</td> <td>50,736 (2,114) 천원x 12개월 x2명</td> <td>76,104 (2,114) 천원x 12개월 x3명</td> </tr> </table> </td> <td>정규직 전환 비용</td> <td>* 정부 지원단가: 1인당 2,900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 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td> </tr> <tr> <td rowspan="5">사업 운영비</td> <td>급식비 (간식비 포함)</td> <td colspan="5">*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 책정 가능(1인/식 5,000원 이상)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td> </tr> <tr> <td>일반 운영비</td> <td colspan="5">*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td> </tr> <tr> <td>차량 운영비</td> <td colspan="5">*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자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td> </tr> <tr> <td>보험</td> <td colspan="5">* 10,000원(최소기준임)x청소년 수</td> </tr> <tr> <td>직무 역량비</td> <td colspan="5">* 150,000원x운영전담 인력 수</td> </tr> </tbody> </table>	항 목	탄력 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건비	<table border="1"> <tr> <td>급여</td> <td>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td> <td>25,644 (2,137) 천원x 12개월 x1명</td> <td>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td> <td>31,296 (2,608) 천원x 12개월 x1명</td> <td rowspan="2">13,008 (1,084) 천원x 12개월</td> </tr> <tr> <td>담임</td> <td>-</td> <td>25,368 (2,114) 천원x 12개월 x1명</td> <td>50,736 (2,114) 천원x 12개월 x2명</td> <td>76,104 (2,114) 천원x 12개월 x3명</td> </tr> </table>	급여	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	25,644 (2,137) 천원x 12개월 x1명	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	31,296 (2,608) 천원x 12개월 x1명	13,008 (1,084) 천원x 12개월	담임	-	25,368 (2,114) 천원x 12개월 x1명	50,736 (2,114) 천원x 12개월 x2명	76,104 (2,114) 천원x 12개월 x3명	정규직 전환 비용	* 정부 지원단가: 1인당 2,900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 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 책정 가능(1인/식 5,000원 이상)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일반 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					차량 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자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					보험	* 10,000원(최소기준임)x청소년 수					직무 역량비	* 150,000원x운영전담 인력 수					변경
항 목	탄력 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건비	<table border="1"> <tr> <td>급여</td> <td>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td> <td>25,008 (2,084) 천원x 12개월 x1명</td> <td>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td> <td>30,528 (2,544) 천원x 12개월 x1명</td> <td rowspan="2">12,684 (1,057) 천원x 12개월</td> </tr> <tr> <td>담임</td> <td>-</td> <td>24,744 (2,062) 천원x 12개월 x1명</td> <td>49,488 (2,062) 천원x 12개월 x2명</td> <td>74,232 (2,062) 천원x 12개월 x3명</td> </tr> </table>	급여	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	25,008 (2,084) 천원x 12개월 x1명	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	30,528 (2,544) 천원x 12개월 x1명	12,684 (1,057) 천원x 12개월	담임	-	24,744 (2,062) 천원x 12개월 x1명	49,488 (2,062) 천원x 12개월 x2명	74,232 (2,062) 천원x 12개월 x3명	정규직 전환 비용	* 정부 지원단가: 1인당 2,829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 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																																																																																													
	급여	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	25,008 (2,084) 천원x 12개월 x1명	27,552 (2,296) 천원x 12개월 x1명	30,528 (2,544) 천원x 12개월 x1명	12,684 (1,057) 천원x 12개월																																																																																																					
담임	-	24,744 (2,062) 천원x 12개월 x1명	49,488 (2,062) 천원x 12개월 x2명	74,232 (2,062) 천원x 12개월 x3명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 단가(5,000원) 이상으로 자율 책정 가능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일반 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																																																																																																									
	차량 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자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																																																																																																									
	보험	* 10,000원(최소기준임)x청소년 수																																																																																																									
	직무 역량비	* 200,000원x운영전담 인력 수																																																																																																									
항 목	탄력 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건비	<table border="1"> <tr> <td>급여</td> <td>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td> <td>25,644 (2,137) 천원x 12개월 x1명</td> <td>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td> <td>31,296 (2,608) 천원x 12개월 x1명</td> <td rowspan="2">13,008 (1,084) 천원x 12개월</td> </tr> <tr> <td>담임</td> <td>-</td> <td>25,368 (2,114) 천원x 12개월 x1명</td> <td>50,736 (2,114) 천원x 12개월 x2명</td> <td>76,104 (2,114) 천원x 12개월 x3명</td> </tr> </table>	급여	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	25,644 (2,137) 천원x 12개월 x1명	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	31,296 (2,608) 천원x 12개월 x1명	13,008 (1,084) 천원x 12개월	담임	-	25,368 (2,114) 천원x 12개월 x1명	50,736 (2,114) 천원x 12개월 x2명	76,104 (2,114) 천원x 12개월 x3명	정규직 전환 비용	* 정부 지원단가: 1인당 2,900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 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																																																																																													
	급여	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	25,644 (2,137) 천원x 12개월 x1명	28,248 (2,354) 천원x 12개월 x1명	31,296 (2,608) 천원x 12개월 x1명	13,008 (1,084) 천원x 12개월																																																																																																					
담임	-	25,368 (2,114) 천원x 12개월 x1명	50,736 (2,114) 천원x 12개월 x2명	76,104 (2,114) 천원x 12개월 x3명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 책정 가능(1인/식 5,000원 이상)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일반 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																																																																																																									
	차량 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자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																																																																																																									
	보험	* 10,000원(최소기준임)x청소년 수																																																																																																									
	직무 역량비	* 150,000원x운영전담 인력 수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붙임2 연간 운영비	유 형 별		기본단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제출 기관	유 형 별		기본단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제출 기관	변경		
										기본 형	30명
	40명	181,207,000	8,040,000	40명	179,173	6,600					
	60명	255,312,000	8,040,000	60명	252,342	6,600					
	농산 어촌형	30명	124,600,000	8,040,000	농산 어촌형	30명	123,133	6,600			
		40명	186,343,000	8,040,000		40명	183,909	6,600			
		60명	262,094,000	8,040,000		60명	258,591	6,600			
	장애형	20명	153,379,000	8,040,000	장애형	20명	151,636	6,600			
		30명	214,996,000	8,040,000		30명	212,345	6,600			
	다문화	30명	166,139,000	8,040,000	다문화	30명	164,343	6,600			
		탄력 운영형	15명	74,328,000		8,040,000	탄력 운영형	15명		72,882	6,600
	주말형	30명	49,240,000	-	주말형	30명	48,100	-			
	※ 예외적 운영 단가										
	구 분		1개반 (20명)	1개반 (25명)							
기본형		98,349	109,120								
농산어촌형		100,510	111,821								
서식5	번호	항목	서식	시스템	비고	번호	항목	서식	시스템	비고	
	9	강사 채용 계약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엔 전문분야, 연락처 등 등록(원본 기관 보유). 모집에 활용	9	강사 채용 계약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강사 인적정보 등록 *전문분야, 연락처 등 등록(원본 기관 보유). 모집에 활용	
	17	주간 시간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입력	17	주간 시간표	필수	=	(삭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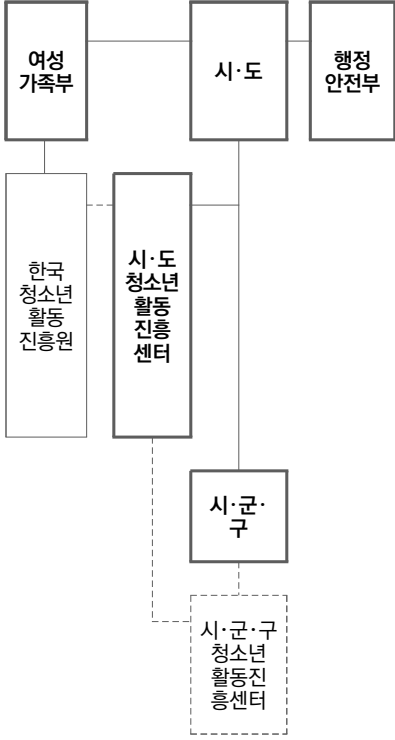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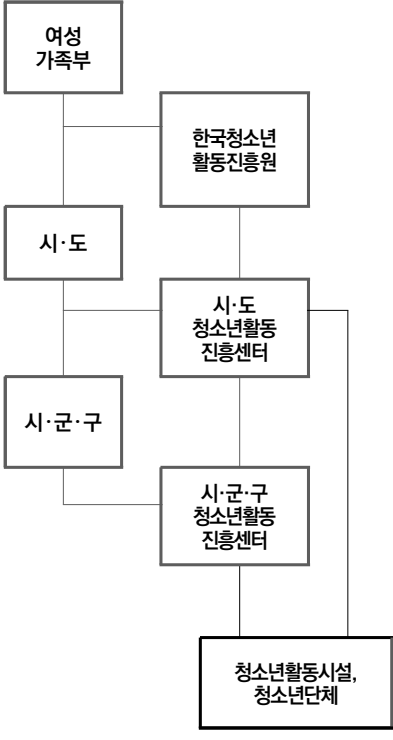
제1편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2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치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확대 사업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되 아래 지침내용 참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아래 지침내용 참고 가능 	변경
추진 체계	<p>○ 추진체계도</p>  <pre> graph TD A[여성가족부] --- B[시·도] A --- C[행정안전부] A --- D[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B --- D B --- E[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E --- F[시·군·구] F --- G[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style G stroke-dasharray: 5 5 </pre>	<p>○ 추진체계도</p>  <pre> graph TD A[여성가족부] --- B[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A --- C[시·도] B --- C C --- D[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C --- E[시·군·구] D --- E E --- F[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F --- G[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pre>	변경
(신설)		<p><중앙 단위 조직 및 기능>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p>	
(신설)		<p><시·도 단위 조직 및 기능> 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 및 지원</p>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설치·지정 운영	(신설)	○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지정 운영 유형 방식 규정	
시·군·구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신설)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지도 및 지원 규정	
연계·협력	(신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간의 연계·협력 방식 규정	
행정사항	(신설)	○ 2025년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및 활동실적 진단(평가) 및 현장점검 신설	
<참고3>	○ '24년 기본급 기준표 제시	○ '25년 기본급 기준표 제시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3%)	변경
<참고4>	(신설)	○ 운영결과보고서 양식	

■ 청소년활동사업 표준 운영(신설)

- 청소년활동사업 등 법령 제정 취지 반영한 중앙단위 정책을 지역단위 지자체 시행계획 및 개별 공공수련시설까지 한 방향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분야 운영모형 가이드안 배포

■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운영현황	○ 2006년 210개소에서 2023년 331개소 운영 지원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 운영 지원 개소 수에서 운영 현황으로 통계 업데이트 예정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점검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	--------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변경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등급 - 적정, 보완, 미흡 ○ 평가거부시설 -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가능 ○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 - 사고발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등급 -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거부시설 - 평가점수 0점 처리 ○ 평가등급 조정 및 감점 - 사고발생 등 - 허위자료 제출(추가) 	변경, 추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점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 - 여성가족부 : 국립수련시설, 민간시설(일부 우수시설 제외), 모험시설(집라인, 챌린지코스, 인 지방자치단체 : 소관 공립시설, 민간시설('22년도 우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 점검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 - 점검대상 : 추후 별도 안내 	변경
------	--	---	----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건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국비 50%, 지방비 50%) - 청소년지도사 1급 : 2,180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 2,132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 2,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국비 30%, 지방비 70%) - 청소년지도사 1급 : 2,240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 2,193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 2,173천원 	변경

4

청소년 복지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개요	<p>아. 추진체계</p> <p>○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청소년 안전망</th> </tr> <tr> <th colspan="2">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th> </tr> <tr> <td> ① 통합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접수 • 욕구조사·위기도조사 • 개인별 서비스개입 계획 •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서비스연계 • 점검·평가 및 재사정 • 종결, 사후관리 ② 긴급대응 ③ 특별지원 </td> <td></td> </tr> </table>	청소년 안전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① 통합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접수 • 욕구조사·위기도조사 • 개인별 서비스개입 계획 •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서비스연계 • 점검·평가 및 재사정 • 종결, 사후관리 ② 긴급대응 ③ 특별지원		<p>아. 추진체계</p> <p>○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청소년 안전망</th> </tr> <tr> <th colspan="2">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th> </tr> <tr> <td>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구성 등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운영 총괄 ② 긴급대응 체계 운영 ③ 위기청소년특별지원 </td> <td></td> </tr> </table>	청소년 안전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구성 등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운영 총괄 ② 긴급대응 체계 운영 ③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변경
청소년 안전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① 통합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접수 • 욕구조사·위기도조사 • 개인별 서비스개입 계획 •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 서비스연계 • 점검·평가 및 재사정 • 종결, 사후관리 ② 긴급대응 ③ 특별지원															
청소년 안전망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구성 등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운영 총괄 ② 긴급대응 체계 운영 ③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성	<p>가. 청소년안전망 구성</p> <p>2)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붙임 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기관명</th> <th>주요 역할</th> </tr> </thead> <tbody> <tr> <td>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td> </tr> </tbody> </table>	기관명	주요 역할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p>가. 청소년안전망 구성</p> <p>2)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역할 [붙임 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기관명</th> <th>주요 역할</th> </tr> </thead> <tbody> <tr> <td>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td> </tr> </tbody> </table>	기관명	주요 역할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변경				
기관명	주요 역할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기관명	주요 역할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e센터,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의뢰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청소년의 외부 상담 지원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 및 협조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청소년 안전망 구성	<p>가. 청소년안전망 구성</p> <p>4)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및 필수연계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도모해야 함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등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직업 훈련기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p>가. 청소년안전망 구성</p> <p>4) 필수연계기관 이외의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및 필수연계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도모해야 함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등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직업 훈련기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새일센터 	변경
	<p>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p> <p>2)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서면심의나 대리출석에 의한 심의, 서면 회의는 불가(실무위원회도 동일)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중략)~비행예방센터의 장~(중략)~가족 관련 전문가 등 각1인으로 구성함 	<p>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p> <p>2)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서면심의, 서면 회의는 불가(실무위원회도 동일)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중략)~비행예방센터의 장(설치 지역에 한함)~(중략)~가족 관련 전문가 등 각1인으로 구성함 	변경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안전망 운영</p>	<p>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전화 1388 상담유형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청소년전화 1388 이용자의 문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 종합상담전화로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고 일반상담, 위기상담, 신고전화 등의 분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야간 전화상담의 경우, 위기상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개입 ① 일반상담: 단회상담 후 종결, 대면상담을 위한 접수면접으로의 연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위기상담: 위기 정도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에서부터 긴급구조 및 현장 케어까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③ 신고전화: 자치단체 및 검찰·경찰 등에서 실질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 </div> <p>(중략) 〈법적 대응 전 조치〉 * 악성내담 행위* 중지 경고 및 권리보호를 위한 녹음시스템 도입</p>	<p>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설치·운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전화 1388 상담유형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청소년전화 1388 이용자의 문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 종합상담전화로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고 일반상담, 위기상담, 신고전화 등의 분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야간 전화상담의 경우, 위기상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개입 ① 일반상담: 단회상담 후 종결, 대면상담을 위한 접수면접으로의 연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위기상담: 위기 정도에 따라 전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에서부터 긴급구조 및 현장 케어까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③ 신고전화: 자치단체 및 검찰·경찰 등에서 실질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8전화상담원은 필요 시 청소년이 다른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자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러한 연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안전망 시스템 사례연계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굴관리 > 1388전화상담(화면 하단) [신규등록] 버튼 선택, 정보 등록 후 저장 ② 발굴관리 > 발굴목록 대상자명 조회 ※ 발굴목록 리스트에 대상자명이 있어야 타기관 연계의뢰 가능 ③ 사례관리 > 연계의뢰(화면 하단) [연계대상자의뢰등록] 버튼 선택, 정보 등록 후 저장 ※ 보건복지부 의뢰의 경우, 사례관리 > 연계의뢰(복지부) 화면 하단 [서비스의뢰 요청등록] 버튼 선택, 정보 등록 후 저장 </div> <p>(중략) 〈법적 대응 전 조치〉 * 악성내담 행위* 중지 경고 및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p>	<p>변경</p>
	<p>다.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p> <p>3)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高)위기 청소년) 「청소년동반자」 연계 	<p>다.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p> <p>3)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高)위기 청소년) 「청소년동반자」 및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연계 	<p>변경</p>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조직 구성	<p>나.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으로 통칭 가능 	<p>나.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으로 통칭 가능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 직급 구성 가능 (단, 관리업무, 실무업무 등 수행 업무에 맞는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필수) 	변경																										
	<p>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직원 -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통칭 가능 <p>- 구성인력 외의 인력(행정원 등) 채용 시 시·도 센터 자격기준 준용</p>	<p>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통칭 가능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 직급 구성 가능 (단, 관리업무, 실무업무 등 수행 업무에 맞는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필수) <p>- 구성인력 외의 인력(행정원 등) 채용 시 시·도 센터 자격기준 준용</p>	변경																										
인사 관리	<p>바. 종사자 보수</p> <p>1) 보수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등의 편성·지급 <p>■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지 급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정액 급식비</td> <td>•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td> </tr> <tr> <td>명절 휴가비</td> <td>• 연 기본급 120% 내외</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가족 수당</td> <td>•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 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등</td> </tr> <tr> <td>기타</td> <td>•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기타 제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td> </tr> </tbody> </table>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 급식비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명절 휴가비	• 연 기본급 120% 내외	(생략)	(생략)	가족 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 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등	기타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기타 제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p>바. 종사자 보수</p> <p>1) 보수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등의 편성·지급 <p>■ 지급 수당의 종류 및 내용(참고) ■</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지 급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정액 급식비</td> <td>•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td> </tr> <tr> <td>명절 휴가비</td> <td>• 월 기본급 120% 내외</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가족 수당</td> <td>•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 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5만원, 둘째 월 8만원, 셋째 이후 월 12만원) 등</td> </tr> <tr> <td>직책 수당</td> <td>• 팀장, 선임팀원 등 센터별 직급체계 따른 수당 지급</td> </tr> <tr> <td>기타</td> <td>•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등 기타 제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td> </tr> </tbody> </table>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 급식비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명절 휴가비	• 월 기본급 120% 내외	(생략)	(생략)	가족 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 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5만원, 둘째 월 8만원, 셋째 이후 월 12만원) 등	직책 수당	• 팀장, 선임팀원 등 센터별 직급체계 따른 수당 지급	기타	•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등 기타 제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변경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 급식비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명절 휴가비	• 연 기본급 120% 내외																												
(생략)	(생략)																												
가족 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 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등																												
기타	•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등 기타 제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종 류	지 급 내 용																												
정액 급식비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월 14만원)																												
명절 휴가비	• 월 기본급 120% 내외																												
(생략)	(생략)																												
가족 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 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5만원, 둘째 월 8만원, 셋째 이후 월 12만원) 등																												
직책 수당	• 팀장, 선임팀원 등 센터별 직급체계 따른 수당 지급																												
기타	• 직무수당, 가계지원비, 상여금, 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수당) 등 기타 제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되, 지자체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함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사 관리	<p>사. 종사자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교육 : 업무 관련 교육, 법정 교육 ② 법정 교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법적근거</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안전관리 교육·훈련</td> <td>화재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td> <td>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td> </tr> <tr> <td>(중략)</td> <td></td> <td></td> </tr> <tr> <td>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td> <td>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td> <td>청소년 권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c.kyci.or.kr)에서 교육강사 요청 가능</td> </tr> <tr> <td>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td> <td>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td> <td>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법적근거	비고	안전관리 교육·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	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	(중략)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	청소년 권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c.kyci.or.kr)에서 교육강사 요청 가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	<p>사. 종사자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교육 : 업무 관련 교육, 법정 교육 ② 법정 교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법적근거</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안전관리 교육·훈련</td> <td>화재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td> <td>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td> </tr> <tr> <td>(중략)</td> <td></td> <td></td> </tr> <tr> <td>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삭제)</td> <td>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 (삭제)</td> <td>청소년 권리에-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c.kyci.or.kr)에서 교육강사 요청 가능 (삭제)</td> </tr> <tr> <td>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td> <td>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td> <td>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td> </tr> <tr> <td>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td> <td>인신매매 방지법 제11조</td> <td>연 1시간 이상 *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www.all.go.kr) 등 활용</td> </tr> <tr> <td>자살예방 교육</td> <td>자살예방법 제17조</td> <td>연 1회 이상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https://edu.kfsp.or.kr) 등 활용</td> </tr> </tbody> </table>	구분	법적근거	비고	안전관리 교육·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	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	(중략)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삭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 (삭제)	청소년 권리에-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c.kyci.or.kr)에서 교육강사 요청 가능 (삭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인신매매 방지법 제11조	연 1시간 이상 *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www.all.go.kr) 등 활용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연 1회 이상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https://edu.kfsp.or.kr) 등 활용	변경
	구분	법적근거	비고																																				
안전관리 교육·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	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																																					
(중략)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	청소년 권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c.kyci.or.kr)에서 교육강사 요청 가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																																					
구분	법적근거	비고																																					
안전관리 교육·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	연 1회 이상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																																					
(중략)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삭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 (삭제)	청소년 권리에-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c.kyci.or.kr)에서 교육강사 요청 가능 (삭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연 1시간 이상 *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가능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인신매매 방지법 제11조	연 1시간 이상 * 온국민평생배움터 (http://www.all.go.kr) 등 활용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연 1회 이상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https://edu.kfsp.or.kr) 등 활용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 그램 사업 운영	<p>가.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보수 ② B안 : 평가 1건 당 보수 - 1건당 평가비(20~30만원 내외) 지급(해석상담비 포함) <p>* 센터 상황과 필요 자격기준, 유사기관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건당 비용 조정·결정</p>	<p>가.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보수 ② 안 : 평가 1건 당 보수 - 1건당 평가비(20~30만원 내외) 지급(해석상담비 포함) <p>* 센터 상황과 필요 자격기준, 유사기관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건당 비용 조정·결정이 가능하며, 사전 연락 없이 내담자가 검사에 불참한 경우 소정의 출장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음</p>	신설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운영 집행	<p>나.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및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청소년 자살자해 고위험군 분류 시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및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청소년 자살자해 고위험군 분류 시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 필요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종합심리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 상담 및 병원 등 기관 연계 지원 	<p>나.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및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자해 고위험군 분류 시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및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자해 고위험군 분류 시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 필요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에 의한 종합심리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등 청소년 상담 및 병원 등 기관 연계 지원 • 시·도센터 사례자문 회의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 	신설 및 변경
예산 편성 및 집행	<p>나.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임상심리사 배치)</p> <p>① A안(상근직 운영) :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예산의 5% 내외로 편성하며 검사지 구입,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항목으로 집행 <p>② B안(시간제 등 운영) : 예산은 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구성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여 평가 건당 수당 및 강사비 등으로 지급 가능 	<p>나.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임상심리사 배치)</p> <p>① A안(상근직 운영) :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예산의 5% 내외로 편성하며 검사지 구입,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비,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및 집중심리클리닉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등 항목으로 집행 <p>② B안(시간제 등 운영) : 예산은 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구성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여 평가 건당 수당 및 강사비 등으로 지급 가능 <p>* 평가 건당 수당 외에 검사지 구입,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비, 찾아가는 청소년마음건강지킴이 버스 및 집중심리클리닉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등에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5% 내외로 편성</p>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p>다.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사업비 편성 - 인건비 : 보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동일), 4대보험 부담금(기관, 본인), 퇴직적립금, 제수당 등으로 구성 - 사업비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예산의 20%(시·도), 15%(시·군·구) 이상으로 편성 권고(단, 센터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전액 인건비 편성 가능) <p>* 사업비는 부모 상담 프로그램, 사업 홍보, 종사자 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운영에 사용, 전액 인건비로 편성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예산 등을 통해 필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p>	<p>다.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편성 - 인건비 : 보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와 동일), 4대보험 부담금(기관, 본인), 퇴직적립금, 제수당 등으로 구성 <p>*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및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활용</p>	변경
예산 편성 및 집행	<p>라.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 주요 항목 간(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 사업비의 예산감액 조정은 불가능 / 시·도 20% 이상) ○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 주요 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p>라. 청소년안전망 예산 집행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 주요 항목 간(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단, 조정시에도 지침상 명시된 비율(시·도센터 20%) 이상으로 사업비 편성 필수) ○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사업 중 주요 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권한 위임 시 사업비 예산감액 조정 불가능 명시 / 시·군·구 10% 또는 15% 이상)	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단, 조정시에도 지침상 명시된 비율 (시·군·구센터 10%) 이상으로 사업비 편성 필수)	
별표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변경>	변경
별표 7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필요시 귀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필수연계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지방 고용관서, 경찰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필요시 귀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필수연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청, 보건소, 지방고용관서, 경찰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변경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나. 대상자 분류 및 선정 절차 ○ (사례판정회의) 위기 스크리닝 결과 1차 위험요인영역 5점 이상인 중·고 위험군 청소년 대상 실시(초4 이하는 4점 이상)	나. 대상자 분류 및 선정 절차 ○ (사례판정회의) 위기 스크리닝 결과 1차 위험요인영역 5점 이상 또는 위기 스크리닝 결과 2차 위험요인 영역 1점 이상인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실시(초4 이하는 4점 이상)	변경 · 신설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사 관리	<p>가. 종사자 채용</p> <p>○ 종사자 자격기준</p> <p>- 자격 요건</p> <table border="1" data-bbox="367 445 769 880"> <tr> <th data-bbox="367 445 769 486">① 관련 자격증 소지</th> </tr> <tr> <td data-bbox="367 486 769 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67 895 769 1156"> <tr> <th data-bbox="367 895 769 956">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th> </tr> <tr> <td data-bbox="367 956 769 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td> </tr> </table>	① 관련 자격증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p>가. 종사자 채용</p> <p>○ 종사자 자격기준</p> <p>- 자격 요건</p> <table border="1" data-bbox="799 445 1186 880"> <tr> <th data-bbox="799 445 1186 486">① 관련 자격증 소지</th> </tr> <tr> <td data-bbox="799 486 1186 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799 895 1186 1156"> <tr> <th data-bbox="799 895 1186 956">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th> </tr> <tr> <td data-bbox="799 956 1186 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td> </tr> </table>	① 관련 자격증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변경
	① 관련 자격증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① 관련 자격증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p>라. 종사자 보수</p> <p>○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4년 보수 수준이 2023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처우개선 방안 마련 	<p>라. 종사자 보수</p> <p>○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5년 보수 수준이 2024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처우개선 방안 마련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인사 관리	<p>라. 종사자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동반자 예산의 구성 및 운영 방향 <p><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인당 예산 단가(연) : 전일제 31,428천원 이상, 시간제 11,738천원 이상 1) '24년 예산 편성 기준 : 보수, 법정부담금, 사례진행비, 사업 운영비 등 <p>(중략)</p> 3) 사례진행비 :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폰보조금 등의 경비 <p>※ 사례진행비는 경비성 비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액 지급(다만, 청소년 동반자 채용 시 해당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동반자: 월 195,000원 이상 - 시간제동반자: 월 90,000원 이상 <p>(중략)</p> 4) 사업운영비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회의비(팀회의, 자문회의 등), 소진예방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인당 예산 단가 외 기타 사항(이하 생략) <p>마. 종사자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교육(중략) - 특히, 신규 동반자(전일제·시간제 공통)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업무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함 <p>※ 신규 채용자 중 집합연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상시 개설하는 신규교육(e-러닝 과정) 중 "청소년안전망시스템</p>	<p>라. 종사자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동반자 예산의 구성 및 운영 방향 <p><청소년동반자 예산 체계(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인당 예산 단가(연) : 전일제 33,014천원 이상, 시간제 12,264천원 이상 1) '25년 예산 편성 기준 : 보수, 법정부담금, 사례진행비, 사업 운영비 등 <p>(중략)</p> 3) 사례진행비 :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소요되는 교통비, 휴대폰보조금 등의 경비 <p>※ 사례진행비는 경비성 비용이므로 사업 내 예산 구성 시 인건비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며, 정액 지급(다만, 청소년동반자 채용 시 해당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동반자: 월 245,000원 이상 - 시간제동반자: 월 90,000원 이상 <p>(중략)</p> 4) 사업운영비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회의비(팀회의, 자문회의 등), 상해보험 가입, 소진예방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인당 예산 단가 외 기타 사항(이하 생략) <p>마. 종사자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교육(중략) - 특히, 신규 동반자(전일제·시간제 공통)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업무교육*을 8시간 이상 수료해야 함 <p>※ 신규 채용자 중 집합연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상시 개설하는 신규교육(e-러닝 과정) 중 "청소년안전망시스템</p>	변경 · 신설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p>사용자 교육(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중심(4시간))을 연도 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p>	<p>사용자 교육(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중심(4시간))을 연도 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p> <p>※ 센터간 이직 또는 센터 내 직종 변경되었고, 근무공백이 6개월 미만이라면 신규교육을 면제함</p>					
<p>사업 운영 및 청소년 동반자 활동</p>	<p>다. 청소년동반자 컨설팅</p> <table border="1" data-bbox="367 578 775 1116"> <thead> <tr> <th data-bbox="367 578 775 625">수석 청소년동반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7 625 775 1116"> <p>◆ (자격요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p> <p>* 단, 수석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일제동반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석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p> </td> </tr> </tbody> </table>	수석 청소년동반자	<p>◆ (자격요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p> <p>* 단, 수석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일제동반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석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p>	<p>다. 청소년동반자 컨설팅</p> <table border="1" data-bbox="802 578 1188 1116"> <thead> <tr> <th data-bbox="802 578 1188 625">수석 청소년동반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02 625 1188 1116"> <p>◆ (자격요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p> <p>* 단, 수석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일제동반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석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 가능)</p> </td> </tr> </tbody> </table>	수석 청소년동반자	<p>◆ (자격요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p> <p>* 단, 수석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일제동반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석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 가능)</p>	<p>변경, 신설</p>
수석 청소년동반자							
<p>◆ (자격요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p> <p>* 단, 수석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일제동반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석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p>							
수석 청소년동반자							
<p>◆ (자격요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자격 요건에 적합하고, 전일제동반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시·도 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p> <p>* 단, 수석동반자 공개채용을 위해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격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일제동반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수석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컨설팅 비용 지급 가능)</p>							
<p>행정사항</p>	<p>2)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p>※ 사무 공간, 사무기기 등 임차 또는 자산취득, 사무실 등 공공요금, 동반자 활동과 무관한 사업(활동) 및 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은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비로 집행 불가</p>	<p>2)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p>※ 사무 공간, 사무기기 등 임차 또는 자산취득, 사무실 등 공공요금, 동반자 활동과 무관한 사업(활동) 및 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은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비로 집행 불가</p>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예산으로 지원 (17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시, 제출 또는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의무를 다해야 함 ○ 시·도 청소년동반자 사업 중 주요 항목 간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은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 시·군·구 청소년동반자 사업 중 주요항목 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단, 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 센터장의 내부 승인으로 전용가능하며, 예산 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예산으로 지원 (17개 시·도)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붙임1	시·도 별	동반자수			지원 청소년 수* (사례관리 목표)	시·도 별	동반자수			지원 청소년 수* (사례관리 목표)	변경
		전일제 (수석 포함)	시간제	계			전일제 (수석 포함)	시간제	계		
	서울특별시	55	137	192	5,758	서울특별시	52	140	192	5,830	
	부산광역시	40	66	106	3,430	부산광역시	39	66	105	3,430	
	대구광역시	21	49	70	2,158	대구광역시	23	48	71	2,230	
	인천광역시	22	33	55	1,822	인천광역시	22	32	54	1,798	
	광주광역시	17	32	49	1,558	광주광역시	16	28	44	1,414	
	대전광역시	14	44	58	1,702	대전광역시	13	40	53	1,558	
	울산광역시	13	29	42	1,246	울산광역시	12	29	41	1,246	
	세종특별자치시	3	6	9	262	세종특별자치시	3	6	9	288	
	경기도	102	257	359	10,654	경기도	100	260	360	11,014	
	강원도	21	26	47	1,606	강원도	22	26	48	1,654	
	충청북도	17	30	47	1,510	충청북도	18	30	48	1,558	
	충청남도	15	37	52	1,582	충청남도	17	43	60	1,822	
	전라북도	20	15	35	1,198	전라북도	19	12	31	1,174	
	전라남도	36	25	61	2,206	전라남도	37	28	65	2,422	
	경상북도	24	59	83	2,446	경상북도	23	59	82	2,494	
	경상남도	22	83	105	2,974	경상남도	20	78	98	2,806	
	제주특별자치도	6	13	19	574	제주특별자치도	6	13	19	574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 청소년쉼터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3. 시설장 및 종사자 복무관리 ○ 외부기관 출강	○ 외부기관 출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일하게 영리업무 판단기준 제시	신설
	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 가. 청소년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추가)	○ 이직자 교육 이수 기준 - 이직 전 법정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종사자 법정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연 단위 기준)	신설
	나. 법정교육 안내 • (추가)	• 자살예방교육 - 법적근거 : 자살예방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비고 : 인식개선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신설
	6. 종사자 안전대책 (추가)	6. 종사자 안전대책 -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폭언 등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휴게 시간,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아웃리치 활동 시 폭염, 한랭, 다습 등 기후 변화 노출에 따른 근로자 안전 예방 가이드 준수 (예 : 고용노동부의 열사병예방 가이드 등.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1시간에 10~15분 휴식)	변경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시설·설치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센터 입·퇴소규정, 계속 이용, 보호 기간 연장,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퇴소 등 포함 	변경																								
시설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사회복무 요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사회복무요원 교육 ○ 사회복무요원 교육흐름도 : 군사교육(3주/국방부) → 복무기본교육(1주/병무청) → 직무교육(근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사회복무요원 교육(법정 의무교육) ○ 직무교육 방법 - 소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관 자체교육 또는 교육기관의 전문교육 이수 ※ 사회복무요원 교육흐름도 : 군사교육(3주/국방부) → 복무기본교육(1주/병무청) → 직무교육(근무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 	변경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부담 및 지급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편성 후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국비 100%), 자치단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 실시·교육비 및 여비 등 집행 	신설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의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장 (상근)</th> <th colspan="2">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th> <th rowspan="2">행정원, 조리원</th> </tr> <tr> <th>팀장</th> <th>팀원</th> </tr> </thead> <tbody> <tr> <td>연봉 하한액 ~</td> <td>34,972 천원~</td> <td>31,941 천원~</td> <td>30,116 천원~</td> <td>28,178천원 ~</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장 (상근)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행정원, 조리원	팀장	팀원	연봉 하한액 ~	34,972 천원~	31,941 천원~	30,116 천원~	28,178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제의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설장 (상근)</th> <th colspan="2">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th> <th rowspan="2">행정원, 조리원</th> </tr> <tr> <th>팀장</th> <th>팀원</th> </tr> </thead> <tbody> <tr> <td>연봉 하한액 ~</td> <td>36,139 천원~</td> <td>33,033 천원~</td> <td>31,215 천원~</td> <td>29,270천원 ~</td> </tr> </tbody> </table>	구분	시설장 (상근)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행정원, 조리원	팀장	팀원	연봉 하한액 ~	36,139 천원~	33,033 천원~	31,215 천원~	29,270천원 ~	변경
	구분			시설장 (상근)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행정원, 조리원																				
팀장		팀원																									
연봉 하한액 ~	34,972 천원~	31,941 천원~	30,116 천원~	28,178천원 ~																							
구분	시설장 (상근)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거리상담전문요원, 야간보호상담원		행정원, 조리원																							
		팀장	팀원																								
연봉 하한액 ~	36,139 천원~	33,033 천원~	31,215 천원~	29,270천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배우자(월4만원),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월 10만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업무지침 준용 - 배우자(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4인까지), 만 19세 미만 자녀(첫째 월 5만원, 둘째 월 8만원, 셋째 이후 월 12만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요령 - 입소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심층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요령 - 입소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심층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연계 <p>* <서식1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뿐만 아니라 XI.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활용 → <참고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징구 필요</p>	
입소 및 퇴소 관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입소)상담 시 유의사항 ○ 피해자가 상담 신청 시 상담 방법 ※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사실 확인 또는 관련 사항 언급 주의 -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하도록 상담실 등 독립된 상담 공간에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 - 전문 상담 및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안내 ○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 <p>* 2차 피해(가해) 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변경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정기준 마련) • 보호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청소년에게 안내 및 보호자에게 이를 중심으로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연락 - (원칙)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청소년에게 안내 및 보호자에게 이를 중심으로 연락 • 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아야 함 ※ 시설 운영비로 보호자 연락 전용 휴대폰을 구비·사용하여 전화번호 검색 등으로 시설명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 - (예외)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친족에 의한 성폭력 포함)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음 • 가정폭력 및 학대를 호소하거나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친족에 의한 성폭력 포함), 경찰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대 아동을 연계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연계 기록을 남겨야 하며, 별도의 입증 자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이외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보호자 부재 등)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수신거부·연락두절·교정시설 입소 	변경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p>-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또는 연락 불가)하더라도 쉽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면서 위기상담 진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청소년과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고 보호자 연락 거부 이유 등에 대한 심층 상담 ※ 입소동의서, 초기면접 기록지 등에 청소년의 위기상황, ‘보호자 연락’ 유예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p> <p>▶ 72시간 내외로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p> </div>	<p>등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마련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별 판정 기준에 따라 예외 사례로 정하고, 사후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 사례별 판정기준에 공공기관을 통한 공식적 확인 절차 등 포함</p> <p>- (보호자 연락 거부 시) 보호자 연락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부동의 하더라도 쉽터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24시간 내외)하면서 위기상담 진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청소년과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고 보호자 연락 거부 이유 등에 대한 심층 상담 ※ 입소동의서, 초기면접 기록지 등에 청소년의 위기상황, ‘보호자 연락’ 유예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p> <p>▶ 72시간 내외로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퇴소 시 고위기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장 판단에 따라 보호시간 연장 하되, 사후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p> </div>	
	<p>○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 시설이용자.....지체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p>	<p>○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안내 - (삭제)</p>	변경
	<p>○ 퇴소 시 조치사항 - 해당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부득이한 퇴소는 쉽터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 범위 및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승인 필요</p>	<p>※ 긴급히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 허용 (3-2-3. 청소년복지시설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참조)</p>	변경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4.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 피해 사실 확인 방법	- 확인서, 확인원 외 '해당 내용으로 입소연계한다는 내용의 공문' 추가	변경
청소년의 인권 및 보호	○ 실종아동 신고의무 준수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며, 이때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경찰관서로 지체없이 알려야 함 - (신설)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며, 이때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경찰관서로 지체없이 알려야 함 ※ 경찰(182 또는 112)에 신고 - 신상카드 제출 : 실종아동 신고 시 신상카드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같음 ※ 입력방법 : 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대상자 기본정보관리' 메뉴 접속 → ② '대상자 기본정보' 메뉴입력 후 저장(대상자의 가족(연고) 유무 체크 후, 사진파일 첨부 필수) → ③ '실종정보' 입력 후 저장(가능한 파악한 모든 정보를 입력)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신상카드 정보는 지자체(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실종아동전문기관(실종아동시스템) 시스템에 자동 제출	변경

■ 참고자료 및 서식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서식	[서식2]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사업계획서 [서식3] 쉼터/자립 정산 및 실적보고서 [서식5-1] 청소년쉼터 분기 운영 실적보고 [서식5-2] 자립지원관 분기 운영 실적 보고 [서식5-3] 회복지원시설 상/하반기 운영실적 보고서 [서식40] 회복지원시설 정산 및 실적 보고서	-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맞게 서식 변경 - 계획서와 실적보고서의 항목 일치 등	

■ 청소년자립지원관

※ 시설운영 등 청소년복지시설 공통사항은 청소년쉼터 부분 참조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재무회계	<신설>	5-3. 예산 집행 ※ 사례관리, 자립지원수당 수급자/공공임대 주택 입소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예산집행 가능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운영 등 청소년복지시설 공통사항은 청소년쉼터 부분 참조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재무회계	<신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소 당 예산 배정안 (단위 : 천원, 명)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인건비</th> <th rowspan="2">운영비 (B)</th> <th rowspan="2">총 예산액 (C)</th> <th rowspan="2">국비 (D=C× 50%)</th> </tr> <tr> <th>지원 인원</th> <th>인건비 (A)</th> </tr> </thead> <tbody> <tr> <td>3</td> <td>107,904</td> <td>11,919</td> <td>119,823</td> <td>59,912</td> </tr> </tbody> </table>	인건비		운영비 (B)	총 예산액 (C)	국비 (D=C× 50%)	지원 인원	인건비 (A)	3	107,904	11,919	119,823	59,912	
	인건비		운영비 (B)	총 예산액 (C)				국비 (D=C× 50%)							
지원 인원	인건비 (A)														
3	107,904	11,919	119,823	59,912											
	- 법원에서 위탁보호청소년 1인당 지급되는 교육비(감호에 관한 비용)는 위탁보호청소년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사무비로 사용불가 * 단, 청소년 생활지원을 위한 운영비는 일부 사용 가능(위탁감호비의 10% 이내)	* 단, 청소년 생활지원을 위한 운영비는 일부 사용 가능 (해당 예산 소관인 지방법원 승인 범위 내)	변경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자립 지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p>1-1. 사업개요</p> <p>라.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 일을 의미함(이하 같음). 	<p>1-1. 사업개요</p> <p>라.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 일을 의미함(이하 같음). 한편 퇴소일은 요건이 충족되었던 과거의 '퇴소일'을 포함하며 요건을 충족한 '퇴소일'이 1개인 경우 해당 퇴소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퇴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신청하려는 때부터 가장 가까운 퇴소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가능) 	
	<p><신설></p>	<p>바. 업무흐름(수급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등록) 자립 지원수당 수급자 결정 시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 등록 및 변동관리 	
	<p><중복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p><중복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립 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p><자립지원수당 관련 시설 업무흐름></p> <p>- 청소년쉼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퇴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퇴소자 중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락·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div>	<p><자립지원수당 관련 시설 업무흐름></p> <p>- 청소년쉼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퇴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퇴소자 중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락·안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div> <p>* '청소년안전망'자원·사업관리)자립지원 수당)수급가능자 조회 및 매칭'에서 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요건 충족 여부 정기적 확인 필요</p>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제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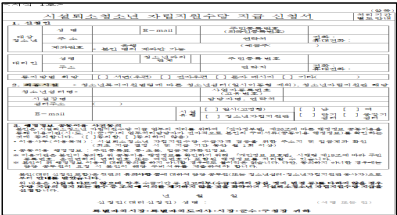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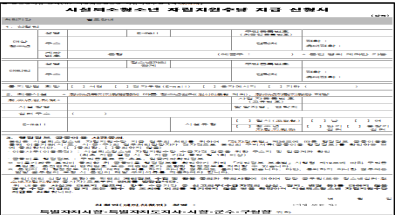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자립 지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 ③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 시설 입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 ③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 시설 입소, ▲재입소 등) 	
		<p>1-4. 수급자 관리</p> <p>나. 신고 사항</p> <p>(1) 지급 정지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점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날 - 지급정지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① 청소년쉼터 입소 확인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 입소 수급자에게 통지, ② 퇴소 시 지급을 재개하되, 쉼터 입소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지급이 정지된 개월만큼 추후 연장하여 지급 	
	<p><서식 1호>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p> 	<p><서식 1호>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p>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p>〈서식 5호〉</p> <p>4.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소년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p>〈서식 5호〉</p> <p>4.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 청소년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청소년쉼터 재입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에 포함 -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으로 34세 이하인 자 - (훈련비) 1인당 5년간 500만원 까지 횡수 제한 없이 지원 - (자부담) 없음, 단 직종 평균 취업률 40% 미만 과정은 20% 자부담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신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 월 1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 월 14,000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재 가능한 유통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카드사</th> <th>온라인</th> <th>오프라인</th> </tr> </thead> <tbody> <tr> <td>BC 카드</td> <td>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td> </tr> <tr> <td>삼성 카드</td> <td>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세븐일레븐 편의점,PK마켓, 부츠(boots)</td> </tr> <tr> <td>롯데 카드</td> <td>롯데카드 명샵</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롯데마트,VIC마켓, 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td> </tr> <tr> <td>신한 카드</td> <td>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td> <td>GS25편의점, CU편의점</td> </tr> <tr> <td>KB 국민 카드</td> <td>KB국민몰, 국민행복몰</td> <td>GS25편의점, CU편의점</td> </tr> </tbody> </table>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 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	삼성 카드	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세븐일레븐 편의점,PK마켓, 부츠(boots)	롯데 카드	롯데카드 명샵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롯데마트,VIC마켓, 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 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 국민 카드	KB국민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재 가능한 유통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카드사</th> <th>온라인</th> <th>오프라인</th> </tr> </thead> <tbody> <tr> <td>BC 카드</td> <td>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쿠팡</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td> </tr> <tr> <td>삼성 카드</td> <td>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td> </tr> <tr> <td>롯데 카드</td> <td>롯데카드 명샵,엘포인트몰, 배방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롯데마트, VIC마켓,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td> </tr> <tr> <td>신한 카드</td> <td>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td> <td>GS25편의점, CU편의점</td> </tr> <tr> <td>KB 국민 카드</td> <td>KBPAY쇼핑,국민행복몰,쿠팡</td> <td>GS25편의점, CU편의점</td> </tr> </tbody> </table>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 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	삼성 카드	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 카드	롯데카드 명샵,엘포인트몰, 배방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롯데마트, VIC마켓,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 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 국민 카드	KBPAY쇼핑,국민행복몰,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 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																																				
삼성 카드	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세븐일레븐 편의점,PK마켓, 부츠(boots)																																				
롯데 카드	롯데카드 명샵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롯데마트,VIC마켓, 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 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 국민 카드	KB국민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 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																																				
삼성 카드	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 카드	롯데카드 명샵,엘포인트몰, 배방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롯데마트, VIC마켓,GS더프레시,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 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 국민 카드	KBPAY쇼핑,국민행복몰,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사업 개요	1-5. 운영절차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	1-4. 운영절차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td> </tr> <tr> <td>지원 기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p>*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해당</p>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p>*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해당</p>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구분	내 용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p>*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해당</p>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대상자 신청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2-1. 대상자 가. 나이 기준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2-1. 대상자 가. 나이 기준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삭제	
특별지원 선정 조사	3-2. 소득조사 근로 소득 공제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30% 공제, 65세 이상, 장애인,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적용)	3-2. 소득조사 근로 소득 공제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30% 공제, 65세 이상, 장애인,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적용)	
특별지원 선정 절차	4-1. 심의위원회 심의 2) 심의 예외사항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쉼터, 사이버 포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와 같이 가정 밖, 성매매 노출위험 등 보장처리 기한(30일)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4-1. 심의위원회 심의 2) 심의 예외사항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쉼터, 사이버 포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와 같이 가정 밖, 성매매 노출위험, 생계·건강 등 보장처리 기한(30일)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4-3. 사후관리 라.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4-3. 사후관리 라.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대상자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중지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p>2-3. 설치·지정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인력</td> <td>· 6명 이상(사·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기준	인력	· 6명 이상(사·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포함	<p>2-3. 설치·지정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인력</td> <td>· 7명 이상(사·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2명 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기준	인력	· 7명 이상(사·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2명 포함	변경
	구분	세부기준									
인력	· 6명 이상(사·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1명 포함										
구분	세부기준										
인력	· 7명 이상(사·도 센터)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력 2명 포함										
	<p>3-2. 안전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은 피난, 연소방지 시설 구비 등 소방안전시설기준 준수 ○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 구비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내·외부 활동 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의무 	<p>3-2. 안전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은 지진, 화재 등 재난 대비 피난, 연소방지 시설 및 물품 등 구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적용 ○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 구비 * 약사법에 따라 비상약품은 의약품만 가능하며,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 비치 가능 ** 청소년에게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와 청소년이 동행하여 약국에서 구매하여 지급 가능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내·외부 활동 시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의무 -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 시에는 여행자보험 등을 추가 가입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함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센터별 안전관리책임자(센터장 또는 팀장) 지정, 자체 안전대응매뉴얼 작성·관리 ※ 자체 안전대응매뉴얼: 현장상황에 맞게 재난 상황시 신속한 대비를 위한 제반사항 포함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p>※ 센터가 속한 기관 건물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건물 전체의 통합 안전대응 매뉴얼이 이미 있을 경우, 별도 지정 및 작성 관리 필요 없음</p> <p>○ 건물 화재보험,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p>	
	〈신설〉	<p>3-3. 직원 인사 나. 직원 채용(중략)</p> <p>○ 선발 방법 및 운영</p> <p>- 상위직급을 하위직급에서 선발하는 경우 승진으로 간주하며,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p> <p>* 센터장을 팀장 중 선발, 팀장을 팀원 중 선발하는 경우 등</p> <p>** 단, 선발된 인원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함</p> <p>- 직원 결원 발생 시,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p>	
	<p>3-3. 직원 인사 사. 직원 교육(중략)</p> <p>○ 모든 직원은(센터장 제외)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온·오프라인)을 수료해야 함</p> <p>* 신규직원 교육, 전문인력(꿈드림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및 지도자) 양성교육, 보수교육 및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교육 주관기관의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을 의미</p> <p>- (신규직원교육) 신규직원은 3개월 이내 신규직원 교육을 수료해야함</p> <p>- (전문인력 양성교육)</p> <p>• 시·도센터 종사자 중 청소년상담 복지분야 5년 이상 근무자는 3종 이상의 꿈드림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매년 1종 이상씩 3년 이내 수료)</p>	<p>3-3. 직원 인사 사. 직원 교육(중략)</p> <p>○ 모든 직원은(센터장 제외) 전문성 향상을 위해 15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온·오프라인)을 수료해야 함</p> <p>* 신규직원 교육, 전문인력(꿈드림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및 지도자) 양성교육, 보수교육 및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교육 주관기관의 수료증, 이수증, 교육 참가 확인증 등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을 의미</p> <p>- (신규직원교육) 신규직원은 3개월 이내 신규직원 교육을 수료해야함</p> <p>- (전문인력 양성교육)</p> <p>• 시·도센터 종사자 중 청소년상담 복지분야 5년 이상 근무자는 꿈드림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3년 내 2종 이상 수료)</p>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센터 종사자와 시·도센터 종사자 중 <u>청소년상담복지분야 5년 미만 근무자는 3종 이상의 꿈드림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24년부터 매년 1종 이상씩 3년 이내 수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센터 종사자 중 1년 초과 근무자와 시·도센터 종사자 중 <u>청소년상담복지분야 5년 미만 1년 초과 근무자는 꿈드림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3년 내 2종 이상 수료)</u> 	
	〈신설〉	<p>3-3. 직원 인사</p> <p>사. 직원 교육(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자 교육 이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직 전 법정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중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종사자 법정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연 단위 기준) • 센터로 이직한 경우(예 : A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 B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센터 내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 (예 : 계약직 → 정규직) • 타 기관에서 당해연도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기관장 직인, 이수증 등을 통해 동일 교육 이수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함) 	
	<p>3-3. 직원 인사</p> <p>아. 종사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휴게 시간, 수진방지 프로그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그 외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센터 이용자 중 타 이용자의 센터 이용을 방해하거나 센터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센터의 사례회의를 통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p>3-3. 직원 인사</p> <p>아. 종사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종사자 건강장애 예방조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상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황별로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를 지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p>* 대표전화 링고 내 성희롱, 폭언 금지 안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 안내 문구 삽입 등</p>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그 외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u>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u> <u>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u> - 성희롱, 언어 폭력 등에 노출된 상담사에게 휴게시간 제공 - 고위기 사례 개입으로 2차 PTSD가 우려되는 경우, 휴게시간 부여 - 휴게공간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공간 마련 필요 - 그 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p>4-1. 예산의 관리</p> <p>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원칙 - 예산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예산변경 시에도 사업비 편성 기준 준수 - 예산 항목 간 변경 및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경비 및 예산 변경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변경 집행 가능. 단, <u>주요 항목 내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u> 센터장의 내부 승인 후 전용 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p>4-1. 예산의 관리</p> <p>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원칙 - 예산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예산변경 시에도 사업비 편성 기준 준수 - 예산 항목 간 변경 및 주요 항목 내(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서의 소요경비 및 예산 변경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변경 집행 가능. 단, <u>시·도센터는 주요 항목 내 300만원 미만, 시·군·구 센터는 100만원 미만 예산 변경 필요시</u> 센터장의 내부 승인 후로 전용가능하며, 예산전용 후 1주일 내 지자체에 공문 보고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p>4-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나. 연계방법</p> <p>1)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연계 가) 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의무교육 대상(초·중학교) 청소년</u> - (자동 연계) 의무교육 대상(초·중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없을 경우에도 지원센터에 연계(질병 또는 출국 사유인 경우 제외) • 다만, 「<u>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u>」 적용(사전 동의를 받아 연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u>의무교육 대상자에 한해 사전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u>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등학교 대상 청소년</u> - (개인정보제공 동의) <u>고등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연계</u> 	<p>4-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나. 연계방법</p> <p>1)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연계 가) 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초·중·고등학교 청소년</u> - (자동 연계) <u>초·중·고등학교 청소년</u>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없을 경우에도 지원센터에 연계(질병 또는 출국 사유인 경우 제외) <p>(삭제)</p> <p>(중략)</p> <p>(삭제)</p>	변경
	<p>4-4.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마.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사례등록 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p>4-4.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마.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안전망시스템에 사례등록 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p>※ 사·도센터는 시·군·구센터에 사례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급식지원 가능</p>	변경
<p>5-2. 평가 나. 평가운영(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 주기 : 3년</u> <p>※ 최초 센터 평가는 2025년 시행 예정</p>	<p>5-2. 평가 나. 평가운영(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경과 및 계획 - 2021. 3.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평가 의무화 - 2025. <u>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 평가 실시</u> 	변경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 사업 인프라, 운영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 노력도, 우수 운영사례 등 ○ 평가결과를 <u>기관</u>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위탁운영기관 종료 이전에 여성가족부의 센터평가를 참조 활용 ○ 평가를 위해 제출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관련 각종 증빙자료는 3년 보관 후 자동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영역 : 사업 인프라, 운영성과, 센터 협력도,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노력도, 우수 운영사례 등('22년~'24년 실적) ○ 평가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u>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0개소</u> ※ '23년 개소한 강원 평창군, 경기 연천군 센터는 평가 제외 ○ 평가 추진일정(안) -(표 생략) ○ 평가결과를 <u>지원센터</u>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위탁운영기관 종료 이전에 여성가족부의 센터평가를 참조 활용 ○ 평가를 위해 <u>온라인 평가시스템</u>에 제출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관련 각종 증빙자료는 3년 보관 후 자동 폐기 											
	<p>붙임 3.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p> <p><input type="checkbox"/>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_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 ○ 청소년 	〈삭제〉											
	<p>별표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지원비 운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비 세부기준 <table border="1" data-bbox="344 1430 756 1549">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사례 판정 회의</td> <td>-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판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사례 판정 회의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판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p>별표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지원비 운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비 세부기준 <table border="1" data-bbox="778 1430 1189 1686">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사례 판정 회의</td> <td>-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판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td> </tr> <tr> <td>- 사례판정회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 운영</td> </tr> <tr> <td>- 신청인 직접 이해관계자(친족 등) 사례판정회의의 참여 금지</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사례 판정 회의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판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사례판정회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 운영	- 신청인 직접 이해관계자(친족 등) 사례판정회의의 참여 금지	변경
구분	내용												
사례 판정 회의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판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구분	내용												
사례 판정 회의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판정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사례판정회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 운영												
	- 신청인 직접 이해관계자(친족 등) 사례판정회의의 참여 금지												

7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 내용 전면 개편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 사이버도박 조사대상 : 초등4학년, 중등1학년, 고등1학년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 11박 12일 ○ 가족치유캠프 :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미디어(인터넷·스마트폰·사이버도박) 이용습관 진단조사 - 사이버도박 조사대상 : 중등1학년, 고등1학년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 7박 8일 ○ 가족치유캠프 : 12회 	변경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2,29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2,361천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호봉제 가능 문구 신설 ○ 채용절차 일부 완화 	변경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 캠프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 캠프 5회 - 초등학생 시범캠프 실시 	변경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변경

※ 참고 :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유의사항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차년도 3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4항」에 의해 차년도 중에 보조금 잔액 반납 필요
- 연례적 보조금 반납 지연 등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조치가 가능하며, 반납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추경편성 및 담당자 인계인수 철저 등 필요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 보조금실적보고 지연 시 보조금 삭감
-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차년도 예산 교부 시 상계 조치
- ③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45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을 행안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함('24.10.22 개정)
- ④ 2023년 국회 결산 지적사항
 - (여가위) 보조사업자가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상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
 - (예결위) 정부는 지자체보조사업의 잔액 미반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제 2 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 I. 청소년정책위원회
- II.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III.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 IV.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청소년 분야)
- V.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I 청소년정책위원회

1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2 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위원
 - 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
 - 위 원 (26명)
 - 당연직(13명)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차관)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장 등)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위원(6명)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 청소년위원(6명)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청소년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기 능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II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1

목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
-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여

2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4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추진경과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법적근거 마련('15.5월)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운영('16.6~8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별평가 인정('17.3월)
- 청소년정책 지정과제 분석평가 실시('17년, 42개 지자체 대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18년, 19년 17개 시·도 및 시·군·구 50%(114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19년, 17개 시·도 및 시·군·구 50%(114개))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0년~ 현재,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가. 대상 기관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나. 평가 체계

-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정책 영역별 실적 중심의 평가 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 중심의 평가
 - * '21년 평가부터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으로 확대 적용

다. 평가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과정	실적보고서 제출	서면 평가	자료 보완	질의응답 진행 후 최종평가	최종 평가 결과 확정	평가환류
대상	평가 참여 기관	평가 위원	평가 참여 기관	평가 위원	평가 위원	평가 참여 기관
내용	실적 보고서 제출 (증빙자료 포함)	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자료보완 요청 해당 기관의 추가자료 제출	실적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및 조별 평가 의견 작성	필요시 '평가 감수 위원회'를 거쳐 결과 확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우수지자체 포상

라. 평가지표

-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 구성

* 시·도 및 시·군·구 각 12개 세부 평가지표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지표 ■

평가 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시·도 및 시·군·구(12개 지표)
1. 정책형성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② 정책기반 확보수준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2. 정책집행	③ 추진과정의 효율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④ 정책소통 노력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3. 정책성과	⑤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전년도 평가 개선의견 반영의 충실성 여부’ 내용 포함

【붙임1】 2025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운영목적

-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점검 및 정책 분석·평가를 통한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 지원
 -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법적근거 마련(「청소년기본법」 제14조 개정, '15.5.4 시행)
- 정책 현황 분석 및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

□ 주요 내용

- 청소년정책 의제개발 및 선제적 정책 대응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현안 분석 등 이슈리포트 제작 및 정책 포럼 운영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우수지자체 포상 추진
- 중앙 및 지자체 시행계획 취합 및 이행사항 점검
- 청소년정책·통계 허브 역할 수행 및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 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추진체계



Ⅲ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1

포상 개요

가. 추진 목적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우수기관 격려
- 청소년정책 관심도 제고 및 청소년 업무 추진의 적극성 유도

나. 추진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60조(포상)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 대상 기관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라. 선정 기준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마. 포상 훈격 및 규모

-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5점('24년 기준)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3월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인센티브 부여

- 재정인센티브 : 포상금 수여
※ 포상규모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인센티브 : 우수 지자체 관계공무원에 차년도 국외연수 기회 제공 가능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선정 계획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 심사
- 포상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지실사 및 대국민 검증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추천 제한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관련법 등을 위반한 기관
- 제시한 공적내용이 현장실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 등

나. 포상 대상기관 추천계획

- 추천 시기 : 8~9월(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결과 산출 이후 예정)
- 추천 접수기한 : 10월(청소년정책과)
- 추천 절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구비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성요령
공적조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 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 (A4용지 2매 이상)
공적요약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요약서를 각각 작성 (공적요약은 공백포함 1,000자 이상)
포상 동의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포상 관련 절차 등 동의
그 외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기관 조회 관련 자료 작성 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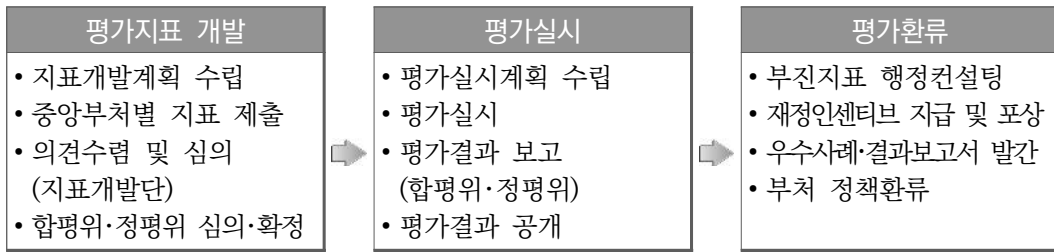
추진 일정

-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 2~3월
- 202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24년 실적) 등 수합 : 8~9월
 - ※ 202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 시기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지자체에 포상대상기관 통보 및 추천 요청 : 10월
- 정부포상 대상기관 공적 공개검증 : 10월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부24, 행정안전부 상훈 포털사이트
- 추천 제한 여부 확인 : 10월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관련법」등 위반 여부 조회
- 정부포상 대상기관 공적 현지실사 : 10~11월
-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11월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 상훈시스템 입력 및 대상기관 추천 : 11월
-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예정) : 12월

1

합동평가 현황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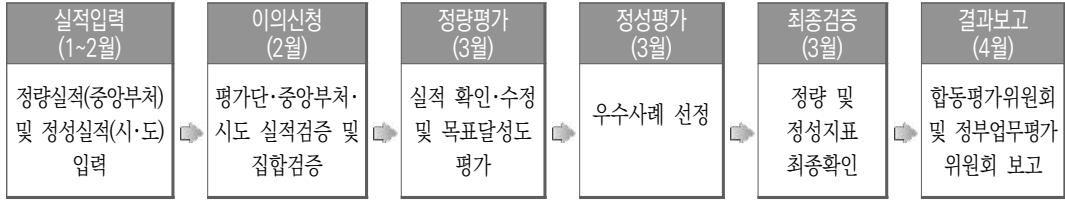
-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

2

실시 계획

- 대상기관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지표 : 정량지표 2개, 정성지표 1개
- 평가기간 : '25.1~3월(실적기준일 : '24.1.1. ~ '24.12.31.)
- 평가수행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24.12월)
- 평가방법
 - 실적입력(VPS시스템)
 - (정량) VPS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에 대하여 검증(증빙자료 확인 등)을 완료한 최종 통계자료 입력(중앙부처)
 - (정성) 우수사례 요약서 및 증빙자료 입력(시·도)

○ 평가절차



○ 후속조치 : 정책환류,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3 평가 지표 상세

○ '25년('24년 실적) 평가지표

국정과제	지표번호	지표명	담당부서
4-17-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17-92-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청소년정책과
3-9-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9-48-라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3-9-48-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청소년보호환경과

※ (참고) '26년('25년 실적) 평가지표

국정과제	지표번호	지표명	담당부서
4-17-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4-17-92-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우수사례	청소년정책과
3-9-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3-9-48-라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3-9-48-마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청소년보호환경과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현황 및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89개) 내 청소년 인구 지속 감소*로 지역 성장동력 상실 등 국가균형 발전 저해 우려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감소비율 ('10) 95만명 → ('23) 56만명 / △41%
인구감소 이외 지역 청소년 인구감소비율 ('10) 957만명 → ('23) 733만명 △23%

- 지역 간 인구분포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 거주 청소년에게 충분한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제약 발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정보제한 등으로 청소년 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악순환 반복, 격차완화를 위한 지원 긴급

•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소년은 '불편한 대중교통(이동권 제약)', '놀이와 활동공간의 부족' 등을 지역문제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2024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 방안 연구)

나. 그간 추진경과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19. 고시)
 -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 지정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24.6.17)
 - *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 법적·제도적 지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연계 항목 평가 시 우대 등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등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을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24.7.5)
 - *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지역 선정 공고('24.9.23~10.14)
 - * 사업 운영지역 선정심사위원회 개최(10.22)
- [보도]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역 선정 안내('24.11.5)
 - * (강원도)고성군 / (충청도)논산시, 단양군, 보은군, 청양군 / (전라도)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 (경상도)거창군, 산청군

- 모든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 운영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

* (심사기준) 사업 계획(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자체의 관심도 및 연계·협력의 적극성, 창의성), 가점(자유공간 설치·활용 계획)

- 신규사업 운영 지역의 경우 3년간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지속 운영 가능
 - 단, 3개월 이상 프로그램 등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변경한 사업추진, 예산의 임의 사용, 기관의 영리활동과 결합된 사업 운영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연계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청소년단체 및 시설, 지역교육청, 학교 간 지원 협업 체계* 구축

- (주요기능)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활동·참여 기회 확대 등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각급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 유휴공간 일부를 활용한 청소년 자유공간*을 확보해 자기주도활동 및 특화사업 운영 등

*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소모임, 문화공간, (북)카페, PC존, 밴드 및 보컬 연습실, 댄스연습실, 독서토론, 진로특강, 체험장 등을 위한 공간

- 지역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워크숍, 중간점검 및 지역별 컨설팅,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등 역량강화교육 운영 지원

- 핵심 성과지표 및 지역별 사업 성과지표 분석 등으로 사업 효과성 측정 지원

가. 목 적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에게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및 청소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인 청소년에게 자기주도적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지역 간 교류 활동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활동 경험 격차 해소
- 다각적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인구 유출 최소화

나.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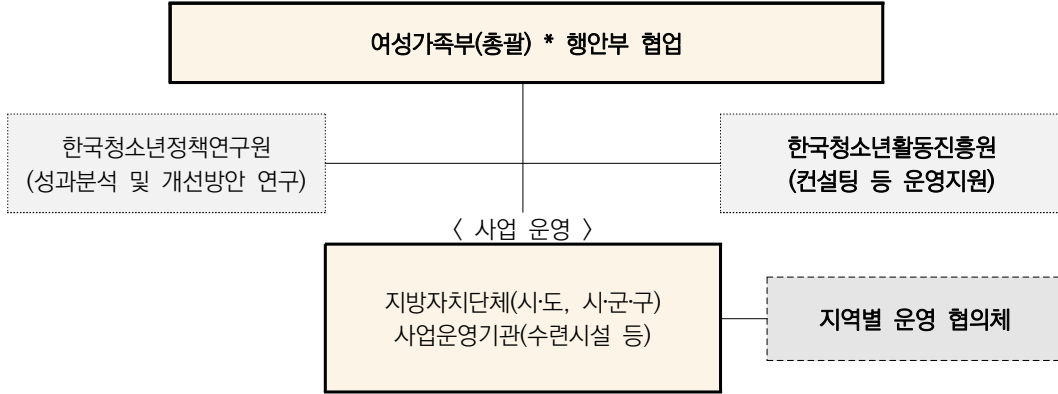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국정과제 48(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5-2-3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정책적 지원 확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4장(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등

다. '25년 사업운영 지역

- 총 11개 시·군
 - (강원) 고성군, (충청) 논산시, 단양군, 보은군, 청양군, (전라)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경상) 거창군, 산청군, 안동시
 - * '25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사업운영 지역의 단계적 확대 추진

라.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국정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운영현황 점검 ○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연계사업 추진 시 평가 우대 및 투자협약 체결 시 가점 부여(26년부터) 등 *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의 투자계획서 내 사업계획 변경 추진 허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 관리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장지원 공모사업 운영현황 종합관리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설명회 운영 지원 ○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컨설팅(프로그램 포함) 등 운영 개선 지원 ○ 사업 운영 기관 및 코디네이터 역량개발 교육 등 지원 ○ 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 자유공간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 사업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성장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도·관리·감독 ○ 지역 내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청소년 성장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 청소년의 복합적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 자유공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상 자유공간 리모델링 비용 확보 * 지원근거 :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업무협약(MOU) ○ 예산확보,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결과 제출
청소년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원 사업 운영 지원 코디네이터 채용 ○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 개발·운영 ○ 자유공간 활용한 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 ○ 연간 사업 지역 맞춤형 홍보 ○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사업실적 결과 제출

마. 주요 사업내용

□ 청소년 자유공간 확보

- 각급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 유휴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확보
-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소모임, 문화공간, (복)카페, PC존, 밴드 및 보컬 연습실, 댄스 연습실, 독서토론, 진로 특강, 체험장 등을 위한 공간

※ (지자체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사례, '23.12월 기준)

경기도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카페, 파티룸, pc존, 밴드실, 체험활동룸), 군포시 '틴터'(pc존, 댄스룸, 홀, 간이주방 등), 충북 제천시 '꿈뜨락'(미디어제작실, 밴드연습실, 보컬 및 댄스 연습실, 멀티게임방), 충남 공주시 '청춘1318'(카페, 바리스타 체험장, 소모임 휴식공간 운영 등), 경남 남해군 '쉽표'(북카페, 아지트 운영) 등

□ 청소년의 성장지원 사업 운영

- 자유공간 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
지역탐방, 도농 교류, 문화예술체험 등 지역특화사업 기획

- * (청양군) 인구소멸위기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상을 위한 영상 공모전
- * (천안시) 「행복드림체험학교」 사업 : 지역 청소년 시설 및 교육기관 등 마을과 함께하는 방학 돌봄지원, 원도심 지역간 찾아가는 소통버스, 타 시·도와의 상호 교류프로그램 등 운영 등
- * (진해구) 자유학기제와 연동한 지역 테마 중심의 특화사업(교구 개발) 운영,
- *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오후 8시에 출발하는 귀가차량 운영 - 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귀가 시 일반청소년 귀가지원
- * (고성군) 청소년 우대카페(청소년 할인) 운영

□ 연계·협업 체계 구축 등

- 지역사회 내 지자체 주도로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지역교육청, 학교 간 지원
연계·협업 체계 구축

바.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총11억원

- 지역별 100백만원(국비 50% : 지자체 50%)

■ 산출내역(예시) ■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자기주도 프로그램	30,000,000	- (프로그램 운영비) 3,000,000원×10회
지역 특화사업	30,000,000	- (프로그램 운영비) 4,000,000원×6회
특화사업 코디네이터	40,000,000	- (인건비) 3,000,000원×12월 - (사회보험료) 4,000,000×1인

※ 시범사업 운영 지역 특성·여건에 따라 실제 편성내역은 달라질 수 있음

〈 참고 :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협업 예산(안) 〉 *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MOU(24.6.17)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예산 지원(개소당 1억원*)

* 행안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활용 권장

*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가 기금 투자계획서 내 사업계획 변경 추진 허용

※ 참고

구분		주요내용	
사업운영 *예산액 100백만원	자기주도 프로그램	예산액 20~40%	배움과 쉽이 있는 청소년 자기주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프로그램
	특화사업	예산액 20~40%	지역탐방, 도농교류, 문화 예술체험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
	코디네이터	예산액 40% 이내	지역사회 내 지자체,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지역교육청, 학교 간 학교 안팎 성장지원 연계·협력 구축 지원
시설운영 등 *지자체 확보	공간확보	유휴공간	각급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 일부를 '청소년자유공간'으로 확보
	시설개선	소멸대응기금 100백만원내	지역별 지방소멸기금 확보('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포함)
	협업체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업체 구성·운영

사. 추진 일정

- 2025년 사업운영 계획서 보완·제출('25.1월)
 - 사업 성과지표(핵심/재량) 등 운영지침 내용 포함 후 수정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지침설명회 : '25. 2월
- 지역별 투자협약 체결 : '25. 5월
 - 지방소멸대응기금 매칭 지원(행안부 협업)을 위한 지자체 투자 협약체결
 - 여가부, 참여지역 인구감소지역 투자협약(MOU) 체결* 추진(~'25.5월)
 - * 협약체결 시 지방소멸기금 활용 우수지자체 선정(행안부)에서 우대(협업 가점 부여 등)
-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교육 : '25. 3월, 8월 예정
- 사업 중간 점검('25.7) 및 현장 지원 점검(수시)
- 지역별 사업 운영 컨설팅 : '25. 상·하반기
- 사업 완료('25.10.31.) 및 사업 운영 평가('25.11.중)
- 최종보고회 및 우수 사례 공유 : '25. 11월 말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지침설명회		○										
지역별 사업 운영		○	○	○	○	○	○	○	○	○		
투자협약체결					○	○						
현장점검				○	○	○	○	○	○			
지역별 컨설팅					○				○			
역량강화교육			○					○				
사업 운영 중간 점검							○					
사업 완료 및 사업 운영 평가										○	○	
최종보고회 및 우수사례 공유											○	

참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간 일정(안)

추진 시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연구기관		운영기관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검토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계획 논의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침 설명회 * 사업 방향 및 추진 일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디네이터 채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디네이터 채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안내 전담 인력 역량 강화 교육 * 사업 책임자, 담당자 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사업참여 청소년 모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계획 논의 홍보 등을 통한 모집
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점검 및 지역별 컨설팅 * 활동(지역특화, 자기 주도 활동),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시설 활성화 정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투자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및 시설 운영 * 활동, 지원협의체 구성 등 시설 안전 점검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중간 점검 * 사업 집행률, 활동 운영 진행률, 참여 청소년 인원 등 중간보고실적 점검 * 활동 운영 진행 상황 공유, 권역별 교류 활동 등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속 관리 중간보고서 검토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속 중간보고서 작성 사업 현황 보고 권역별 전담 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 인력 워크숍 운영 * 사업 운영 노하우 등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속 전담 인력 워크숍 참석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점검 및 지역별 컨설팅 * 지역별 사례 발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속 관리 사업 사례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속 사업 사례 발굴
10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완료 및 사업 운영 평가 최종보고회 운영 *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우수사례 발굴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정산 보고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 3 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I. 청소년 참여 증진

II.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I 청소년 참여 증진

1 청소년 참여의 의의와 유형

가. 청소년 참여의 의의

- (정의)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 참여란?

- 기본적 시민권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Hart, 1997)
-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Unicef, 2003)

- (기능)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고 행사하며,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나. 청소년 참여의 유형

- 청소년은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에서는 정책, 사업, 예산, 입법 등에 청소년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특히,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조정·시행 과정 등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개정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청소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과정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역량을 함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실현

나. 추진경과

-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4월 제주도,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 2004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시범 개최하고 2005년부터 매년 개최
- 2012년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 강화를 통한 청소년 중심의 수요자형 정책추진으로 정책결정 참여 부문 UN공공행정상 수상
- 2020년 이후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 기능 개선,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등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 추진

다. 참여기구 유형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주체	여성가족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법적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과정에 참여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 참여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중앙(국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의 경우, 청소년특별회의와 통합하여 운영 중

라.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안내·운영매뉴얼 배포 및 역량교육 지원 ○ 청소년 참여기구 언론 홍보 등 총괄 ○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점검·평가, 우수기관 발굴·표창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과
	위탁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위원 위촉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출범식, 정책발굴워크숍, 결과보고회 등 기획·진행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도	담당 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총괄 ○ 시·도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행·재정적 지원 ○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 운영 성과(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기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구성,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진행 - 시·도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지원 ○ 지역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지원 (컨설팅, 연합활동,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등)
시·군·구	담당 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 총괄 ○ 자치단체장 간담회,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행·재정적 지원 ○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 운영 성과(제안과제 모니터링 등) 관리
	위탁 운영기관 (위탁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구성, 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진행 - 시·도 단위 연계활동 참여 및 협조(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석, 시·군·구 대표 위원 시·도 참여위원회 참석 등)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이행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성장역량 함양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 '04년에 시범사업 후 매해 개최
- '18년부터 시·도 참여위원회 위원 전원을 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
- '24년부터 공개모집 및 시·도 추천을 병행하여 특별회의 위원 선발·위촉

□ 주요 기능

-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제안된 정책의 추진상황 및 이행현황 점검
- 청소년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모니터링, 자문 및 평가
-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 설문조사, 토론회, 캠페인 및 청소년 행사 등

□ 구성방법

- 공개모집, 시·도 추천 등을 통해 총 100~150명 내외로 구성

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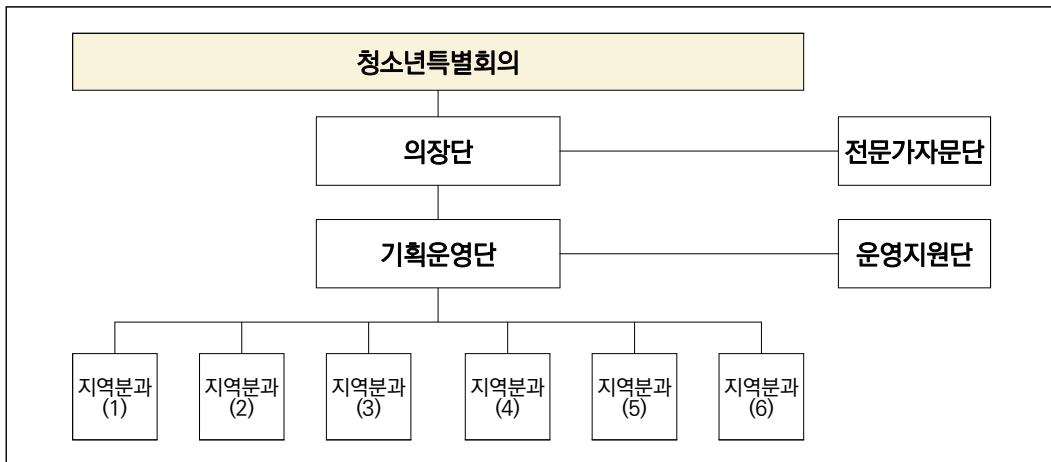
(1) 청소년위원

□ 모집 및 선발

구분	기능 및 역할
공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위원 모집 및 선발 - 청소년참여포털 등을 통한 공개모집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한 선발
시·도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별 위원 추천 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형식요건(서류 적격 여부 등) 심사 후 최종 선발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천 진행 ※ 시·도별 3명 내외

※ '24년 이후 위촉된 위원은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

□ 운영체계



○ 의장단

- 청소년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로서 활동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중 투표를 통해 선출(의장 1명, 부의장 2명)
 - ※ 의장단 3명 중 남,여 각 1명 이상 포함
 - ※ 후보자 등록 → 참여활동 경험 여부 확인 → 투표
 - ※ 의장단은 연임 또는 중임 불가

○ 기획운영단

- 지역분과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회의 전체 정책발굴 및 제안 방향 협의
- 의장단 및 각 분과별 분과장 및 부분과장으로 구성(총 15명)

○ 청소년위원

- 청소년·사회적 이슈 발굴 등 정책과제 발굴, 전년도 정책과제 이행점검 진행
- 공개모집 및 시·도 추천을 통해 구성(총 100~150명 내외)

□ 위촉 및 임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최종 선발한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위촉장 교부 **【붙임10】**
- 청소년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임

□ 해 촉 **【붙임11】**

○ 기 준

- ①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자
 2. 범죄, 청소년특별회의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청소년특별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3. 청소년특별회의의 활동 중 청소년특별회의 본연의 기능과 관련 없는 사적 목적활동(예: 선교 또는 포교활동, 상품 판매·홍보 등)을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절 차

- 해촉 의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확인 및 해촉(여성가족부)

(2) 전문가자문단 및 운영지원단

□ 역할

- 전문가자문단
 - 정책과제 분석·체계화·발굴 지원 및 자문
 -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정보 제공
 - 특별회의 운영 지원 등
- 운영지원단
 - 분과별 청소년의 정책 학습, 자료탐색, 토론, 회의 등 운영 지원
 - 활동 일정 관리 등 분과별 활동 지원

다. 연간 추진일정

□ 운영계획 수립 및 확정(1월)

-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시행

□ 구 성(2~3월)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 구성(2~3월)
- 청소년특별회의 자문단 구성(2~3월)

□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3월)

- 위촉장 수여 및 의장단 선출·임명장 수여, 출범선언
- 청소년 참여 관련 기본 역량강화 교육
- 청소년특별회의 영역 발표, 연간 추진방향 논의 등

□ 2025년 대한민국 청소년 대토론회(5월)

- 토론 주제 관련 강의, 세부분야 선정 및 모듬토의

□ 정책발굴 활동(4~9월)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영역별 온·오프라인 회의 운영

□ 정책발굴 워크숍 개최(7월)

- 회의 및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특성이 반영된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 본회의(9월)

- 의결투표에 상정할 최종 정책과제 도출
- 최종 의결투표 진행(전체위원 대상)

□ 제안 정책과제 정부부처 협의 등(10~11월)

- 제안 정책과제 관련 정부부처 협의
-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활동

□ 결과보고회(11월)

- 정책과제 수용 결과보고 및 연간 활동 내용 공유

□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통 및 홍보 활동(연중)

- 청소년참여포털 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 특별회의 전반 홍보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

라. 행정사항

□ 지역회의 운영 협조 활성화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구성 시, 지역회의(추천직) 선발을 위하여 시·도 및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에서 포럼, 토론회 등 오프라인 활동 운영 시 대표성 있는 지역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적극 참여 및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 기 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 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을 통해 발급 가능
【붙임12】

[참고]

▣ 연도별 정책의제 및 과제 현황 ▣

년 도	정 책 의 제
2004년 (시법)	○ 청소년 인권·참여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제1회)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20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18과제 수용
2006년 (제2회)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2007년 (제3회)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2008년 (제4회)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009년 (제5회)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2010년 (제6회)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2011년 (제7회)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6개 수용
2012년 (제8회)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89개 과제)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81개 수용
2013년 (제9회)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29개 과제) -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등 28개 수용
2014년 (제10회)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31개 과제) -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28개 수용
2015년 (제11회)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23개 과제) -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20개 수용
2016년 (제12회)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29개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28개 수용
2017년 (제13회)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30개 과제)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24개 수용
2018년 (제14회)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22개 과제)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 등 20개 수용
2019년 (제15회)	○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 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총 5개 정책영역과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2020년 (제16회)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33개 과제) -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홍보 등 32개 수용
2021년 (제17회)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30개 과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등 28개 수용
2022년 (제18회)	○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32개 과제) - 청소년 디지털 문해교육 확대 등 29개 수용
2023년 (제19회)	○ 70억 조별과제, 청소년이 먼저 용기 내다!(34개 과제) - 교육소외지역 청소년 디지털 격차 해소 등 33개 수용
2024년 (제20회)	○ 모두를 위한 한걸음, 미래로 도약하는 청소년(24개 과제) -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22개 수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개정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 및 참여
- 지역 내 이슈 모니터링 및 현안 개선 제안, 관련 프로젝트 활동 기획·운영

□ 운영주체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역 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위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단, 위탁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제안 등 참여활동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및 피드백, 정책반영 노력이 필요함

□ 역할주체별 운영절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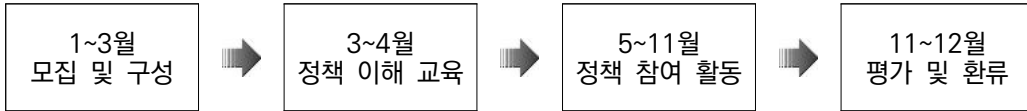
※ 참여기구 활동기간의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경우 전년도 1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1월중 구성 완료할 수 있음

지자체(공무원)	위탁운영기관(지도자)	청소년 위원
참여위원회 운영 주체 선정 사업 및 예산 승인	사업예산 검토 및 계획	
사업검토	1단계(1월) : 연간계획수립	
참가자 모집협조 공문 지원(교육청 관계기관 등)	2단계(2월~3월) : 모집(홍보) 및 구성완료 보고	지원신청서, 정책제안서, 자기소개서 제출
심사위원 참석 참여위원 구성	3단계(3월 초~중순) : 심사(서류+면접) 운영	면접시험 참여
단체장 행사참석 시행 정책자료 제공 및 정책소개	4단계(3월 중순~말경) : 위촉식 및 교육 운영	위촉식 참가 및 사전교육 이수, 임원진 선출
정책제안 내용 검토 및 피드백	5단계(4월~10월) : 정기회의 운영 지원 및 정책제안 검토(10월)	정기회의 참여, 정책제안 개발 및 제출(10월)
참여활동 지원	6단계(4월~10월) : 참여활동지원(모니터링, 자문회의 참여, 교류활동, 실천활동 등)	참여활동(모니터링, 자문회의 참여, 교류활동, 실천활동 등)
지자체장 및 관계 공무원 참석, 정책제안 피드백	7단계(11월) : 최종보고회 운영(정책제안 결과 피드백)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참여활동 결과보고
평가회의 참석, 평가결과 차기년도 계획 검토 반영	8단계(12월) : 평가회의	평가회의

나. 사업운영

※ '25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의 업무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지침을 활용 가능

■ 주요 추진절차 ■



(1) 모집 및 구성

□ 기본방향

- 성별·연령·지역·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모집 이외에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표성 제고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기 준

- 대상 :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
 - 연령·성별 등 구분·선발하되, 지역 내 연령별 인구 및 참여역량을 고려하여 구성(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포함)
 - 효과적인 참여활동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연령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을 구분하여 모집 및 운영 가능

구분	계	만 9세~15세 (초등·중학생 연령)	만 16세~18세(고등학생 연령)				만 19세~24세
			소 계	일반	특성화	특목, 기타	
비율	100%	20~30% 내외	50~60% 내외	60~70%	5~10%	5~10%	10~30%

※ 관할구역 내 연령별 청소년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구성인원 (권고)

- (시·도) 1개소당 25~30명 내외 / (시·군·구) 1개소당 20명~25명 내외
 - 예산규모 및 모집 추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구성인원을 결정하되,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위원들이 다수의 일반 청소년과 함께 논의·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

○ 구성기준

-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
 - 청소년 위원은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하도록 안내
-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일정 비율(10% 내외) 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 요청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소관 시·군·구 청소년이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 가능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중 시·도 참여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위원을 추천 및 위촉하며, 시·도 여건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 비율을 50~100%로 구성할 수 있음

□ 모집 및 위촉 【붙임1~8】

○ 모집방식

-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 이외에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학생회 대표 등),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지역 청소년 선거, 청소년 추천제 등 구성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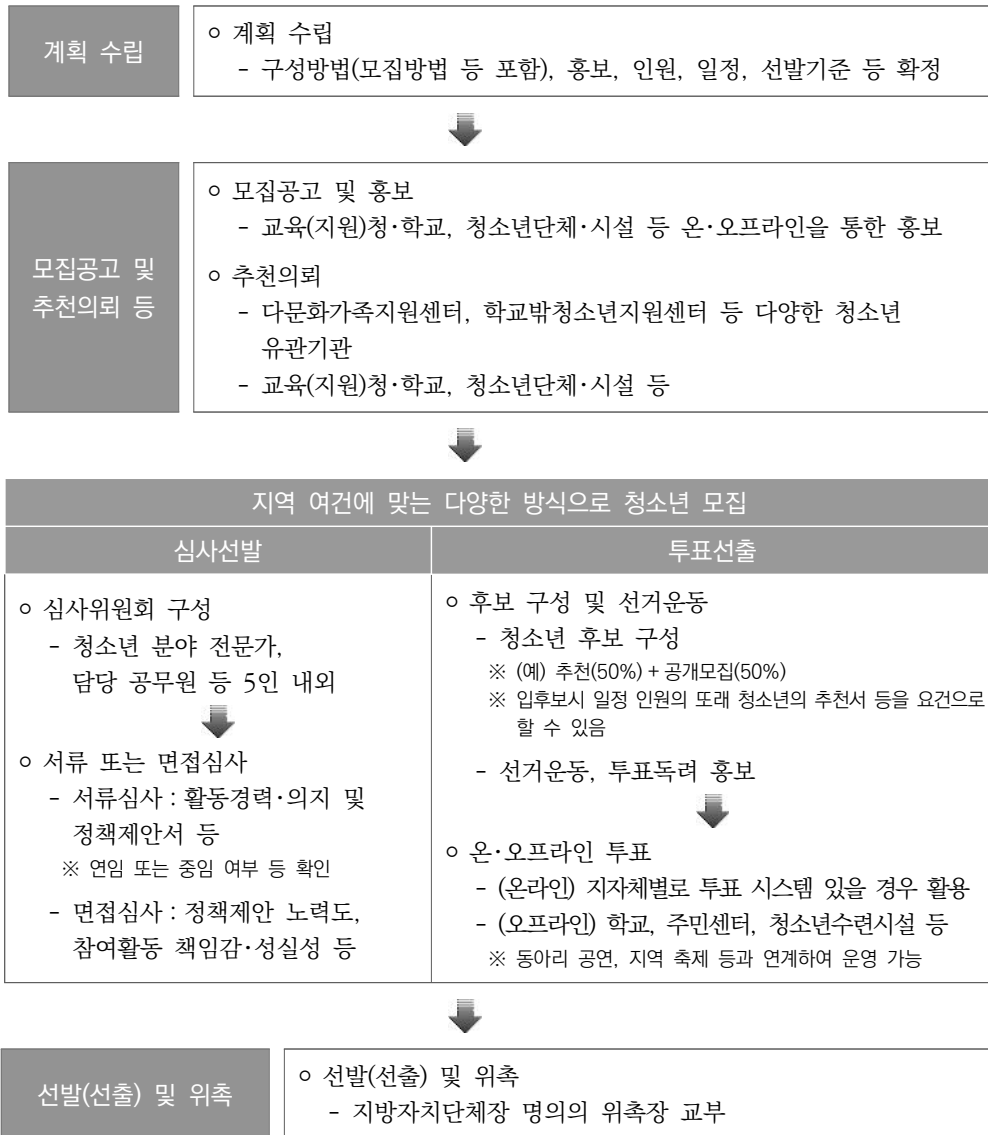
〈모집방식 예시〉

- ① 청소년 선거
 -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후보를 구성한 후, 지역 청소년의 투표(온·오프라인)로 위원 선출
 - ※ (절차 예시) 후보 구성(추천(50%), 공개모집(50%) 등) → 청소년 선거 → 선출 및 위촉
- ② 유관 기관추천
 -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을 받아 학생회 대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선발
 - ※ (절차) 추천(기관) → 심사 또는 청소년 선거 등 → 선발(선출) 및 위촉
- ③ 공개모집(추천병행)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하여 기회균등 및 다양한 청소년 참여 보장
 - ※ 공개모집 시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선발
 - 지자체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절차를 통해 위원 선발
 - ※ (절차) 모집공고 및 추천의뢰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발 및 위촉
 - 모집 시 또는 선발 이후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10명 이상)를 지자체(위탁기관)로 제출
 - ※ 청소년 스스로 참여기구를 홍보하고 활동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위촉 및 임기

- 최종 선발된 청소년위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위촉 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할 수 있음

○ 위촉절차(주체 : 시·도, 시·군·구)



□ 해 축 【붙임9】

- (공통)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축 가능
 - 연도말 각 청소년 위원들에 대한 활동확인서 발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활동기준에 미달하는 위원들에 대한 해축 처리 절차 등 마련

해축 기준(안)

-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축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청소년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축에 동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도)

- 당연직 위원이 해당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축될 경우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위원직 상실
 - ※ 해당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다른 청소년 위원으로 보임하되,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이후에 해축될 경우에는 추가 보임 불필요
- 당연직 위원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축될 경우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해당 시·군·구 참여위원회는 해축된 위원 이외의 다른 위원을 정하여 시·도 참여위원회로 통지해야하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이후 해축시 추가 통지 불필요

(2) 주요 활동

구분	주기	내용
시·도	연 8회 이상	- 시·도(시·군·구)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시·군·구	연 4회 이상	-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참여

※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통한 참여활동도 월별 활동으로 인정

□ 정책 이해 교육

- (필요성) 청소년위원마다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상이한 만큼, 정책과정 및 참여활동에 대한 공통된 정보 공유 필요
- (주요 과정) 참여활동 기본 교육 → 친밀감 형성 → 역할 나누기
 - 기본 교육 : 청소년 참여의 의의,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소개, 정책정보 찾는 법,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연간 일정 및 활동 목표 설명 등
 - ※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 내 '청소년참여활동 가이드북', '참여활동 기본교육' 영상자료 등 참고
 - 청소년의 정책 이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배 위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참여활동 자문단 구성·운영 가능

〈지역 우수 사례〉

- (충청북도) 참여활동의 연속적 추진 및 청소년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전 청소년위원과의 인수인계 활동, 선배위원(OB) 간담회 등 운영
- (경남 김해)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안(찾아가는 정책스쿨) 및 학교 밖(관내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워크숍) 정책이해교육 운영

□ 정책 발굴 및 제안

- (문제 인식) 청소년의 일상 주변의 문제점부터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문제, 청소년이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등 탐색 및 논의
 - 현안 탐색을 위해 지역사회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추진 가능
- (현황 조사) 문제점의 원인과 관련된 기존 법령과 공공정책을 조사·점검하고, 통계자료, 언론보도, 국내·외 사례 등을 주도적으로 수집 및 파악
 - 서면조사 이외에 현장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 운영 노력

- (정책 발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정책제안서 작성
 - 청소년 토의를 통해 정책제안으로 숙성할 의제 및 우선순위 선정
 - 발굴 과정에서 청소년위원과 다수의 일반 청소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 캠페인, 앙케이트 등 기획·운영하여 의견 수렴 가능

〈지역 우수 사례〉

- (경기 광명) 청소년과 17개 지역 기관이 참여한 정책·가치 공유박람회 ‘모여라, 마을 수다회’ 개최하여 정책제안 전 마을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경남 고성) 정책과제 발굴 → 군내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책버스’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대 우선순위 정책 선정 → 5대 정책을 바탕으로 심화 토론회 운영

- (모니터링) 전년도 참여위원회 제안 정책의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위원이 활동 목적을 이해하고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일정 초반에 실시하거나, 가능한 경우 제3자(선배위원, 소관 부서, 자문단)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위원에 공유할 수 있음
 - 필요 시 이전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정책을 올해 청소년위원이 검토하여 보완·발전시키는 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
- (제안 및 피드백) 청소년의 제안 내용을 소관 부서에 통지하고, 수용 여부 및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참여위원회에 반드시 회신
 - 검토의견 전달과정이 곧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과정인 만큼 제안 미반영 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말 정책과제 발표회 또는 결과보고회에 지사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청소년 위원들의 연간 활동에 대한 격려 등 추진

□ 정책 실천 활동

- ※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서 정책 제안은 하나의 수단이며, 정책 제안서 작성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 관련 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개최 및 참여
- 청소년 제안정책을 직접 실현해보는 캠페인, 프로젝트 활동 등 운영

- 지역 청소년 및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장 (정책총회, 지역 축제부스, 기부 캠페인 등)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

〈지역 우수 사례〉

- (서울 중구) 전년도 청소년의 제안정책을 올해 청소년위원들이 직접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토록 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실천적 학습 기회 마련
 - 추진절차 : 모집 및 구성 → 전년도 제안정책 실천활동 → 의제발굴 → 정책 제안
 - '21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스탬프투어' 운영 제안 → '22년 활동 청소년이 직접 '다산성곽길 스탬프투어' 기획·운영
 - '22년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제안 → '23년 활동 청소년이 직접 안전교육 영상 제작 및 관내 학교 대상 배포 활동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정책참여의 실효성 확보
 - '청소년 마음건강 존 운영' 정책제안을 실제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발전적 환류과정 운영

□ 기타 참여활동

〈지역 우수 사례〉

- (경기 군포) '청소년 권리증진 조례 발의'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두고 참여활동 추진
 - 연구팀(조례 및 제정과정의 이해, 조례 구문 작성 등), 액션팀(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미디어팀(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미디어 기록 및 홍보) 운영하여 청소년 권리증진 조례 발의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의제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 수렴, 자문 등 참여가 필요한 특정 정책 또는 사업, 조례(안) 등을 청소년참여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 청소년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청소년복지제도 개선 및 홍보방안, 지역 인구정책 등
- 관내 타 청소년 참여·자치기구(청소년의회, 학생교육위원회 등), 타 지역 참여 기구 등과 정책제안 공유 및 교차검토, 연합 토론회·워크숍·캠페인 등 적극적인 연계·교류 활동 운영 권고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 단위 연계활동 적극 참여(시·도 단위 청소년포럼·토론회 등 참석)
- 공직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제안·점검

(3) 협조사항 ※ '26년('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연계

□ 청소년 제안정책의 실현을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제 활성화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질적 기회보장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소년위원회 분과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과 연계 운영,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청소년 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자체 예산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조성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개정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
 - 조례 제·개정 시 청소년 의견 수렴 등 청소년 참여 추진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또는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의 공동 수행 권고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 시·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시·군·구 대표 등)이 시·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운영기관) 협조 등 필요

□ 기 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구성 시, 지역회의(추천직) 선발을 위하여 시·도 및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에서 포럼, 토론회 등 오프라인 활동 운영 시 대표성 있는 지역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적극 참여 및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 필요시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필요 경비 등 추가 지급 가능
- 지자체별 관내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한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 가능

〈참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시·도(시·군·구)¹⁾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시·군·구)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

1) 시·도(시·군·구)는 이하 “도”로 통일한다.

-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시·군·구-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계획(예시) - 지역별 상황에 맞게 변경사용

제○○기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계획(안)

1. 심사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 (월)
 - 1차 심사(서류) : ○○○○. ○○. ○○ (수) / ○○○도청 회의실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 ○○○○. ○○. ○○ (금) / 홈페이지 공지
 - 2차 심사(면접) : ○○○○. ○○. ○○ (월) / ○○○도청 회의실 또는 줌
 - 최종합격자 발표 : ○○○○. ○○. ○○ (화) / 홈페이지 공지 및 전화 통보
- ※ 선발인원 : 각 지역별 비례에 맞게 인원 구성(선발하는 기간은 연초 2~3월 내 모두 구성 완료)

2. 접수 현황

※ 지역별 현황에 맞게 공개모집(학교급별, 종류별 구분 등), 추천(자치기구 청소년, 시·군·구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 작성

3.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기준 :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안)
 - 1차 심사(서류)

성 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소속 및 직급

- 2차 심사(면접)

성 명	소속 및 직급	성 명	소속 및 직급

4. 선발 기준 및 방법

○ 선발 방법

- 1차 심사(서류) :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2차 심사(면접) : 최종 선발

○ 선발 기준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기준(붙임3 참조)

○ 선발 세부 기준

- 연임 또는 중임 청소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청소년 위원의 0% 내외로 구성(청소년은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가능)
-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되도록 심사하여 선발
 - 연령, 성별 등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
 - 고등학생 연령은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자율고, 대학은 전공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발
 - 근로, 북한이탈,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표성 확보

【붙임2】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선발 공고(예시) - 구성 계획에 따라 변경

○○도 공고 <제○○○○-○○호>

제○○기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안)

○○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기 ○○○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 할 예정이오니, ○○○도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방법

- 지원자격 : ○○○도 청소년
- 접수기간 : ○○○○년○○월 ○○일~○○월 ○○일(○요일)
- 구비서류
 - 1차 서류 심사 :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추천서* 포함)
 - * 추천서 :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 최종합격자 : 보호자 동의서 및 학교장 동의서
 - * 19세 미만 청소년 및 초·중·고교생인 경우 해당

■ 접 수

- 접수처 : ○○○도○○○○과 담당(○○○○○@○○○○.go.kr)
- 문의처 : ○○○도 홈페이지(www.○○○○.go.kr)
○○○○○○○○과(☎000-000-0000)

■ 선발계획

-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년○○월 ○○일(○요일)
- 2단계 면접 : ○○○○년○○월 ○○일(○요일) / ○○○○ 대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년○○월 ○○일(○요일)
 -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전화 통보예정
youth.go.kr/ywith(청소년참여포탈), www.○○○○.go.kr(○○도청)
- 오리엔테이션 : ○○○○년○○월 ○○일~○○월 ○○일(불참 시 합격 취소)
- 위촉시 : ○○○○년○○월 ○○일(○요일)
 - * 위촉기간 중 회의 및 행사 불참 등 활동이 부진할 경우 해촉될 수 있음

【붙임3】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서류 및 면접 심사 기준(예시)

1차(서류) 심사 기준(예시)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비 고
합 계	100		
자기소개서	40		
■ 참여활동 이해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활동 기능·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 참여활동 의도·의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및 활동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 성품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정신, 사회적 협력 정신, 어려운 환경 극복 등 인성(*소수청소년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정책제안서	60		
■ 정책제안의 창의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한 정책의 창의성 및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 정책제안의 논리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서 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정책제안의 기여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한 정책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0~9 ■ 우수 : 8~7 ■ 보통 : 6~5 ■ 미흡 : 4~3

2차(면접) 심사 기준(예시)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평가척도
합 계	100		
자기소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 의지 · 책임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의지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의제발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의 이해도, 노력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목적, 배경,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설명능력 • 정책제안서 발표 능력 및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30~26 ■ 우수 : 25~21 ■ 보통 : 20~16 ■ 미흡 : 15~11
질의응답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협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중 타 청소년과의 사회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20~16 ■ 우수 : 15~11 ■ 보통 : 10~6 ■ 미흡 :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침 및 과제발굴 등 참여의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발생 시 대처 능력, 위급상황 시 해결 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 15~13 ■ 우수 : 12~10 ■ 보통 : 9~7 ■ 미흡 : 6~4

위 촉 장(안)

생년월일 : 0000. 00. 00

성 명 : ○ ○ ○

위 청소년을 ○○시·도 제○○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활동내용은 '활동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함
(‘활동확인서’는 본 사업의 위탁기관인 ○○○○○○○○에서 발급 : 위탁기관의 경우)

○○도지사 ○ ○ ○

【붙임5】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활동확인서(안)

활 동 확 인 서(안)

○○호

인적 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경력 사항	소 속			
	직 위			
	기 간 및 활동시간	. . . ~ . . . (총 시간)		
	활 동 내 용			
용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 ○○○○단체장(위탁의 경우) 붙임 : 세부활동내역 1부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붙임6】 청소년참여위원회 : 지원 서류

지 원 신 청 서

청소년 개인정보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		
연 락 처			E-mail
소 속 (학교, 단체명)			학년/반 (전공)
활동 경력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 소속(학교, 단체명)된 곳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적어주세요 (기존 참여 기구 활동 경력 포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년 ○○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자 기 소 개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2매 이내)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정 책 제 안 서

※ 일정한 양식 없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청소년(또래) 추천서

○○도 청소년을 대표하는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
(생년월일 : ○○○○.○○.○○.)를 추천합니다.

연번	소 속	이름	주 소	연락처	서 명
예시	○○ 고등학교	○○○	○○구 ○○대로 ○○○	010- 1234-56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7】 청소년참여위원회 : 보호자 및 학교장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이 ○○도 『제○○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 명 :

주 소 :

청소년과의 관계 :

○○○○. ○○. ○○

보 호 자 : (인)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세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학 교 장 동 의 서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제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이 ○○도 『제○○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속기관(학교)명 :

소속기관 주소 :

○○○○. ○○. ○○

학 교 장 : (직인)

담당교사 : (인), 연락처 :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붙임8】 청소년참여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예시)

본인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여성가족부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일반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생년월일
수집 및 이용목적	보험가입,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 유지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청소년특별회의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을 통해 발급

20

성 명 : (서명)

【붙임9】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위원 해촉의뢰서(위탁운영시, 예시)

해 촉 의뢰 서

해당 청소년 위원			
성 명		생년월일	
지 역		성 별	
해촉 의뢰 사유			
<p>※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p>			
<p>20 년 월 일</p>			
<p>위탁기관장 : (인)</p>			
<p>○○도지사 귀하</p>			
<p>붙임 : 해촉 경위(사직서, 회의록 사본 등) 1부</p>			

위 촉 장(안)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 활동내용은 '활동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여성가족부장관

활동확인서(안)

성 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활동기간 : 0000.00.00~0000.00.00

0000년 00월 00일

여성가족부장관

2-4 청소년운영위원회

각 시·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되 아래 지침참고 가능

가. 개요

□ 목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반영 도모

□ 추진근거 등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설치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추진경과
 -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서 구성·운영 권장
 - 2003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법적 근거 마련 후 설치 확대

□ 운영현황

- 2006년 210개소에서 2023년 331개소 운영 지원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전원
- 2024년 ~ 국비지원 종료

■ 연도별 운영실적 ■

설치대상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운영지원 (개소)	258	273	286	286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331
지원예산 (백만원)	258	273	286	286	305	381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331

나. 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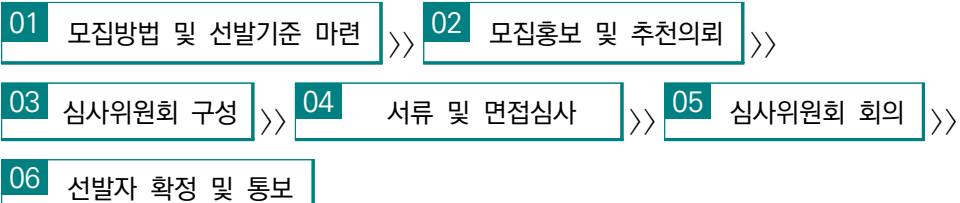
(1) 구성

-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2)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선발

- 선발 기준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모집과 추천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를 적절한 비율(50:50 권고)로 적용할 수 있음
 - 지역 여건 등으로 모집 방법에 따른 비율에 미달할 경우는 선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시기 : 1~2월(공개모집, 추천모집)
 - * 시설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월 28일까지는 구성 완료되어야 함
 - 추천대상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내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추천방법 : 해당 청소년(학생)의 참여의사 확인 후 추천서 양식에 따라 추천
- 선발방식
 - 청소년운영위원, 시설관계자,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 및 학계 전문가, 청소년시설·단체 등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 등
 - 선발시 고려사항
 - 청소년 단체의 회장, 학급 임원 등 자치기구 대표 청소년은 역할 중복 등으로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
 - 성별과 교급(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려하되 대학생의 비율은 수련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 절차



(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야 함

예시) 위원장 / 부위원장 / 총무 / 분과장 / 실무간사(담당 청소년지도사)* /
자문기구(청소년관련 전문가 / 지역사회 인사 / 학교 교사 등)

* 팀장(경력자)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위원장 선출 및 권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기구로써, 시설의 사업수행 도우미 또는 청소년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위촉 및 해촉

- 위촉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하며, 시설장 명의의 위촉장을 교부함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 연임의 횟수, 연임 임원의 비율은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함
-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아래와 같이 해촉 가능

《해촉 기준(안)》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 4.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 3. 본인 질병과 사고
 -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 운영 규정(첨부1 참조)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야 함

□ 주요 활동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연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
 - * 해당 수련시설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무 간사(담당 전문지도자)를 배치·지원해야 함
- 연간활동계획수립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 된 이후 회의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연간활동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3월부터 12월로 계획되는 것이 보통임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예시 ■

1~2월	3월	3~11월	12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 연간 활동계획 세우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활동, 기관장 간담회, 활동 요구조사 및 분석	청소년운영위원회 보고서 발간, 신규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홍보

○ 회의 운영

- ① 정기회의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해야 함
 - ▶ 정기회의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고유한 역할(모니터링, 자문·평가 등)과 다양한 기획 사업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회의로 운영됨
- ② 임시회의 : 정기회의 이외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전체회의
 - ▶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에게 적절하게 운영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수렴까지 다양하게 참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청소년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 *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 및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 ▶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 회의를 통해 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외에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자원봉사, 캠페인, 교류활동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 주요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
 - 우수사례 조사 및 우수활동 발굴, 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교류 활동
 - 지역사회 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봉사활동 등

○ 청소년시설 기관장과의 간담회

- ▶ 운영위원들의 건의사항, 모니터링 결과,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실행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 ▶ 기관장과의 간담회는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로 진행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주의 요망(첨부 7 참조)

-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진로역량제고 관련 활동 장려
 - ▶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수련시설 내 청소년협동조합 등 다양한 활동 장려
- 지자체 방역지침 준수 필요 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

(4) 청소년운영위원회 의견 및 활동 관리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 간사(청소년지도사)는 정기 및 임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에 제출된 회의록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및 조치하여야 함
 -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소관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활동을 점검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 수련시설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추천 필요 없음)
 -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 지역주민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 청소년 대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위원장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시설에 한함

(5)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는 「시·도별 운영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정보 교류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국비미지원 대상)도 활동실적 관리 안내

(6) 행정사항

□ 운영관련 사전 기반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련 시설 운영관련조례, 정관, 내부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외에 자체 예산을 적극 확보 운영
 - * 국고 미편성 수련시설의 경우 자체 예산확보 운영

□ 기타

-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
 - *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

[참고 1]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예시)

제정 ○○○년 ○○월 ○○일

개정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3.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 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해 참여하여 서명 날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수련관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내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회신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된 운영규정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모집기간 : 20○○. ○. ○(화) ~ ○. ○(금), ○일간
- ◆ 자격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
- ◆ 주요역할 : 시설의 운영 정책 제안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의 다양한 행사 참여 및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사업 진행 등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보호자 동의서, 추천서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계획서(분량 및 형식의 제한 없음)
 예) 청소년시설에서 하고 싶은 것 등
- ◆ 제출처 : ○○○청소년시설
 (우편, 이메일 및 직접 제출)
 - ▷ 주소 : ○○○
 - ▷ 이메일 : ○○○
 - ▷ 연락처 : ○○○
-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 . ○. ○(월)
- ◆ 2차 면접 : 20 ○. ○(금), 14:00 / 장소 : ○○○
- ◆ 최종발표 : 20 ○. ○(토)
 - ▷ 최종 선정자는 개인별 통보 및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등에 공지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www. ○○○.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와 학년을 적어주세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소속이 있을 경우만 적어주세요!			
집 주소				
집 전화			E-mail	
손 전화			비상연락처	
활동경력	기간	소속	내용	비고
	※ 특이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자 확인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 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 년 3월 31일한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은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자 본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인) 보호자 _____(인)				
○○○○○청소년시설 기관장 귀하				

- 첨부 1. 자기소개서
 2. 활동계획서
 3.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청소년운영위원 추천서				
추천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추천 청소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추천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이메일	
추천사유				
<p>※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 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자 및 추천인 확인</p> <p>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 지역, 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 년 3월 31일한</p> <p>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호자 : _____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p>				
<p>위 학생을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시설 기관장 귀하</p>				

보 호 자 동 의 서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 청소년이 (시설명) 『제○○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보호자 성 명 :

주 소 :

청소년과의 관계 :

○○○○. ○○. ○○

보 호 자 : (인)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을 「(시설명)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제〇〇기 위원(20 . 3. 1 ~ 20 . 2. 28)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〇〇〇청소년시설 기관장(직인)

가. 청소년참여예산제

□ 의 의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하여 배정하는 제도

□ 주요활동

-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후 정책 및 예산을 제안
- 또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운영사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내 ‘청소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 반영

나.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활성화

□ 목 적

- 지역사회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 마련

□ 내 용

- 온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토론회·포럼 등을 활성화
- 사회참여 관련 청소년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 및 발표 대회 마련

II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1

청소년 우대 제도

가. 개 요

○ 목 적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에게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권고-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해 청소년증 등 증표 제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우대시설의 종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

○ 우대 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주요내용

- (면제 또는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 (할인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할인 권고 가능

나. 우대 시설의 종류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등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 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등

◆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여객선 10~50%
 - 궁·능 :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다. 이용 방법

- 청소년이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1 사업 개요

가. 개 요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추진경과

- 2003. 9.18 : 청소년증 발급 훈령 제정(문화관광부)
- 2003. 9.25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한국조폐공사)
- 2003.10.15 : 청소년증 시범발급 실시(서울, 대전)
- 2004. 1. 1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실시
- 2004. 2. 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근거 마련)
- 2005. 2.1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007. 5. 1 : 청소년증 전산화발급 전국실시
- 2008. 8. 1 : 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 시행
- 2010. 1. 4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 변경
- 2011. 6. 1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3.12.17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여성가족부 - 한국조폐공사)
- 2014. 6.19 : 청소년증 수령방법(등기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선택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4.12.30 : 청소년증 대리인 발급신청 가능 및 신규 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6. 9. 1 :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MOU체결(여성가족부 - 한국조폐공사)
- 2017. 1. 11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2017. 4. 19 : 청소년증 분실(철회)신고 기능 개설
- 2017. 7. 14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8. 7. 4.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청소년증 분실 신고,
분실 철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 2024. 1. 1. : 청소년증 발급사진 규격 변경(3.5cm×4.5cm) 및 대리신청 자격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다.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e청소년)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라.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행복e음) 운영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 ○ 청소년증 발급신청, (재)발급·교부 ○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한국조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현황 관리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관리
교통카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호환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 교통카드 충전·환불 사후 관리 ○ 교통카드 제작 지원 및 사후 관리

2-2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가.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지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24.1.1. 개정)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외국인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재학 여부 등 선택 ■ 대리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교통카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발급신청 철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 이후 재발급 필요 - 원하는 경우 교통카드명(레일플러스, 원패스, 이즐) 중 택일하여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 단가 : 비교통 4,700원, 교통 6,800원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대 리 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라. 수록사항

청소년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일, 발급기관명을 수록

마. 관계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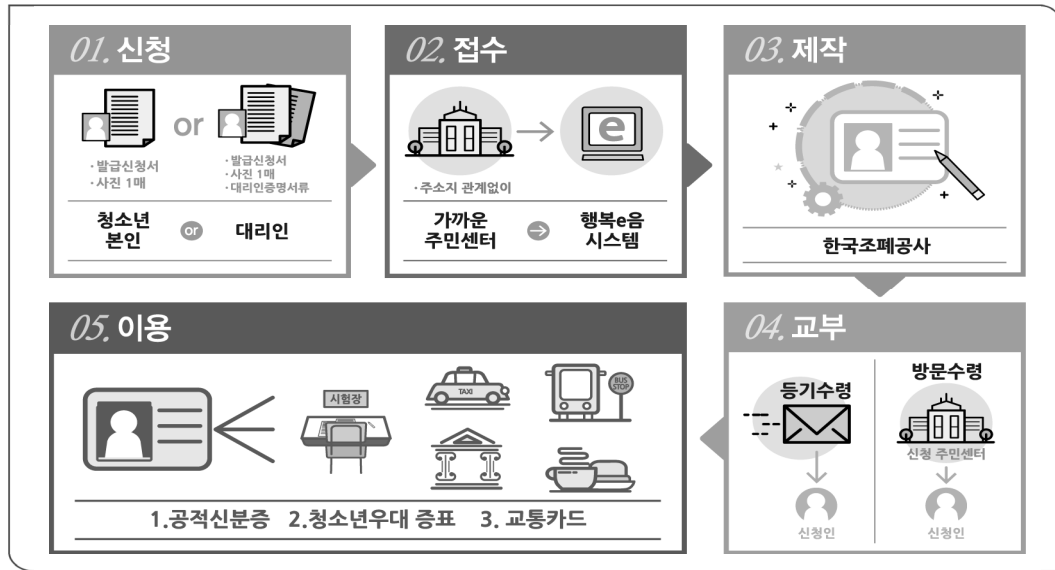
① 주민센터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 (방문수령 선택 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신청기관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후 교부
-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요금을 수령하여 접수 즉시 건별로 입금 원칙(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 계좌번호/예금주 :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② 한국조폐공사

- 방문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지 시·군·구로 청소년증을 배송
- 등기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인의 등기수령 주소로 배송의뢰(우체국)

바. 발급 절차



(1) 신청

-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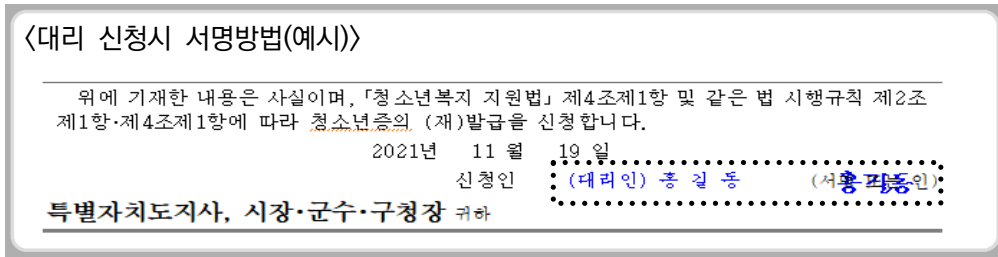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사진 요건(3.5cm×4.5cm)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읍·면·동장은 제출받은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진의 규격(3.5cm×4.5cm)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가발 착용,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 등)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 사진 규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상의 서명(또는 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함



(2) 접 수

-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받은 공무원은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 발급대상(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지역, 가맹점 등 상세히 안내하고,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알려야 함(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대리 신청의 경우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 신청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 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소홀로 타인에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발급받으러 온 신청인에 대하여는 철저히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 당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업무처리 부주의로 동명이인 청소년증 오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본인 확인 방법(예시)〉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부착된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 일치 여부 확인
 - 관계공무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보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 추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학교선생님,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등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
 -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 및 해당 청소년의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시스템 등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가능

- 청소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 가능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3) 제 작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청소년이 신청·접수한 청소년증 관련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 청소년증 제작비용 지급
 - (‘25년 단가) 기본형(비교통) 4,700원, 확대형(교통) 6,800원
 - 발급일자로부터 1년 이내 교통카드 불량으로 재발급 신청 시 : 한국조폐공사 부담

(4) 교 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
 - ※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적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재 항목(수령자, 서명 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교부 이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분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부 처리 필요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전에 청소년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을 반드시 고지
- 청소년이 읍·면·동장에게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
- 읍·면·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 시·군·구에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청소년증을 인수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인계
- 읍·면·동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인수한 청소년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을 교부한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청소년증 대리수령 범위〉

- 동일 세대원(직계 혈족),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 청소년증 재발급

(1)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 서류 첨부

(2) 재발급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포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 분실신고(철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포 사이트(www.bokjiro.go.kr,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과 동일)
- 절차
 - (신청권자) 분실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공무원) 행복e음시스템 입력
 - ※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
- 유의사항
 - 철회 신고 : 분실신고된 건에 한하여 철회신고 가능
 - 분실신고 수정 : 최초 등록한 읍·면·동에서만 가능
 - ※ 분실신고 후 청소년증을 습득한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철회신고 가능

자. 청소년증 파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하여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청소년증

차. (재)발급 관련 비용 처리

- 방문수령 시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부담
 - ※ 한국조폐공사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계산서 청구(건당 발급비 : 기본형 4,700원 / 확대형(교통) 6,800원, 우송료 : 중량 기준)
- 등기수령 시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 부담,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 발급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시·군·구에 청구
 - ※ 등기수령 비용(우송료 3,820원)은 신청인에게 수령하여 담당자가 송금 처리

- ※ 신청인이 등기수령을 선택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반송됨
-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용이 우정사업 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등기수령 선택 시 처리방법(붙임4 참고)

- 신청인이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지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3,820원 수령
- 신청건별 접수 후 즉시 이체 원칙이나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계좌번호/예금주 :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 송금인명 :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정산문의 : 대전대덕우체국 우편영업과(042-930-2430)
- 주소지로 등기수령 비용 이체할 필요 없이 신청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처리

카. 행정사항

(1)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교부 시 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청소년증 위·변조, 부정사용 등 인지 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준용)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가별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직무는 공무원의 처리하는 직무만을 뜻하며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신청인이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에 체크한 경우
 - 정보연계 관련 절차는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별표 4] 참조
 -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유선 1388, <http://www.kdream.or.kr>)에 연계
-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붙임 3] 서식

(4) 기 타

-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 업무권한 부여절차 : (시·도, 시·군·구) 청소년 업무 주무과장 → 시·군·구 업무 담당자 및 읍·면·동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발급은 「행복e음」 또는 워드(한글, MS워드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 및 출력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증 단체발급
 - 청소년증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를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 ①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추진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 준비사항, 신청 가능 여부 등 판단 필요
 -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②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의 의사, 본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시 공문 등 첨부(지자체에 따라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등록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주소 기재 요청 시

- 행복e음시스템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청소년증 뒷면에 주소 변경일자, 변경된 주소 등 기재




2-3 청소년증 교통카드




가. 목적




-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활성화

나. 유의사항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함. 소급하여 공제 불가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함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전국에서 가능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용 불가능 지역	- 경북 (군위, 봉화, 영덕, 영양, 청송) - 전남(진도)	- 버스(춘천, 통영, 거제,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경전철(김해)	- 경남(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은 추후사용가능
사 용 처	- 버스, 고속버스(김해시 제외), 시티투어버스(서울·제주), 공항리무진(인천국제공항↔서울/경기, 인천권 운행) - 지하철(김해 경전철제외) - 기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누리로 등) - 공항철도 - 택시(서울, 울산)	- 버스(불가능 지역 외) - 지하철(서울 1~9호선, 부산 1~4호선, 대구 1~3호선, 광주 1호선, 한국철도공사 국철구간, 코레일공항철도(서울역~인천국제공항), 인천메트로, 신분당선) - 택시(카드사용 표시 캡이 장착된 대구법인 및 개인택시)	- 버스(전국교통카드 통용지역 시내·마을버스, 경기·충남·경남 시외버스, 전국시외버스 KSCC 운영지역) - 지하철(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택시(전국 캐시비 서비스 가맹 택시)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 용 처	가 맹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emart24, story way) - 유통점(KTX 열차 내 유인이동 판매대, 역사 내 카페스토리 웨이), 유통전문점(일부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 코레일 역사 내 브랜드매장(카페, 음식점, 잡화 등 600여개) - 제휴가맹(레일플러스 스티커 부착 제휴가맹점) - 전국 우리은행, 농협, 롯데(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전국 emart24, 대구·경북지역 GS25, 세븐일레븐 대구·경북 전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유통점(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 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식음료(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파리바게트(롯데계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잠바주스, 빗은, 오봉도시락, 밀크밥버거, 커피앳웍스(SPC계열)) -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역(전국 코레일 기차역) - 지하철 내 충전기 및 발매기 - 편의점(storyway, emart24) - 우리은행·농협·롯데 A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ATM은 농협계좌이체 충전만 가능 - 모바일(레일플러스 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드로이드 2.2이상/ IOS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하철 전 역사의 역무실, 무인충전기 - 대구은행ATM, 대구도시철도 역사, 가두판매점(대구) - 편의점 (emart24-전국, GS25, 세븐일레븐-대구·경북) -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마크가 부착된 토큰판매소 및 가맹점 - 모바일(대구은행 아이M뱅크 APP, 스마트터치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emart24) - 수도권/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대구지하철 무인충전X) - 전국 캐시비 충전소, 롯데슈퍼(일부), 롯데ATM(CD기 제외) - 신한은행, 우리은행 ATM : 현금·계좌 충전 - 경남은행 ATM : 제휴 발행된 캐시비(이즐)카드만 충전가능 - 롯데월드 어드벤처, 롭스 - 이즐충전소 어플리케이션
소득공제 신청	※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어플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메뉴 → 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등록 절차 중 소득공제 신청여부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회원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선택 - 기존회원 : [내 정보수정] 통해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즐충전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소득공제 신청 가능
할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카드 등록 → 할인카드등록 → 카드번호입력 및 생년월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카드 등록 → 회원 혹은 비회원 등록 선택 → 본인인증 → 교통카드번호 입력 → 등록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과일로부터 성인요금 차감 ※ 청소년(만 13~18세) 등록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븐일레븐 / CU / GS25편의점 /이즐충전소 어플리케이션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 적용 (통합권증카드 표기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구 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이후 청소년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카드 허위등록 및 악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카드 등록자에게 있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환불 신청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코레일 역사(전국기차역, 코레일운영전철),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20만원 이하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20만원 초과 및 훼손카드는 역 방문 반환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반환접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구은행, 전국 emart24, 대구·경북지역 GS25 ※ 카드실물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카드 고장 및 훼손의 경우 제휴 편의점(GS25, emart24)에서만 가능하며, 편의점 내 비치된 환불 봉투를 통해 접수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시비(이즐)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 주요 편의점(일부 매장 제외) ※ 2만원 미만에 한하여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 신한은행 ATM, 우리은행 ATM : 잔액 50만원 이하(계좌 보유시)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홈페이지 → 카드잔액 환불 → 환불 봉투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직접 환불접수 가능
특별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 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 확인
콜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railplus.korail.com	http://www.dgbupay.com	http://www.cashbee.co.kr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주)DGB유페이	(주)이비카드

* 제휴 가맹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위 표에 명시된 사용처는 교통카드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을 의미하며, 결제 시 청소년 할인 적용 여부와 별개임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신청’에 체크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원하는 교통카드명 기재

※ **사용가능지역, 사용처 등** ‘나. 교통카드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청소년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카드종류별 사용불가 지역**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기능 추가 여부 등 안내

-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미신청’에 체크

다. 환불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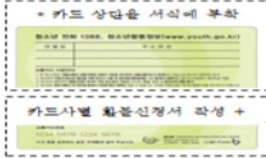

- 도난/분실
 - 선불형 교통카드 도난/분실은 현금 분실과 동일하므로, 교통카드사 정책에 따라 잔액 환불처리 불가능(카드 뒷면 이용안내에 표기)
- 정상카드 환불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카드로 이사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잔액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 ‘나. 교통카드별 주요내용’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신청
 - 환불수수료 발생
 - ※ 자세한 내용은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 참고

라. 칩 불량카드 환불 처리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 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카드 환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소년증 교통카드의 특성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원칙

①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인 경우

<p>청소년증 절단</p> <p>업무 담당자</p> 	<p>서식 작성 및 절단카드첨부</p> <p>* 카드 상단을 서식에 부착</p>  <p>카드사별 환불신청서 작성 +</p> 	<p>처리</p> <p>한국조폐공사</p> <p>* 재발급 시 확인</p> <p>교통카드사</p> <p>* 유권금 환불(10일정도 소요)</p>
<p>(담당 공무원) 청소년증 뒷면의 교통카드번호 및 부분의 절단선을 따라 절단 ※ 실제 청소년증에는 절단선 표시 없음</p>	<p>(신청인) 환불신청서 작성, 제출 (담당 공무원) - 절단된 상단은 한국조폐공사 환불 서식에 부착하여 봉투에 넣음 - 절단된 하단은 환불신청서와 함께 환불 봉투에 넣음 ※ 서식은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청소년 사업안내 서식6(p.169~184) 출력 ※ 봉투 서식은 오려서 규격봉투에 풀칠 하여 부착</p>	<p>(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재발급 (교통카드사) - 환불 처리 ※ 전산 확인 후 환불까지 10일정도 소요</p>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재발급비 처리 : 칩 불량 청소년증(1년 이내) 재발급비는 신청 시·군·구청에
청구되지 않음
※ 청소년증 상단은 반드시 한국조폐공사로 반납해야하며, 우송료는 기존과 동일

②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된 경우

- 청소년증 절단 후 하단만 교통카드사로 송부, 상단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파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발급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발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절단 방법 등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와 동일

〈일반 환불처에서 칩 불량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사로 잘못 발송한 경우〉

- 청소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해당 청소년증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한국조폐공사로 상단 전송
 -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 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상단 전송

붙임 1 서 식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제1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2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철회신청서
서식 제4호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 제5호	청소년증
서식 제6호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서식 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초·중·고 재학 중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수령방법	[]방문 []등기우편	사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교통카드 기능	[]신청 : 종류() []신청하지 않음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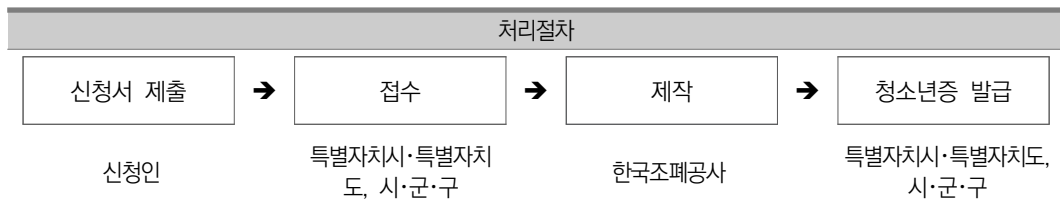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신청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2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 진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간 인	주 소				
발급신청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작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용자 유의사항

-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이 확인서 발급일부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고(철회)인	성명	분실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철회)내용	분실일자	장소
	분실(철회) 사유	

청소년증의 습득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청소년증 분실신고만 할 때 사용하시고,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철회)인’란은 적지 않으며, “청소년증의 습득”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난이므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분실된 청소년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서식 제5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 소 년 증

사진
(2.5cm × 3cm)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유효기한 :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86mm × 54mm(플라스틱(PVC))

(뒤쪽)

연월일	주소 변동 사항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서식 제6호]

■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 레일플러스 - 환불신청서





(반드시 카드와 본 신청서를 봉투에 동봉해주세요.)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환불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코레일네트웍스㈜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보유합니다.
반환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동의 동의하지않음 성 명 : _____ (인)

▣ 환불 신청서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카드재교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불량카드에 한함)
Rail+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Rail+ 카드 번호
신 청 인	고객명	은 행 명
	연락처	입금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 연락처를 통해 반환관련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카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사용처 및 처리번호 :)

충전이 안되는 경우(충전처명 :)

외형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1년 이내 불량카드는 카드재교부 또는 카드 값을 지급해 드립니다.
- 파손카드는 구멍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 침손상, 안테나 손상 등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된 Rail+카드입니다.
- 충전기에서 잔액 인식이 가능한 경우 5만원 이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금이 입금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환불서비스 처리에 대한 안내, 고객과의 소통
보유 및 이용기간	반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반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 코레일 및 코레일네트웍스㈜는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보유합니다.
반환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반환이 제한됩니다.

동의 동의하지않음 성 명 : _____ (인)

▣ 환불 보관증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카드재교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불량카드에 한함)
Rail+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Rail+ 카드 번호
신 청 인	고객명	은 행 명
	연락처	입금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 연락처를 통해 반환관련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사유

카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사용처 및 처리번호 :)

충전이 안되는 경우(충전처명 :)

외형이 훼손 및 파손된 경우

주의사항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용 후 1년 이내 불량카드는 카드재교부 또는 카드 값을 지급해 드립니다.
- 파손카드는 구멍뚫림, 구김, 휘어짐, 찍힘, 태움, 조각남, 깨짐, 갈라짐, 카드번호 지워짐
- 침손상, 안테나 손상 등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된 Rail+카드입니다.
- 충전기에서 잔액 인식이 가능한 경우 5만원 이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환불 신청서 작성
2 반환 접수 및 처리
3 반환 완료

[반환 보관증_고객 보관용]
절취하여 반환금 입금 완료까지 고객 보관.
[반환 신청서_회사 송부용]
카드와 동봉하여 봉투를 우체통에 투입

봉투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입금완료까지 약 14일 소요됩니다.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반환 봉투로 접수된 카드는 전량 폐기하여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반환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1544-7788 (내선 6번을 누르세요)

176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 레일플러스 - 환불부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전국호환 신발 교통카드

Rail+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철도빌딩 6층 611호

레일플러스카드 반환 담당자 앞



반드시 카드와 신청서를 붙여주세요

	제1편	2025년도 청소년우대사업 일환 및 양방향	
	제2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 원패스 - 환불신청서

DGB유페이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 카드 실물이 등본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 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input type="checkbox"/> 인식불가 <input type="checkbox"/> 파손 <input type="checkbox"/> 일부 교통 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연락처	
환불계좌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 불가) • 은행: _____ • 계좌번호: _____ • 예금주: _____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 환불처리, 환불관련 고객민원처리, 카드반송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카드번호, 고객명, 연락처,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처리 (단, 민원 분쟁 소지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보존)
 - 보존기간 : 환불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1년, 1만원 초과일 경우 5년
 - 보존사유 : 환불금액 정산 및 고객민원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소송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 파기절차 : 보존기간 만료 시 카드실물 및 신청서는 DGB유페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 처리

본 신청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서명)

절 취 선

DGB유페이 환불 신청서

(고객보관용)

■ 환불 완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 바랍니다.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 기재	발송일자	20 년 월 일
카드상태	<input type="checkbox"/> 인식불가 <input type="checkbox"/> 파손 <input type="checkbox"/> 일부 교통 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안내

- 분실, 도난, 습득카드는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원패스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 처리됩니다.
- 고객보관용 신청서는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송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고객보관용 신청서가 없을 시 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
-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은 불가 합니다.
- 기입하신 예상잔액과 실제 환불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접수 후 D+10 영업일 이내 등록된 환불계좌로 카드 잔액 환불처리됩니다.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안내

- 홈페이지 : www.dgbupay.com
- 고객센터 : 080-427-234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원패스 - 환불봉투

■ DGB유페이 환불신청 봉투 라벨 양식



신설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 이즐 - 환불신청서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여기에 교통카드를 부착하여 주세요

주의 사항

- 카드 뒷면 교통카드 번호가 보이도록 부착바랍니다.
- 카드 실물이 동봉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카드 미 부착시 배송중 카드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 환불 접수된 카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교통카드 실물 부착 방법 안내

※ 카드 뒷면 이즐 번호가 보이도록하여 좌측 중간에 부착해 주세요.

●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명, 연락처, 카드번호, 발송주소,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환불카드에 입력된 정보	본인확인, 환불처리, 카드 반송, 민원처리, 환불 결과 SMS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불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환불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본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환불이 제한됩니다.)

□ 동의 □ 미동의 **서명 :** (자필서명) (인)

● 환불 신청 정보

카드번호	* 카드실물을 접수증과 함께 꼭 동봉하여 주세요(실물 없을 시 환불 불가)		
신청인	(필수 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input type="checkbox"/> 인식안됨 <input type="checkbox"/> 파손(해어질, 긁, 노후, 변형 등) <input type="checkbox"/> 일부 교통 사용 불가(오류메시지, 과다차량)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연도별 번호 기재 시 환불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환불금에 대해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 할-다(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재)	은행명	예금주명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 (자필서명) (인)

※만 14세 미만 회원의 카드는 법정대리인 동의 후 환불 처리 합니다.

환불 신청서 (고객 보관증)

● 환불 신청 정보

카드사		카드번호	(필수 기재)		
카드상태	<input type="checkbox"/> 인식안됨 <input type="checkbox"/> 파손(해어질, 긁, 노후, 변형 등) <input type="checkbox"/> 일부 교통 사용 불가(오류메시지, 과다차량)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카드발송일	20	년	월 일

- 환불봉투는 카드 부착 및 신청 정보 작성 후 가까운 우체통에 투입해 주세요.
- 본사 도착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잔액이 입금됩니다. (카드번호 및 잔액 확인이 불가할 경우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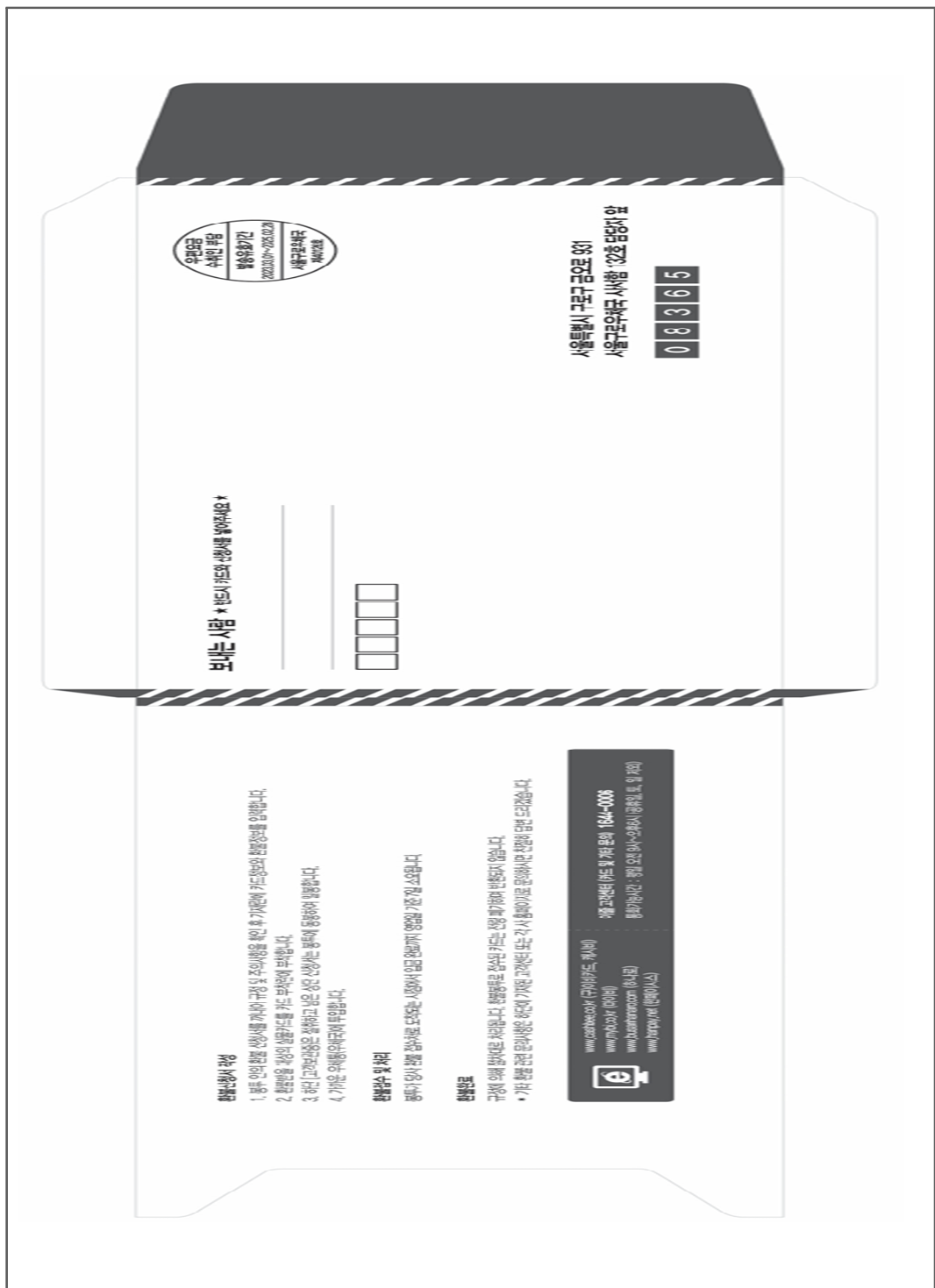
환불 규정 안내

- 이즐 카드, 구. 캐시비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내 고장 시 카드 구입비를 환불 해 드립니다. (외항상 정상이나 단말기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 실물카드가 반환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정상 및 파손(해어질, 일부 절형, 긁, 노후)카드는 잔액만 지급합니다.
- 정상카드는 소정의 환불수리가 부과됩니다.
- 분실, 도난, 습득카드는 환불 접수 되지 않습니다.
- 이즐카드, 구. 캐시비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하나카드, 한미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됩니다.
- 환불접수된 카드와 접수증은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1년간 보관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즐 고객센터 (카드 및 기타 문의) 1644-0006 www.cashbee.co.kr www.mybi.co.kr www.busanhanaro.com www.hanpay.net

통화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토, 일 제외)

○ 이슬 - 환불봉투



■ 환불봉투(조폐공사)

<p>보내는 사람 (우)</p> <p>_____</p> <p>_____</p>	<p>받는 사람 (우) 34037</p> <p>대전 유성구 테크노 10로 7 (탑림동)</p> <p>한국조폐공사 ID본부 카드부 청소년증 담당자</p>
--	---

[조폐공사_카드반납]

칩불량카드 실물 반납(한국조폐공사)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활동정보(www.youth.go.kr)	
연월일	주소변경

교통카드 이용안내

- 본 청소년은 대중교통과 유동카탈이동이 가능한 청소년의 선별교통카드가 발행되어 1388-1388-1388로 신청한 카드
- 청소년의 신분증(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용 전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CV 등에서 동화되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 청소년의 본인만이 증명신청은 청소년 전용 장소에서 가능하나(신청, 발급, 도난 시 본인만이 증명 불가)
- 청소년은 증명 제출시 및 관공서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안내를 청소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일(앞면) 기준 1년 이내 카드
- 카드 실물 투명테이프 부착(교통카드번호 윗부분)

제1편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2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제3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4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발급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제작, 수령 등에 관한 업무
청소년증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에 위한 자료 처리 등
기타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
- 청소년증 적정 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 발송 업무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현황(2003~2023)

(단위: 건)

구분	2003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44	40,898	43,543
서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49	9,992	10,633
부산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399	2,868	2,944
대구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69	2,304	2,216
인천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42	2,916
광주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3	1,025
대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4	885	1,044
울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0	1,060	1,180
세종	-	-	-	-	-	-	-	-	-	32
경기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2	11,007	11,232
강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73
충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29	1,206
충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5	1,244
전북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7	1,506
전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4	718	896
경북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38	1,663
경남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08	2,326
제주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1	307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9,438	50,663	93,536	114,250	188,562	165,408	142,502	182,644	153,547	169,190	149,856
서울	10,624	9,779	9,619	9,786	13,609	11,395	13,122	15,155	15,694	17,883	17,052
부산	3,202	3,174	3,899	6,326	11,890	6,432	11,704	9,332	10,664	8,090	6,823
대구	2,573	3,006	3,406	2,939	8,616	9,225	10,514	6,291	5,392	6,414	5,910
인천	3,012	3,126	3,828	3,223	5,180	4,001	4,683	7,801	6,000	5,837	6,311
광주	1,215	1,561	1,899	1,779	6,037	8,891	4,399	5,487	4,826	6,286	6,100
대전	1,446	1,447	2,403	1,636	4,646	5,913	4,887	6,779	6,870	7,461	6,739
울산	1,590	1,243	2,490	1,424	3,791	4,125	1,964	2,071	1,931	3,182	2,517
세종	110	99	473	1,434	2,460	3,381	2,918	3,798	3,318	3,554	3,012
경기	12,555	12,737	24,187	39,839	63,327	34,855	38,722	60,701	51,419	57,661	44,578
강원	1,773	1,704	3,585	5,899	9,626	8,921	4,840	6,572	4,338	4,994	4,835
충북	1,362	1,306	2,519	1,771	3,631	2,648	3,276	6,646	5,560	5,571	6,143
충남	1,733	1,701	3,488	5,008	9,181	6,290	4,808	8,617	8,506	5,649	5,369
전북	1,776	1,942	3,407	4,630	9,203	11,406	8,428	8,280	5,990	7,900	8,011
전남	1,130	1,362	4,143	5,682	7,248	11,769	5,272	8,963	5,610	5,722	7,349
경북	1,935	2,334	14,179	10,816	12,676	17,885	12,220	10,494	6,788	11,073	7,981
경남	2,906	3,640	8,253	10,595	14,134	15,475	8,781	13,621	8,355	9,507	9,037
제주	496	502	1,758	1,463	3,307	2,796	1,964	2,036	2,286	2,406	2,069

* 출처 : 한국조폐공사(2003~200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0~)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안내

1. 목 적

청소년증 신청 접수 후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청소년 편의 증진 제고(한국조폐공사 개발)

2. 서비스 대상 : 청소년증 신청인 중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자

3. 시행일자 : 2008. 8. 1.

4. 서비스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 설치·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카드발급조회)

〈문자메시지 예시〉

① 접수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한국조폐공사에 접수됨
www.komsco.com 검색가능」

② 배송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시군구로 발송함
5일 후 수령가능 - 한국조폐공사」

5. 협조사항

- 청소년증 신청자가 발급 진행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원할 경우
 - 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 / 청소년증 신청 및 교부 내역등록」의 신청자정보(HP)에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콜 센터(1577-4321) 문의

□ 정산 방법

- 입금기한 : 접수 후 즉시 입금 원칙 *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지정계좌 : 우체국 312884-01-006047(예금주 : 대전대덕우체국장)
- 입금자명 :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예시) 문평동(홍길동), 중앙동김나래, 신림10동김철수
 - * 동명이 긴 경우에도 7자까지 입력하면 우체국 담당자가 최대한 확인 및 연락 예정

〈입금자명 오류발생 주요 사례〉

연번	입금자명	처리불가 사유	비 고
1	충북 충주시, 광주 북구	정확한 접수동 확인 불가	회계부서 입금시 동명이 생략되므로 우체국 담당자와 유선협의 필요 (☎ 042-930-2412)
2	중앙동, 태화동	중복지역 다수 존재	
3	홍길동 (주민센터장, 담당자 이름 등)	접수기관 확인 불가	

- 입금단위 : **신청건별 입금** * 신청자 확인을 위해 건별 입금 필요
 - ※ (예시) 중앙동에서 3명(김영희, 이철수, 박진희)이 등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 중앙동(김영희)/ 중앙동(이철수)/ 중앙동(박진희)로 각각 3,820원씩 3건 입금
 - * 온라인(복지로)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우정사업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유의사항

- 회계부서에서 일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명이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읍/면/동)+ 청소년이름**으로 입금되도록 처리
 - 입금자명 정정이 어려운 경우 입금 후 우체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내역 등 확인 필요 (대전대덕우체국 영업과 ☎042-930-2412)
 - ※ (예시) 진주시 ○○동 회계부서 입금 시 '경남 진주시'만 표기되어 확인 불가
- 등기비용 처리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담당자 인사 이동 또는 부재 시 **인수인계 및 대무자 지정 등 철저**
- **우편요금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정산기한 준수**
- 등기비용 정산 후 별도 공문 발송 불필요

제 4 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II.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 III. 청소년활동사업 표준 운영
- IV.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 V.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VI.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VII.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 사업개요

1-1 목 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1-2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3 지원 대상

- 대상 :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대상구분		지원대상
일반형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은 우선 순위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주말형	지원대상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1) 지역 수요에 따라 <초등> 예비 초4(초3) <중등> 예비 중1(초6) 참여 가능(10월부터)
- 2) <초등> 초6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중등> 중3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 가능(~2월까지)
- 3)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가 초등 저학년(1~3학년)인 경우 참여 가능

1-4 지원 내역

- 운영시간 : 방과후~21시, 주 5~6일 운영
- 운영기간 : 1월~12월

운영모형	지원내역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주중 및 토요일 운영 권장) • 주중 활동(월~금) : 1주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 주말활동(토요일) : 반기별 2회 이상(급식포함 5시수 이상)
주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5시수, 주말 1~2일(토~일) 운영(연간 70일 이상) • 학교 방학기간 중 평일 운영 가능

*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1-5 2025년 예산

- 사업예산 : 30,006백만원 * 085-2200-2251-432(청소년육성기금, 국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 355개소 운영 지원
 - 1개소당(40명 기준) 평균 예산 : 174.6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2-1 추진방향 및 추진경과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5년	○ 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범사업 46개소 실시(20억)
2006년	○ 전국 지역별 운영 도입(46개소 → 100개소)
2007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50개소 확대 지원
2008년	○ 농산어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운영 ○ 운영개소수 확대(150개소 → 185개소)
2009년	○ 실시 개소수 축소 운영 178개소 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중단 제도 도입
2010년	○ 사업평가를 통한 부실 운영 아카데미 폐쇄조치 등 161개소 지원
2011년	○ 청소년 기본법 개정(추진 근거 마련) ○ 신규모형(특별지원: 장애, 다문화) 개발 및 시범운영 ○ 운영개소수 확대(161개소 → 200개소)

연 도	내 용
2012년	○ 200개소 지원
2013년	○ 200개소 지원
2014년	○ 200개소 지원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우수운영기관 시상(5개기관)
2015년	○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가정 청소년으로 참가대상 확대 ○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15.4월) -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 중심으로 특화(사업간 연계·범위 조정) ○ 운영전담인력 인건비 인상(전년대비 3%)
2016년	○ 중학교 대상학년 확대(중학교 3학년 포함)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 지원
2017년	○ 250개소 지원 ○ 종합평가 주기 변경(매년 → 격년)
2018년	○ 260개소 지원('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10개소 시범운영) ○ 범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18.4월)' 중 '마을돌봄' 시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에 맞벌이 가정 포함
2019년	○ 280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9개소 시범운영) ○ 성과에 기반한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체계 개편
2020년	○ 304개소 지원(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확대 운영) ○ 우선지원대상의 소득기준 폐지
2021년	○ 332개소 지원(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11개소 운영) ○ 긴급돌봄지원 관련 운영기준 제시
2022년	○ 342개소 지원(기본형, 농산어촌형, 주말형 확대)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관연계 활성화를 통한 전문 프로그램 지원확대,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평가 체계 개편 등
2023년	○ 350개소 지원(기본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코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등
2024년	○ 355개소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 원(개소)	200	200	244	250	250	260	280	304	332	342	350	355
참여인원(명)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12,341	13,145	14,059	14,588	14,712
국고예산(억원)	161	144	184	185	185	197	224	226	282	290	313	311

2-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총괄
-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 관내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홍보계획 수립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

○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계획, 운영지도안 등)
-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합동) 및 컨설팅 지원
-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3

'25년 세부 운영 계획

3-1

설치·운영 기준

□ 시설 설치요건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내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를 연 1회 지자체가 현장점검 시 실시하고 총 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항목 이상) 적합하여야 함
 -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안전기준 : 공공시설별 설치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 민간운영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소방청 고시 제2019-5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설치

○ 시설기준(권장 모형)

- 전용공간(교실) : 교실 당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 30명반은 1개 교실, 40명반은 2개 교실, 60명반은 3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 *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 지도자실 : 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 *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장
- 활동실(프로그램) :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 수련시설 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 활용
- 북카페 및 휴게실 : 참여 청소년들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 장애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장

□ 사전 운영공간 확보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신규 개소)를 위한 공간확보
 -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건립 설계단계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공간 확보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8.31)’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수련 및 공공 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규 개소 시기 사전 조사 후 개소와 함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선 조치
 -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도 조속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간 추가 확보

-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 교실(공간)’ ‘방과후 아카데미’ 배정 요청 및 신규 개소 추진
- 사전 운영 공간 확보 후 운영시작 전 필수 기자재(책상, 걸상 등)을 구비하고, 향후 기자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교체

법정부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월)’ 中

- (교실 활용)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기관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시·도교육청별 산출된 활용가능교실을 근거로 활용우선 순위*에 따른 학교·교육청 단위의 수요를 반영한 교실 활용 자체 계획 수립
 - * (활용 우선순위 예시) 교육과정운영-방과후학교·초등돌봄 수요-병설유치원-지역수요 등
 - 자체 계획 반영 후 남는 활용가능교실 현황은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초)자치단체에 제공

▣ 학교시설 사용시 관리책임 ▣

구분	관 리 책 임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교실의 골조 등 기본시설*에 대한 점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이란 당초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말함 - 임대시설과 관련한 사용료 및 공공요금 징수·관리(필요시) - 기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위임하는 사항
지자체, 방과후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시설 등 이용자 안전*(위생·보건·급식·통행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돌봄시설 등 입소시간부터 퇴소시간까지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 - 임차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및 화재 예방 등 - 기타 공공요금 납부 및 보험가입 등

■ [참고] 유휴교실의 활용 절차 ■

※ 유휴교실 활용 절차는 학교장 - 지자체 - 운영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대상학교 선정 '계획수립'	<p>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시도교육감, 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과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돌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돌봄시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
	<p>대상학교 발굴 (시도교육감, 지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학생배치계획, 지자체 단위의 국공립·공공형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학교 발굴
	<p>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 추천 (시도교육감 ⇒ 교육장, 학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시설 등 설치 대상학교를 추천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 요청
	<p>해당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돌봄시설 등 설치 여부 심의·확정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p>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자치단체장 ⇒ 학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면적 등 양식 명시하여 사용허가신청서 송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24조 ※ 아동복지법 제62조
	<p>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 신청 (학교장 ⇒ 교육감(교육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p>공유재산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및 의결·결과 통보 (교육감(교육장) ⇒ 학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 확정 및 결과 통보
	<p>협약체결 (학교장 ⇔ 자치단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 조건을 반영한 협약 체결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운영	<p>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자치단체장, 운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직영, 위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개소·운영

□ 운영요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기관 내 독립된 부서(팀)로 설치·운영을 권장하며, 시설내 타부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협조

□ 운영유형 및 인원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일반형	기본형	30명	40명	60명
	농산어촌형	30명	40명	60명
	장애형	-	15~20명	25~30명
	다문화형	-	30명	45명
	탄력운영형	15명	-	-
주말형		30명	-	-

* 기본형, 농산어촌형, 주말형 1개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 주말형은 정원 30명 이내에서 프로그램별로 그룹화하여 운영 가능

- 운영형태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유형을 선택

- 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 연간 운영일수

[일반형]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대체(임시) 공휴일의 경우 지역여건과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 결정 가능

- 연간 총 230일 운영

* 운영일수: 참여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일 수

- 운영시수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급식 5시수 의무포함)

* 1시수 60분(휴식시간 포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 청소년지원형은 수업 및 휴식시간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반기별 2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단, 주말체험활동(반기별 2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가능(기관운영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주말형]

- 기본운영 : 일 5시수, 주 1~2일 운영(토~일요일)
 - 연간 총 70일 운영
- 운영시수
 - 주말활동 : 일 5시수 이상(급식포함)
 - * 1시수 60분(휴식시간 포함) 급식시수 30분 ~ 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3-2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일반형]

-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 과정편성은 1일 최소 4시수 이상, 기관 상황에 따라 운영과정은 자율선택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정
 - 선택 운영과정(15시수) : 지역의 특성 및 참여 청소년 수요에 따라 다음의 운영과정 선택

선택운영과정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체험·역량강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특화)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디지털 체험활동,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일반)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역량강화활동(10시수) - 학습지원(5시수)
② 학습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특화)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일반)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운영과정(5시수) ○ 선택운영과정(15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10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5시수)

* 제시된 운영시수 편성은 예시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자율 운영)
 - * 토요일 운영 시, 주말체험활동 실적 인정 가능(1회, 운영일수 무관)
 - *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업무매뉴얼 참조
- 코딩, 컴퓨터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중앙부처·지자체 관련 사업, 지역단체, 대학, 민간기업 연계 등 민관협력 적극 활용)

〈 공통 : 프로그램 편성 운영시 참고사항 〉

구분	주요내용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수요조사 의무 실시,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간담회, 가족통합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운영(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인정)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주말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와 청소년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주당 6시수 이내 자율 편성 가능(긴급돌봄 시 추가 확대 편성 가능) •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급식지원(간편식, 도시락 등)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이 가정에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주말형]

- 프로그램 운영(편성) 기준
 - 주말활동 : 일 5시수 이상(급식포함)
 -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요구, 지역 특성, 시대적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자율운영
 -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주제는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로 변경 가능
 - 학기 초 청소년(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분기별 및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 운영 권장

〈 주말형 프로그램 주제 예시 〉

프로그램 주제 예시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창의융합 프로젝트 활동	과학, 예술, 역사,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융합한 창작활동	공통 운영과정(1시수) +창의융합 프로젝트(4시수)
② 진로개발 지역 현장체험 활동	지역 자원을 이용한 현장실습체험으로 진로탐색 및 미래 진로설계	공통 운영과정(1시수) +진로개발 현장체험(4시수)
③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활동	봉사활동과 접목하여 지역혁신 아이디어 제안 또는 지역사회 개선 활동	공통 운영과정(1시수)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4시수)

3-3 참가 청소년 관리

□ 참가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상 학년을 선택
 - * 교급(초등/중등) 및 정원 변경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 →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승인 요청 필요
 - * 기타 참가대상 : 학교밖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참여 가능(단, 시설보호청소년의 경우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하여 모집불가)

□ 참가 대상자 선정기준

[일반형]

- 기본형·농산어촌형·탄력운영형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대상 :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 청소년 증빙서류 구비 필수(지속 참여자는 조건 변경시에만 제출)
- 장애형 :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에서 발급)도 포함
- 다문화형 : 학교(교장·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 다문화형은 전체 대상의 50% 이상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주말형]

- 주말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지원대상 구분 없음)
 - * 프로그램 운영 기간(연간 / 반기 / 분기 등)별 수시 모집 가능(신규)

□ 청소년 이용 절차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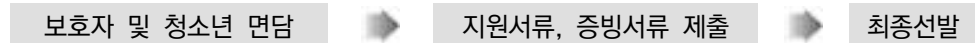
- (오프라인 신청)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검색) - 신청·신고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우선지원 대상 확인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우선지원 대상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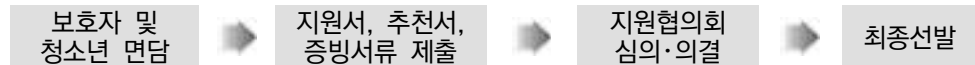
○ 최종 선발 : 우선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로 확정 통보

- *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청소년)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 * 주말형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및 지원협의회 적격여부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되, 운영기관에서 정한 선정 규정에 따라 선발

○ (일반형)우선순위 지원대상 청소년 선발 절차



○ (일반형)기타 청소년 대상 선발 절차



○ (주말형) 청소년 선발 절차



○ 참가자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 참가자 모집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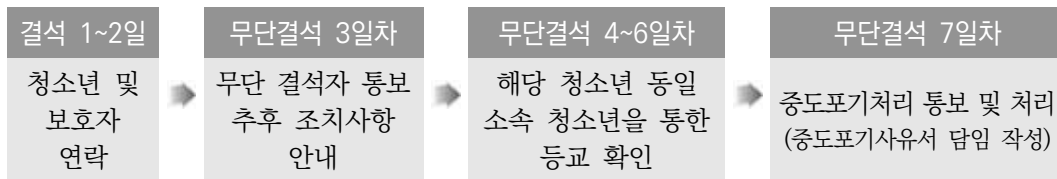
- 공개모집, 추천,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공개모집 방법은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접근

* 외부 배포자료에 '취약계층' 등 참여자의 낙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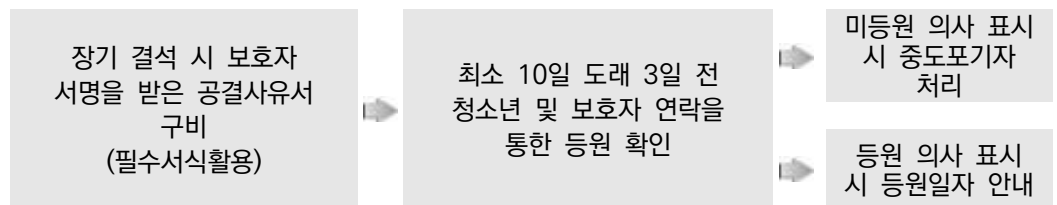
□ 청소년 출결관리

[일반형]

- 모든 운영기관은 전자출결시스템 사용 의무
-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공결처리 기준, 결석, 지각, 조퇴의 조치 방법 등 포함
 - * 공결처리 기준 : 가족행사(경조사, 가족여행), 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 종교행사, 학교행사(수학여행 등), 학원 등 교습참석,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 *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또는 유선통화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 * 주간출석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기록
 -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무단 결석 : 운영 전담 인력에게 별도 연락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시 보호자 또는 학교(담임교사) 사유 확인후 중도포기 처리, 단, 이후 참여 희망하는 경우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참여 허용



- 장기 결석 :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기타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공결 포함)
 - * 단, 대기자가 있는 경우 10일(운영일수) 경과시 중도포기처리 가능(공결사유서 제출 시 보호자에게 해당사항 안내)



-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공결 증빙자료 필수 구비) 등 출결현황 관리에 철저

[주말형]

○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또는 별도 출석부* 관리

* 프로그램 특성 상 전자출결시스템 활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도 업무지원서비스 내 참여청소년 정보 관리 철저

- 당일 출석여부와 건강상태 등 확인

* 단, 운영시간 내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별 출석관리 필수(자체관리)

○ 무단 결석 및 장기결석자의 경우 기관별 기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지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

○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처리절차 마련

- 기관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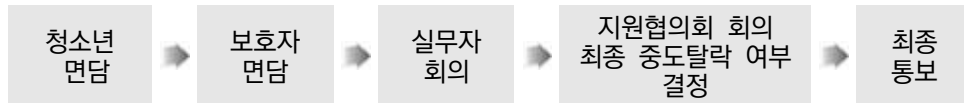
○ 중도포기자 처리절차(예시)



○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준 및 처리 절차 마련

- 방과후아카데미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안정적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퇴소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지원협의회가 중도탈락여부 최종 결정

○ 비자발적 중도탈락자 처리절차(예시)



○ 대기자 및 이수자 관리

- 중도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관리
- 운영종료일 기준 업무지원서비스에서 당해연도 청소년 이수처리 필수

□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 참여 청소년 일상 생활지도

- 개별 청소년의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필요 시,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 및 의료 기관 등에 연계
- 연령에 따른 청소년 발달특성 및 심리를 고려한 생활규칙 마련
 - * 청소년과 함께 생활점검표 및 생활규칙을 만들어 적용
- 참가 청소년 대상 정기적인 면담 실시(반기별 1회)

□ 건강·안전지도 및 관리

○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단 및 간식 구성
- 청결지도,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 지도
- 지역사회 연계하여 건강검진 등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 * 청소년 영양 상태에 따라 식단 및 간식 구성
 - * 외부 업체에 위탁 급식 시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정기적인 교육(간담회 등) 실시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로 등록

○ 귀가지도 관리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귀가 방법을 선택 운영
 - * 귀가방법 예시 : 보호자 동행 개별 귀가, 귀가차량 운영 등
- 귀가방법에 따라 적절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차량 귀가시 지도자가 동승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
- 도착알림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등(전자출결시스템 활용)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안내(2019, 여가부)」 관련 운영 필수
-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
 - * 관련 사항은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확인(「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 참고)
 - * 도로교통법(2023.10.24. 개정)에 따라 캠프, 주말체험활동 등 비상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

3-4 인력 관리

□ 운영 인력 배치 기준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일반형	기본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농산어촌형	팀장1, 담임1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장애형	-	팀장1, 담임2	팀장1, 담임3
	다문화형	-	팀장1, 담임2	-
	탄력운영형	팀장1	-	-
주말형		담당자 1명 이상	-	-

* 주말형은 전담인력 배치 및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인건비 총액내에서 제수당 지급)

□ 운영 전담 인력 관리

-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 출근부를 작성 비치
 - *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인 경우 출근부 제외
-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사업지침 및 각 운영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름

구분	기준 및 자격	
팀장	주요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전담 배치 -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지역 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안전관리 등
	자격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①~②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①~② 요건 중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담임	주요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단위 1명 - ①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급식 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자격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①~⑤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용시 유의사항 (팀장, 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운영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 * (전보발령)운영기관 내 정규인력(무기계약 포함)은 방과후아카데미의 팀장 또는 담임으로 전보 배치가 가능함. 단,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하되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 또는 담임 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팀장이 육아휴직, 휴직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담임이 팀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직무대리기간 동안 팀장 급여와의 차액만큼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경우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일 최소 7시간 미만으로 채용할 수 없음)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분야〉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9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 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운영상 유의사항〉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전담 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따라 반복참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단, 추가 소요예산은 소관 지자체 또는 채용권자가 부담
-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추진
 - 1단계('18. 지자체 직영), 2단계('19. 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등

○ 운영인력 전문성 개발

- 종사자 교육 수료 기준

구분	팀장	담임	주말형 종사자
이수시간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 신규 종사자는 직무 교육 외에 신규 입사자 교육 수료 필수(6시간)
- * 상기 교육은 실무자 의무 교육으로 해당 실무자는 당해 연도 내에 이수시간 이상 수강하되 교육 공백을 최소화 할 것
- * 직무역량지원비는 실무자 교육에 한해 지출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지원교육(자체 및 외부교육 가능)

교육	교육대상	실시횟수	교육내용
상근인력 교육	시설장, 팀장, 담임	연 1회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인력 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연 1회 (자체 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원봉사교육, 담당 프로그램 지도 교육,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 * 타 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들과의 정보공유, 상호방문 등 교류활동 지원

○ 근무환경

- 쾌적한 환경 및 복리후생 지원(제수당, 건강검진 등) 등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 계약시 업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근로계약 예시〉

- 주말 운영하는 주(주6일):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 주말 미 운영 주(주5일):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종사자 휴가 부여
 -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주 40시간), 휴가, 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준수하여야 함

□ 강사인력 확보 및 관리

- 체험역량강화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할 수 있음
- 학습지원활동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가능

구 분	인력확보방안
체험역량강화활동	- 각 분야 전문기능 수행가능자 인력풀 구성 - 지역사회 문화 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 인력 활용
학습지원활동	- 해당 교과 전공자(대졸, 대학원생 등) 또는 해당 교과목 지도 경력이 있는 자로 지역 내 인력풀 구성·운영 - 주부·퇴직교사 등 자원 개발 및 연계

- 강사간담회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 마련하여 시행
 - * 채용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채용 가능하며,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근로계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회보서 등) 강사진 현황 작성 비치

□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

-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명목으로 일비 수준(일일 금 20,000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단, 일반운영비에서만 지급 가능)
-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군부대·경찰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발굴·활용
-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계획 수립
 -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등
- 자원봉사 영역별 인력풀 구성 등 지속적 사후관리계획 마련
 - * 학습, 귀가지도, 급식지도, 상담지원, 건강지원, 특강분야 등
 - * 자원 봉사자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필요시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구입 가능(자산취득성 불가)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종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필수 확인

- 신규 종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연 최소 1회 이상 실시

운영법인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청소년수련시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사회복지관	○	○
학교	○	○
도서관	○	○

*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비적용 시설·기관은 성범죄 범죄경력 조회 불가하나,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자격취득 시 및 매년 1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확인

- 동일인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년 1회 조회 필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1.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노무(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불가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 이외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전문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제56조제1항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 * 이외 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전문 참조

⑥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참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검 대상기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취업제한 대상기관)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 이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전문 참조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절차) 참고

3-5 지역연계 및 홍보관리

□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주말형 제외)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
 - * (필수위원)운영기관장, 지자체 공무원,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
 - * (선택위원)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원협의회는 정기적인(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 비대면 회의 실적 인정(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회의에 해당, 단순 서면회의는 불인정)
 - * 청소년 참여 심의(지역사회추천)의 경우 서면으로 운영 가능
-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2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 신규기관의 경우 참여청소년 모집단계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함(지역사회 추천 전형 청소년 선발과 관련)

□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 지역 내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등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파악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지역 유관기관·자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의무 실시
- 지역연계 자원은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지역참여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됨
- 지역의 연계자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체계적 관리

□ 홍보관리

- 지역사회 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운영
 - 지자체(방과후 아카데미)별로 연초 모집률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발굴 및 홍보계획 의무 수립
- 지역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방과후아카데미 홍보
 -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시정홍보지, 지역신문 등 활용
- 홍보자료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활동내용 중심으로 작성
- 홍보물 제작 시 기관표기 원칙

- ◆ 주최: 여성가족부, 시·도
- ◆ 주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수련관
예시) 서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구청소년수련관)
- ◆ 복권위원회 CI 또는 브랜드마크 반드시 사용
- ◆ 리플렛 등 공동 홍보물(청소년활동진흥원 제작)의 경우 일반운영비 활용 가능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설치 및 교체시 유의사항
 -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판 설치 의무(기관 표기 원칙 준수)
 - 제작 예산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활용

□ 긴급돌봄 수요조사

- 감염병 등 재난 상황발생시 참여 청소년·학부모의 긴급돌봄(보호, 생활지도),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유·무선(전화·문자, 웹 발신) 수요조사 실시

□ 긴급돌봄 운영시간

- 기존 방과후 ~ 21:00(운영시수 4시간) → 수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참여 청소년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09:00~21:00(운영시수 10시간)까지 연장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할 수 있음

□ 긴급돌봄 운영프로그램

- (운영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기관 내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수요에 따라 운영 시수 등 조절 가능
 - 정상운영과 동일하게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 지원(강사비 지급 가능)
-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비대면 활동에 따른 쌍방향 프로그램 지원, 원격수업지원 및 생활지도 등
 - 지원프로그램 : 화상회의 앱 이용하여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강사비 지급 가능)
 - 급식지원 : 식사 여부 확인, 도시락 배달(간편식 제공 포함) 등
 - 생활지도 : 건강상태 확인, 온라인 학습 등 숙제 지도, 개인 면담 실시
 - 원격수업 지원 관리 :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원격수업 참여 여부 확인

□ 긴급돌봄 급식제공

- (운영기관 내 긴급돌봄 청소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능(2식)
- (가정돌봄 청소년) 도시락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등을 통한 급식 제공(1식)

□ 인력관리

- 실무자 근무형태는 격일 교대 근무 가능, 긴급돌봄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국비지원예산에서 추가부담 가능

※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참가 청소년관리

- (지원대상)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청소년도 지원 가능
 - * 긴급돌봄의 경우 운영기관의 교급(초등 / 중등)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 긴급돌봄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학부모)의 공결확인서를 첨부하여 공결처리
- (생활지도) 유·무선(전화·문자, 웹 발신)을 통한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원격교육 숙제 지도, 청소년 개인 면담 실시 등
- (일시적 참여자 관리)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참여를 희망 청소년의 경우 참여 신청서(증빙서류 제외) 및 업무지원서비스(전자출결시스템) 등록 후에 긴급돌봄 참여 가능
 - * 프로그램 지원, 급식지원 등 기존 참여 청소년과 동일한 긴급돌봄 지원
 - * 긴급돌봄 종료시 업무지원서비스, 전자출결시스템 이수 처리
- (출석관리) 긴급돌봄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사용하여 청소년의 출석 여부를 보호자(학부모)에게 전달

□ 운영기관 방역조치

- 감염병 등 전국적인 상황발생시 관련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
 - * 지역적인 특수 상황발생시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의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3-7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 예산규모 : 30,006백만원
 - 1개소당 방과후아카데미 연간운영비(국비 및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형	119,891	179,173	252,342	
농산어촌형	123,133	183,909	258,591	
장애형	-	151,636	212,345	1개반 정원 : 10명
다문화형	-	164,343	-	1개반 정원 : 15명
탄력운영형	72,882	-	-	1개반 정원 : 15명
주말형	48,100	-	-	1개반 정원 : 30명

- ※ 통학버스 운영비 미포함
- ※ 예외적 운영 단가

구 분	1개반(20명)	1개반(25명)
기본형	98,349	109,120
농산어촌형	100,510	111,821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원칙

- 예산구성
 -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적립금
 - 사업비 : 급·간식비, 프로그램비, 일반운영비

○ 예산편성기준

국고보조금	항 목	세 부 내 용
인건비	인건비 등	○ 운영전담인력 급여 및 퇴직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사업비	급·간식비	○ 실출적인원 또는 전월 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지출 * 급식비는 예산범위 내 자율편성(1인1식 5천원 이상)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강사비, 체험활동비 등) * 캠프 운영 시 해당 예산에서 지출 가능
	사업운영비	○ 일반운영비(보험료 등), 귀가차량운영비, 보험 및 직무역량 교육 등 * 귀가차량운영비 : 지입차량, 자체차량 보유 시 운전자 채용 및 유류비 사용 가능 (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내 km만큼만 주유 가능)

- * 종사자의 장기간(3개월 이상) 미채용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잔여 인건비를 활용하여 보조인력 채용 가능
- * 장애형, 탄력운영형의 경우 인건비 외 예산에서 보조인력 채용 가능(연간 8,000천원)
- * 주말형의 경우 연간 인건비 한도 내에서(붙임1 참고) 직원 또는 시간제 인력 배치 가능
- * 종사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에서 재료비 편성 가능(단,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 * 긴급돌봄지원에 한하여 자산취득성 물품은 연간 500,000원 이내 사용 가능
- * 일반운영비 내 출장비, 실무자 참가비(야외활동), 통신비, 부모(보호자)간담회, 지원협의회 운영, 비대면 프로그램 사용료 등 운영기관에 맞게 편성
- * 귀가차량운영비 추가 및 원거리 강사의 교통비 지원(1회 20,000원 이내) 가능(운영비는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집행원칙

-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지출
- 외부위탁 또는 계약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사업자 선정(다수 비교견적 등)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예산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집행 가능 (단, 운영유형별 예산비율 유지)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인건비 외 사업비로 편성)

구분	비율										
	기본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인건비	48%	49%	48%	46%	48%	46%	58%	56%	54%	43%	31%

* 지자체 50%(서울 70%) 매칭 예산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및 정규직 전환 비용은 비율 내 미포함
* 예외적 운영

구분	기본 1개반		농산어촌 1개반	
	1개반	2개반	1개반	2개반
인건비	58%	52%	56%	51%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예정) 예산은 사업비로 전용하여 적극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전용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및 인건비 예산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 근무시간 외 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주말체험활동 등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 근무 발생시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법인(단체)에서 별도 예산편성하여 근무시간 외 수당 지급
- 지자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급식비 집행기준

- 외부 위탁급식의 경우 실출석 또는 월평균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 집행 가능
 - ① (사후 지출) 사전 계약(약정)을 통해 실출석 인원 또는 평균 모집 인원에 대하여 익월초 급식비 지급
 - ② (선결제 및 사후 정산) 사전 계약(약정)을 통해 전월 평균 출석 인원으로 급식비를 선지급하고, 익월초 전월의 실출석 인원이나 평균 모집 인원에 대하여 급식비 정산

□ 회계관리

-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e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하고, 예산집행시 지체없이 ‘e-나라도움’ 입력조치
-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외 캠프비, 입학비, 가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책정 절대 불가
 - 수익자 부담금(교재비, 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기관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접수지출내역에 대해 반드시 문서화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순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 시 검증 실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 관련

□ 종사자 처우개선

- 지자체별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편성 권고 (보조금 매칭 예산 외 별도)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비 지원액 외에 필요한 예산은 수련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월)’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 1단계(지자체 직영, ’18년도), 2단계(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19년도) 등
 - ※ 위탁기관 종사자의 경우 동일 처우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권고

3-8 개인정보 보호

□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 개인정보 항목별 처리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동의를 전제로 함

〈 정보수집의 범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복지지원 자격 정보 등(대상청소년 및 부모)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회계 관련서류 5년 보관) 및 폐기
-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제공 및 수집목적 외 이용 불가
 - *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수기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관리·감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최종 책임자는 '운영기관의 장'임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3-9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평가

□ 평가 목적

- 공공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내실화 및 공공성 확립
- 체계적인 사업평가 실시를 통한 자가 점검 실시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평가 개요

- 대상 : '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전국 운영기관 중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일정 : '25년 1 ~ 9월
 - 1~2월 : 사업 종합평가 평가지표 자문회의
 - 3월 : 사업 종합평가 사업설명회 및 교육
 - 3~4월 : 자체 평가서 제출
 - 5~6월 : 서면평가
 - 7~8월 : 운영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
 - 9월 : 결과보고
- 평가주기 : 3년마다 1회 실시
- 평가영역 : 3개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행정참여도)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 ※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예정

□ 평가 결과 및 활용

- 서면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정
- 평가등급 : 5개 등급
- 평가결과 활용(안) :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이행. 추후 평가 시 개선이행 정도 평가 예정

3-10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 컨설팅 목적

- 운영기관의 사업 안정화 및 운영기관 발전 방안 모색

□ 컨설팅 개요

- 운영대상
 - (의무) 신규기관 및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 미흡기관
 - (희망) 운영기관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
- 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운영일정 : 2월~10월
- 컨설팅 운영
 - 신규 및 미흡기관(운영, 모집)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한 1:1 맞춤형컨설팅 운영
 - 신규 운영기관 및 '24년 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모집 미흡 기관 포함) 이하 기관 의무 컨설팅 지원
 - 기존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이 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동료(멘티 - 멘토) 컨설팅 운영

□ 목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관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현장점검 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점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현장점검 : 지방자치단체 ○ 합동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및 지방자치단체 ○ 불시점검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단
점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실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현장점검 : 4~6월 예정 ○ 합동·불시점검 : 8~10월 예정
점검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현장점검 : 각 기관별 연 1회 이상 ○ 합동·불시점검 : 필요시
점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주요 점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기타 등

※ 추후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여성가족부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현장점검 점검표 및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 합동·불시 점검 실시

※ 지자체 자체 점검 실시 후,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시·도 담당자: 현장점검 진행 총괄
 - 관할 내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 점검표 및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 시·군·구 담당자: 자체 현장점검 실시
 - 관할 내 운영기관 자체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완료 후, 현장점검표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시, 담당 공무원 동행 협조
- 운영지원단: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협조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취합·분석 등 현장점검 협조
 -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여성가족부와 합동점검 실시

〈 운영 중단 사유 〉

- 청소년모집, 출결관리, 급식·귀가지도, 회계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 최하점
-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향후 3년간 운영기관 선정 제외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자 지정) 지역현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법인)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설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사업자 지정**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 수탁자 자격기준 : △‘청소년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 지자체별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1. 청소년 활동관련 업무 공무원, 2.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3. 청소년 상담복지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자 지정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추진방식을 적용

- (사업운영의 중단 및 종료) 운영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전년도 상반기 중에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운영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을 확보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포기 기관에 대한 조치) 기존 운영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부정수급금 환수 등 조치 신규 사업자 지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기존 참여자 및 지역내 돌봄수요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시 인증수련활동 확인 후 참여 권장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기관장)
 - 역할: 비상약품, 구호설비 구비 운영, 상시 안전관리체계 점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응총괄, 응급환자 이송방안 마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 * 수련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외 방과후 아카데미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지정
 - * 약사법에 따라 비상약품은 의약품만 가능하며,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 비치 가능. 참여 청소년에게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와 청소년이 동행하여 약국에서 구매하여 지급 가능
- 참여 청소년 대상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주말형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간(연간, 반기, 분기)별 안전대비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구축(방과후 아카데미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지진·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재난 발생(예보)시 시·군·구(필요시 시·도)의 결정에 따라 일시휴업 가능
 - ※ 일시 휴업시 시·도 및 운영지원단에 즉시 보고
 - ※ 자연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휴업시 휴업일은 운영일수에 포함(지자체의 휴업 승인 공문 필수)
 - ※ 운영기관 자체 리모델링의 경우 일시휴업 불가(대체 공간 확보 필요)
 - * 대체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여가부 별도 협의(비대면 전환, 긴급돌봄 대체 등)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당해연도 1.20.까지
 -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 * 운영기관에서는 기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10.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
- 여성가족부에서는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10월 예정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방비예산 편성 및 시스템 입력 완료 처리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일 : 당해연도 2.15.까지
 - 작성서식 : 정산보고서(서식 3), 결과보고서(서식 4)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기타 사항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
- 운영기관별 전담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 및 업무지원서비스(내부 업무망) 사용방법 교육 등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등)를 지자체 현장점검 시에 제출 필요
-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한 월별 현황조사(참여 청소년, 참여 실무자, 대기자 등) 제출
 - 현황점검 결과 모집률 80% 미만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 * 인건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임금체계에 따라 편성 가능하나, 이에 따른 총임금(기본급·제수당 등)은 아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
- * 사업운영비는 운영 유형별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시작 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책상, 걸상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교체하도록 노력(고정자산 예산 확보)
-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복리후생비, 각종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권장

(단위 : 천원)

항 목		탄력운영형 (15명)	1개반 (30명)	2개반 (40명)	3개반 (60명)	주말형 (30명)	
인건비	급여	28,248 (2,354천원× 12개월×1명)	25,644 (2,137천원× 12개월×1명)	28,248 (2,354천원× 12개월×1명)	31,296 (2,608천원× 12개월×1명)	13,008 (1,084천원× 12개월)	
	담임	-	25,368 (2,114천원× 12개월×1명)	50,736 (2,114천원× 12개월×2명)	76,104 (2,114천원× 12개월×3명)		
	퇴직적립금	* 편성기준 : 기관별 가입된 퇴직금제도에 따른 비율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육아휴직 대체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해당사유에 한하여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 1%p 상향 가능)					
	정규직 전환 비용	* 정부 지원단가: 1인당 年 2,900천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관계부처 합동)”의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1,2단계 기관에 교부					
사업 운영비	급식비 (간식포함)	* 지자체 또는 기관의 식비 단가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 책정 가능(1인1식 5,000원 이상) - 예산범위 초과 시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가능 *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프로그램비	* 예산 범위 내 과정별 운영시수 및 단가 자율편성					
	일반운영비	*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자율편성(참여 청소년,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보험료 포함)					
	차량운영비	* 지역 시세 고려하여 단가 조정 가능하며 지입차량, 자체차량 보유시 운전자 인건비 지급 가능					
	보험	* 10,000원(최소 기준임)×청소년 수					
	직무역량비	* 150,000원×운영전담 인력 수					

* 운영유형별 예산비율(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 : 3-7 예산편성 및 집행 참고

(단위 : 천원)

유 형 별		기본단가	어린이 통학버스 수요제출 기관	
일반형	기본형	30명	119,891	6,600
		40명	179,173	6,600
		60명	252,342	6,600
	농산어촌형	30명	123,133	6,600
		40명	183,909	6,600
		60명	258,591	6,600
	장애형	20명	151,636	6,600
		30명	212,345	6,600
	다문화	30명	164,343	6,600
	탄력운영형	15명	72,882	6,600
주말형	30명	48,100	-	

※ 예외적 운영 단가

구 분	1개반(20명)	1개반(25명)
기본형	98,349	109,120
농산어촌형	100,510	111,821

- ◎ 2024년도 주요 추진성과(1페이지 이내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
- ◎ 2024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2024년도 개선계획 수립
 - * '24년도 평가의견서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5년도에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개요중심으로 작성
 - 1. 2024년 자체평가 결과(1페이지 이내)
 - 2.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한 주요개선 계획('25년 자체평가 계획 별도로 수립된 경우 자체평가 계획서로 제출)
 - 1) 개선과제(과제별로 작성)
 - 2) 개선과제별 개선계획 * 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작성
 - 3) 개선과제 점검 및 이행관리 방안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지자체 관할 운영기관별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운영기관명	예산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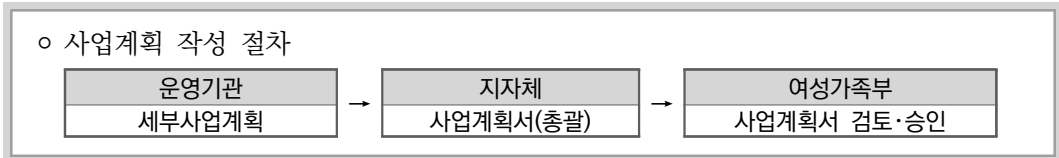
* 지자체별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기재

5. 사업홍보 계획

-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 사업홍보물 제작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1. 사업명 : '24년 ○○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2. 사업개요

목적 :

사업기간 : '24.1월 ~ 12월

사업내용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예 산 액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시설 : ○○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 ○)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예산			비고
	계	초	중	초+중	계	국고	지방비	

3. 정산총괄표

운영기관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사업비 집행내역

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나. 보조금 불용액 내역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다.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 내역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

1. 사업 실적

- 총평 :
- 운영현황

운영 기관명	대상인원			운영유형					
	계	초	중	일반형					주말형
				기본	농산어촌	장애	다문화	탄력운영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미흡한 점

운영기관명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운영기관명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발전방안

운영기관명	발 전 방 안

번호	항 목	서식	시스템	비 고
1	월별 현황 보고(팀장, 담임)	-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업무보고 사용
2	월별 급식 계획	필수	-	
3	차량운행일지	필수	-	
4	일일교육환경점검일지	필수	-	기관 내 동일 내용으로 작성중인 경우 기관 내 양식 대체 가능
5	대기자 관리대장	-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대기자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6	중도포기사유서	필수	-	
7	인사기록카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실무자 인적정보 등록
8	팀장/담임 근로계약서	필수	-	
9	강사 채용계약서	필수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강사 인적정보 등록 * 전문분야, 연락처 등 등록(원본 기관 보유), 모집에 활용
10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필수	-	
11	대상 청소년추천서	필수	-	
12	청소년지원신청서	필수	-	
13	보호자동의서	필수	-	
14	청소년관리기록부	-	필수	업무지원서비스 상 청소년 인적정보 등록
15	공결확인서	필수	-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	
17	주간시간표	필수	-	
18	프로그램운영계획서	필수	-	
19	운영지도안(강의/활동)	필수	-	
20	강사근무일지	필수	-	
21	안전사고 상황보고서	필수	-	

※ 유의사항

- 필수서식은 기본내용을 유지하되,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발생시 변경 사용 가능
- 선택서식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용하고, 기관별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자체 사용 가능
- 작성서식은 운영기관별로 업무지원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사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입교 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 경로 등을 각 실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토목부문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진입로	1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옹벽, 석축 및 담장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구두 굽(하이힐 등)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가 있는가?			

□ 건축부문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3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5	처마 및 모서리 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주출입구	1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및 로비	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2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계단	1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2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치되어 있는가?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구분	번호	항 목 별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지적사항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2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제시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옥외구조물	1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2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II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아래 지침내용 참고 가능

1 개요

1-1 목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
- 운영목표
 - 청소년활동자원 역량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 청소년활동 기반 -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

1-2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추진경과

- 1996~1999년 :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단계적 설치
 - 1995년 5월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문화체육부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계획』(’96.2.16)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96.6.2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
- 2004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규정)
- 2006년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개편
- 2007년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 변경(7.27,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2014년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 2022년 :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운영방식 변경

2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1 기본방향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도 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활성화
- 지역 내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 활동의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사업 운영

2-2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나.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중앙 단위 조직 및 기능〉

가)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 및 계획 수립·집행
- 청소년활동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 및 연계를 위한 지원 총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 법·제도의 개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증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관련 정책 개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정책사업에 대한 컨설팅, 직무교육 등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지원 총괄
- 청소년활동 정보 종합 제공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기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

〈시·도 단위 조직 및 기능〉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총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 또는 지침의 제정 관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형태 결정 및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력 및 운영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계획 승인,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관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체 규정 제·개정 승인 및 관리·감독
- 지역 내 학교 등 유관기관에 대한 시·도 센터의 연계 업무 협조·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종합관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업무 수행

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조직 편성 및 예산 운영 관리
- 지역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수립 지원
- 지역 청소년기관의 홍보지원 및 정보제공, 직무교육, 컨설팅 수행
-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 사업 연계 및 지원
- 지역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 교과과정 반영 노력
- 활동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 관련(사업설명회, 컨설팅, 결과 후속 조치 등) 지원
-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지원
-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 및 지원

〈시·군·구 단위 조직 및 기능〉

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역 내 청소년활동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 시·도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내 활동지원 사업 협력
-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정책사업의 홍보 등 업무 지원
- 지역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 / 교과과정 반영 노력

나)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도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중심의 운영계획 수립

- 시·도 센터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
- 지역 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학교연계(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 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을 시·군·구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음

2-3 설치·지정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조례/규칙 등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직영, 법인 설립·운영 및 위탁운영 등 다양한 운영유형으로 할 수 있음.
 - 선정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특히, 시·군·구의 경우 지역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지정운영도 가능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활동시설
 2.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법인·단체

3-1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공성 확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증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시설,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센터가 동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 필요

구분	세부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칭을 사용하여 독립된 기관 형태로 운영 ▶ 시·도는 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는 센터가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에 센터의 기능과 역할 안내,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지역의 시설 및 단체 등의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조사포함)에 시설 등이 협조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관련 문서 발송 ▶ 적정 센터 인력 기준 10명 이상 필수확보(세종시는 5명 이상) 및 청소년 활동 업무를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겸직, 법인 업무 등 타 업무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제안으로 별도 위탁(수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비 별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업 보전금, 매칭되는 지방비는 타 기능(부서)의 예산으로 전용(활용) 불가 ▶ 센터는 지역의 청소년활동 지원기관으로서, 지자체 지정위탁(공모포함)사업을 제외한 지역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과 경쟁하는 (공모)사업 등에 신청 사양
통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관을 통합 법인이 위탁받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및 센터장 직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중심의 독립운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센터장 전결 위임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3-2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유형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 법인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²⁾에 위탁·운영 가능

운영형태	내 용
직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도 조례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법인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설립 시 지자체 또는 법인단체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며, 활동진흥센터 인력을 법인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지자체에서 법인설립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팀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법인으로 설립시 반드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해야 함 (활동진흥센터 인력이 법인업무 겸직 수행 금지) ※ 시·도가 관리감독 할 것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도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위원은 청소년활동분야의 학계 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와 청소년활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 계약 내용은 시·도별 자체기준으로 설정 가능

※ 민간위탁의 경우는 해당 위탁법인의 각종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

2) 청소년단체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3-3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기준

□ 입지기준

-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며,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수월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분	내용	비고
규모	연면적 35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통합법인의 경우 분리된 사무공간	
교육장	최소 2개 이상(50명 이상 수용 가능)	센터의 주요기능 중 지역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 구비
회의실	최소 1개 이상(20명 이내 수용 가능)	상시적인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공간 구비
정보자료실	최소 1개 이상	각종 지역 및 전국단위 자료 등을 비치할 수 있는 자료실 구비

□ 지방자치단체는 추진체계별 역할에 따라 운영 공간 확보를 지원

- 지자체 소유의 건물(공간)을 센터가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기준

- 피난, 연소방지 시설구비 등 소방안전시설기준 준수
- 상병자를 위한 응급조치용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추는 것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 대책 마련
-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2년)으로 안전교육실시(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시설 노후, 하절기 태풍 및 수해, 동절기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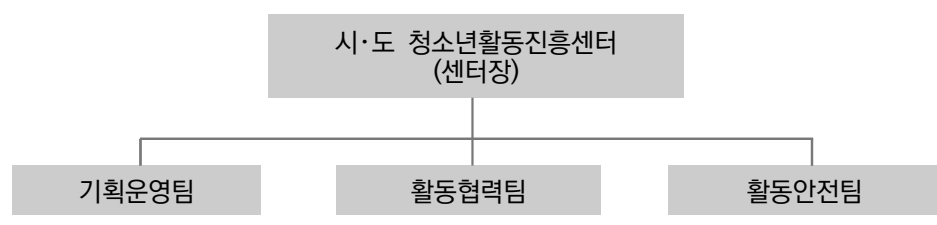
3-4 센터 명칭 사용

- 센터명칭은 00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고유명칭 사용
 - ※ 단,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명칭 반드시 사용할 것
- 외부 공문 발송 시 반드시 ‘00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유 명칭 사용

3-5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직 및 인력

- 운영 정원
 - 직원은 센터장(상근), 팀장, 팀원으로 구분
 - 정규직 10명 이상 확보[센터장(1), 팀장(3), 팀원(6명 이상)]
 - * 세종센터는 정규직 5명 이상 확보
 - * 센터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 결원 발생 시, 즉시 공개경쟁 채용 등을 통해 충원하여야 하며, 정원에는 수탁사업으로 배치된 인력은 제외
 - 시·도의 여건(예산, 청소년 인구, 지자체위탁사업 등)에 따라 센터의 정원 확대 조치
 -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별도 위탁하는 사업은 사업비 외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센터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조치

□ 운영 조직도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팀을 조정·확대 운영 할 수 있음.

3-6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본 원칙

- 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지출
- 전환사업 보전금, 지방비를 합산한 예산총액 대비 사업비는 23% 이상 편성 권고
 - ☞ 예산총액에 별도 수탁하는 사업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한 인건비는 제외

▶ 예산 편성 시 다음의 사항은 경상비로만 편성 가능함

- ① 종사자 대상 교육비 : 연간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경상비에서 집행 가능 (1인 30만 원 기준)
- ② 여 비 : 여비는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하며, 경상비에서만 집행 가능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 ※ 단, 현장지원사업(정책과제 사업 포함)을 위한 출장비는 사업비로 편성 가능
- ③ 워크숍 경비 : 사업 추진(기관운영전략수립) 관련 직원 워크숍은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통합법인은 활동진흥센터와 기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과의 예산은 반드시 명확히 분리하여 집행
- 법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기관장 포함) 인건비, 운영비 등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예산(지방비 포함)으로 집행 금지
 - 센터 인력이 타 기관 겸직, 법인 업무 등 타 업무 중복 수행 금지
- 기관의 사업 추진 목적의 직원워크숍(운영전략관리 사업영역의 중장기전략수립, 사업계획 수립, 자체평가 및 개선관리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지원조건

- 전환사업 보전금 25%(지방이양 전 국고보조 비율). 지방비 75% 이상
- 별도 위탁(수주)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75% 이상 반드시 확보

○ 예산편성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인건비	기본급	기본급, 각종 수당
	기본급 외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4대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경상비	기관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여비, 교육비, 협회 회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사업비	사업운영의 효율을 위해 가급적 단위 사업별로 편성

※ 인력 증원에 따른 물품 구입 등은 경상비에 포함

- 기본급과 4대 보험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등의 경비 계상
- 주요 항목 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 예산과목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 가능
(단, 사업비의 예산감액조정은 불가, 사업비는 23% 이상 편성)
 - 인건비(기본급 외 수당) 부족 시 해당 시도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운영
- 기관의 사업 추진목적의 직원 워크숍(운영전략관리 사업영역의 중장기 전략수립, 사업계획 수립, 자체평가 및 개선관리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3-7 주요 추진 방향 및 내용

□ 중점 방향

- 청소년 활동 전달체계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청소년기관(시설)과 연계·협력 기능 강화
- 시·도에서는 학교연계 협력체계 구축, 모니터링, 지도인력 연수 등 총괄적인 사업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담당토록 조치(단,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에 한함)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직접 사업(행사 등)은 지양
 - * 고유사업보다 수탁사업의 비중이 과할 경우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탁사업의 경우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국한함 (단, 센터가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지역의 시설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수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영역 구분

업무영역	주요 내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지역 내 청소년활동 관련 조직 및 지도자들의 역량증진을 위하여 교육, 컨설팅, 사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업무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수립된 정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교과과정에 반영 노력 등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청소년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

※ 수탁 사업 : 지자체, 외부(유관)기관의 수탁사업

- 수탁사업은 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수탁 수행 시 인건비, 사업비는 반드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2025년 시·도센터 주요업무 내역 ■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사업 예시(참고용)
1. 청소년 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1-1. 청소년 지도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직무교육 및 정책사업 직무교육 • 현장 학습활동 지원 등
	1-2.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기관 컨설팅 운영 • 수련시설 평가 지원(설명회,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2-1.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안 개발 및 정책수립지원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활용 등
	2-2. 국가 정책 사업 실행 지원	국가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 국가 정책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활동, 자원봉사 활동, 비교과활동, 수련활동인증제·신고제, 포상제 활성화 등 -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정권 등
	2-3. 시·도 정책 사업 실행 지원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소년정책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축제, 국내·외 청소년 교류 등 •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과과정 반영 노력)
3.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3-1. 청소년 정보 수집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정보 수집·관리 체계 구축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
	3-2.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홍보 • 청소년활동 인지도 개선
4.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4-1.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중장기 및 연간사업기획 등) • 센터 성과관리
	4-2.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네트워크 구축(교육청, 학교, 청소년유관기관 등) •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프로그램, 예산 등 지원) • 청소년지도자 대회, 신년인사회, 사업설명회 등

※ 2025년 센터 사업계획은 위 표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하에 자유롭게 편성

※ 국가 정책사업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계획 및 지침에 따라 추진

3-8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및 운영 원칙

- 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위주로 구성, 정기회의 개최 등 운영의 활성화

* 법인 이사회는 센터 운영위원회로 인정 불가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 시 시·도와 협의 및 시·도 승인

□ 인 원 : 10인 내외

□ 구 성

- 자치단체 청소년 업무 총괄 공무원(팀장급 이상)
- 청소년 시설·단체·기관의 장
- 청소년 유관기관의 장(학교장, 교육장 등)
-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 및 학계 전문가 등
- 지역사회 기업가 및 사회 저명인사
-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 및 지도위원 등

□ 운영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 역 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사업의 계획 및 추진현황 검토 등
- 지역사회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자문, 기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학교, 유관기관, 단체, 언론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9 인사 및 보수관리

가. 인사관리

□ 종사자 채용

- 자격기준 : 【참고 1】 참조
- 시기 : 직원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함
 - * 시·도 또는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 단,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운영형태에 따라 시·도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용이 가능함
 - 팀장, 팀원 결원 보충 시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려
 - 팀장을 팀원에서 선발할 경우 ‘승진’으로 간주함
 - 팀원을 기존의 비정규 직원에서 선발할 경우, 팀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 인사위원회 구성
 - 직원 채용의 객관,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형태에 따라 시·도 또는 위탁단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 시·도에 보고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상의 의무 조회 대상 기관인 수탁기관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경력 조회
 - * 진흥센터 취업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또는 취업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철저

□ 직원 정년 : 만 60세

□ 직원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수탁단체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나. 호봉획정 및 승급

□ 호봉의 획정 및 재획정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
- 호봉은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경력의 인정]

- ▶ 경력인정의 범위 : 【참고 2】직원 경력산정 기준표에 의함
 - ※ 경력인정의 적용 시기는 해당 지침의 통보일로부터 적용됨.
2018년도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기존 지침의 적용을 받음
- ▶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 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중 1개만 인정함
- ▶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권한 있는 자(도·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또는 보수임금내역,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에 의해 경력인정 가능
 -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확인

□ 초임호봉의 획정

종류	초임호봉 획정	재획정
대상	센터에 신규 채용되는 자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기	신규 채용일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된 근무경력 1년에 1호봉씩을 더하여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1월 미만일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 미반영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재획정에 미 반영된 기간은 그 기간만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승진

- 정 의 :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함
- 시기 및 방법
 -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급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이 【참고 1】의 직원 자격기준 중 해당 직급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 승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지급이 가능한 경우
 - 운영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거 승진할 수 있음
- 승진하는 경우 호봉은 1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
- 각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연수는 5년 이상으로 함
 - ※ 다만 특별한 직무성과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소요연수 단축가능

□ 승 급

- 대상 : 센터에 재직 중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승급
 - 정기 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시행
-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

다.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는 정규 근무시간(오전9시~오후6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로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시행할 수 있음
 - 육아(보육), 평생학습 등을 감안하여 정규근무시간 전후 1시간을 기준으로 탄력 근무제 도입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출 강
 -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부기관의 출강을 요청받은 경우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 영리업무 겸직 불가
 - 센터장과 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센터장 또는 종사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겸직할 수 없음

○ 수 강

- 직원의 수강(재학)은 근무시간 외에 한함. 단, 부득이한 경우는 센터장의 허가를 득한 후 휴가 범위내에서 수강하여야 함. 수강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준용

□ 기타 복무관련

- 복무관련 사항은 지자체 조례 등 자체 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함

라. 징계

□ 센터장은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법인의 장이 면직
(직영의 경우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름)

- 센터장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수탁기관 장에게 센터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직원의 면직 및 징벌

-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 또는 위탁법인은 센터 업무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자체 징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단, 센터장은 직원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
- 센터장은 직원의 징벌을 해야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 센터 내 징계 규정이 없을 경우 직영 또는 위탁법인(통합법인)의 징계규정을 준용 할 수 있음

마. 보수

□ 보수지급 원칙

-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
 - * 기본급 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 및 센터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편성·지급
- 기타사항은 정부예산회계규정, 지방보급법 등을 준용

□ 기본급

- '24년 기본급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3% 인상

□ 기본급 외 수당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과 여건에 맞게 편성

* 단, 지자체에서 직원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 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

■ 기본급 외 수당(참고사항임) ■

구분	지급내용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의미하며, 주12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무는 월 20시간 한도 내 지급 가능,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금 또는 보상휴가(대체휴무)로 지급할 수 있음 -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 준용) 다만, 지자체별로 지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
근속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근무경력과 군복무기간만 인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월 5만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월 6만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월 8만원), 20년 이상(월 10만원)
월정직책금 (직급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월 50만원), 팀장(월 10만원), 팀원(월 5만원, 직급보조금)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월 4만원 • 자녀 :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6) 반영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원
정액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4만원
연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 수당은 동 사업 예산 기준을 참조하여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급하고, 지방비 추가 확보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가능(교통보조비, 정근수당 및 가산금,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자녀 학비보조 등)

□ 보수지급일

- 보수는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기타 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법적 충당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 상근 자원봉사지도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당을 지급할 수 있음

3-10 여비관리(규정)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시·도 공무원 여비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여비는 반드시 경상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불가
 - * 단, 정책과제 사업을 포함한 현장지원사업, 직원 워크숍을 위한 여비 등은 지자체 승인 하에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 여비의 종류 :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함
 - * 운임은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으로 구분

가.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왕복 12km 미만)

- 출장내용에 따라 4시간 미만인 경우 1인 10,000원, 4시간 이상인 경우 1인 20,000원을 지급함(단, 업무용 기관차량 이용시 4시간 미만은 미지급, 4시간 이상인 경우 1인 10,000원으로 감액지급)
- 근무지내 출장이라도 도서지역 등 일반 대중교통 외 운임(선박 등)이 발생할 경우 실비 처리할 수 있음

나.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에 준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3.3.2.) 반영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경우 실지급된 운임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급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
 - *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자가용 이용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는 센터장의 사전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 직원 등
-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자가용 이용시 운임의 산정 기준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거리계산방법을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23.3.2.) 반영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 증빙자료 제출의무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
 -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3-11 종사자 역량강화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센터장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법정 교육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심폐소생술 교육 필수)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교육명	이수기준	근거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성매매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93조

※ 그 외 교육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맞게 추가 운영(예 :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청렴 및 윤리교육 등)

※ 법정 의무교육은 법령 및 정부·경영방침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센터 종사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음.
업무역량 교육비 편성에 따른 직원역량강화교육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필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

※ 경상비에서 직원 교육비 편성

- 교육비 편성은 최대 3백만원을 초과 집행할 수 없음(1인 3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
- 직무와 관계된 교육에 한하여 집행가능하며, 자기개발 성격의 교육으로 예산 집행 불가

3-12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활동진흥센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센터장으로 지정

3-13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업무를 지도 지원하여야 함
 -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시·군·구 공공 청소년활동시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 지자체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활동 지원 및 협업요청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수련거리) 연계 활성화로 청소년성장 및 활동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학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전국 표준적·균형적 사업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지원 및 연계협력을 우선 제공 노력하여야 함
 - 늘봄학교,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등 새로운 분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 시·도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센터 설치 운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2025년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사·도 : 여성가족부

○ 사·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실적 진단(평가) 및 현장점검

가. 24년 사·도 센터 활동실적 진단(평가) 시범운영

○ 목적 : 시·도센터의 위상정립과 운영활성화를 통한 청소년활동 정책전달 및 수행체계의 효과성 증진

○ 운영방향 : 통상의 평가가 아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실적의 모니터링, 진단 수준에서 실시

○ 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법 제도 정비(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그 결과를 기관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할 수 없음.

※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확정 통보 예정

나. 현장점검

○ 평가 목적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 추진 독려 및 불법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센터 지도 점검 실시

○ 점검 주체 : 지방자치단체

○ 현장점검 실시

- (대상) 사·도 센터 및 시·군·구 센터

- (점검횟수) 센터별 연1회 이상

- (점검내용) 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인력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부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필요시 합동 현장점검 실시 가능
 - (주체) 여성가족부,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기타 사항
 - 센터는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야 함

【참고 1】

직원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지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지도)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소지자
팀원	활동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로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지도)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 후, 인사·노무·회계·전산·홍보 등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및 청소년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실무”라 함은 청소년(지도) 관련 업무, 일반 행정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를 의미함

【참고 2】

직원 경력 산정 기준표

구 분		경 력	환산 비율
전 직원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관련부서 근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상근 직원 근무경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 경력(단,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 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된 경우만 인정) ○ 군 의무복무경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상근 근무경력 	
	“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상근 근무 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경력 ○ 민간 청소년기관·단체의 상근 직원 근무경력 ○ “갑”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에서의 인턴 경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직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인턴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한 근무경력 	

※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참고 3】

2025년도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

(단위: 원)

호 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1	2,920,690	2,543,560	2,162,210
2	2,981,070	2,595,900	2,214,510
3	3,038,220	2,645,850	2,264,500
4	3,114,930	2,712,810	2,314,660
5	3,155,970	2,748,540	2,366,970
6	3,213,550	2,798,530	2,416,950
7	3,287,520	2,862,940	2,467,330
8	3,358,700	2,924,950	2,531,510
9	3,432,450	2,989,120	2,581,680
10	3,506,410	3,053,700	2,634,020
11	3,594,200	3,129,940	2,710,480
12	3,681,750	3,206,160	2,786,700
13	3,769,080	3,282,590	2,862,940
14	3,856,850	3,358,820	2,939,130
15	3,944,420	3,435,070	3,015,580
16	4,018,110	3,499,250	3,077,600
17	4,089,590	3,561,240	3,141,790
18	4,163,590	3,625,870	3,206,160
19	4,237,320	3,690,030	3,268,200
20	4,308,450	3,752,020	3,311,050
21	4,368,580	3,804,400	3,384,870
22	4,426,240	3,854,760	3,435,070
23	4,483,580	3,904,740	3,485,010
24	4,543,950	3,957,050	3,537,360
25	4,601,320	4,007,250	3,587,750
26	4,645,110	4,045,110	3,651,930
27	4,689,140	4,083,450	3,690,030
28	4,732,670	4,121,340	3,728,130
29	4,776,680	4,159,900	3,766,280
30	4,820,410	4,197,810	3,804,400

※ 이 기본급 기준표는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기준임금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음(단, 위 기준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함)
 - '21년도 운영지침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를 근거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함
 ('24년도 기본급 기준에서 '25년도 3% 인상한 금액임)

【참고 4】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결과보고서

I 개 요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25년도 사업계획	주요 추진실적

III 주요 성과

1.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주요성과(총평)》

가. 청소년지도자 맞춤형 교육훈련

-
-

나. 청소년활동 사업운영 지원

-
-

2.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주요성과(총평)》

가. 정책자료 개발 및 관리

-
-

나.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
-

다. 정책개발 실행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지원
 -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
 -
- 청소년성취포상제 지원
 -
- 청소년신고제 및 안전관리 지원
 -

3. 청소년 정보자원관리 및 서비스

《주요성과(총평)》

가.

-
-

4.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주요성과(총평)》

가. 센터 전문성 강화

-
-

나.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
-

다.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
-

IV 자체평가

1.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2.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3. 향후 발전방안

V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분량)
1			
2			
3			
4			

*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결과를 첨부

III 청소년활동사업 표준 운영

1 청소년활동사업의 목표와 기본원칙

1] 청소년활동시설 및 사업 정의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시설의 유형구분 ■

종류		주요 기능
청소년 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이 안내에서 말하는 청소년활동사업이란 좁은 의미³⁾의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⁴⁾을 말한다(청소년활동진흥법)
- 또한 이 안내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방법 등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생활권 시설에서 우선 적용가능하며,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참여시 참고하는 방안으로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 가능

② 청소년활동사업 운영의 기본원칙

- 청소년수련시설이 행사하는 청소년활동사업은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 청소년헌장(98.10.25.개정) 참조

가. 청소년중심성의 원칙

- 대상 및 고객중심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천이어야 한다
- 청소년은 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고 청소년에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서 적어도 이러한 모든 측면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주의(self-determinism)는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발생원인, 유형, 구조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대상중심정책을 다루는 법률(청소년기본법)에서 당사자의 참여보장을 담고 있음
- 청소년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발생원인, 유형, 구조를 찾아내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프로그램(수련거리)과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기보다 현장중심적으로 관련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음을 참고

나. 공공성의 원칙

-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공공 복리적 서비스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통해 그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수 있어야 한다

*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 편익성, 타당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포용성.

* 헌법 제34조제3항 '국가가 청소년 ...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

다. 통합성의 원칙

- 청소년활동사업의 실천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부문(생애주기, 가정, 학교, 지역사회, 공공·민간 등)을 아우르는 지식, 접근방법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협업, 의사소통, 조정 및 통합

라. 전문성의 원칙

- 청소년활동시설은 다양한 청소년의 수요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마. 지역성의 원칙

-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청소년(학부모, 교사 등 포함)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표준 운영모형의 의의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기초한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운영모형은 ‘**청소년 활동 공통 기본 프레임워크5)**’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함
 - 청소년활동의 목적, 가치, 주제(내용),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담은 일종의 지침이자 안내하는 내용을 담음
 - 5년마다 청소년활동에서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할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추진하고 성과를 내자는 취지이며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 청소년활동이 무엇이고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져지며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
 - 그리고 그 결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청소년사업 영향 평가)로 환류하고자 함
-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사업을 중앙 단위의 법령 제정 취지 및 정책사업과 지역단위 지자체 시행계획 및 시설까지 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운영 모형 가이드 마련 배포
 - 지방이양된 지자체별 활동사업 운영 관리에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단위 정책 사업 개발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의 견고한 운영과 지역별 자율기획의 활성화 도모
- 표준운영모형은 청소년정책 담당자(지자체 포함)를 위한 청소년시설기능과 업무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시설 운영자의 안정적 청소년시설 운영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지역특성 및 기타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적용여부 및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현장성 및 재량성 우선주의)
 - 청소년시설의 기본운영지원과 활성화 추구를 위한 정책적 기초기능 수행
 -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무성 이해
 - 청소년시설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의 방향성 제시

5) 청소년활동 공통 기본 프레임워크: 청소년활동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는 체계로서 준거 및 기준을 말하며 이를 이유로 다양한 방법의 새로운 시도를 제약하는 것은 아님(유의).
- 청소년(주도성)을 중심으로 놓고, 청소년활동의 목적, 가치 및 과정과 주제 프레임워크
- 일반 국민에게는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 알리고, 현장에는 청소년활동 공통 추진 틀 안내
-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투자할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외부 압력+전문적 체계와 공통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 실천 공동체 발전 필요 내부 압력 수용

○ 향후 전면 재구축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의 새로운 모델로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⁶⁾의 사전 준비로서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정보화)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중장기(‘26~’28년) 추진과제별 이행

- * (‘23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기준 1차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
- * (‘24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기반 청소년활동디지털 플랫폼 ISP 추진
- * (‘25년~) 예산 확보 추진
- * (‘26년) 플랫폼 통합 모델 및 모바일 앱 구축, 2차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2 청소년활동사업 범위 및 실천

1 청소년활동사업의 범위

○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9개 영역⁷⁾으로 나눈다.

① 문화/예술 관련 활동 :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영화,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공연 감상 및 야구·축구 등의 스포츠관람을 포함

* 예시 :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연극활동, 어울림마당, 전통예술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② 과학/정보 관련 활동 : 각종 정보경진대회 및 과학실험 등을 의미하며, 각종 컴퓨터 관련 활동, 과학실습, 관찰, 천체관측, 요리실습, 어류사육 등을 포함

* 예시 : 디지털활동(AI 기술 활용 등), 로봇·코딩 활동, 우주과학활동, 정보활용활동, 영상활동 등

③ 모험/개척 관련 활동 : 신체의 강건함, 용기, 인내심, 탐험정신, 도전의식, 진취성 등을 키우기 위한 탐험, 수상·해양·항공 훈련,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개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각종 캠프를 포함

* 예시 :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 활동, 트레킹 활동, 탐험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6) 청소년성장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 e청소년의 7개 점점사이트를 일원화하여 청소년과 학부모가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즐길수 있는 웹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 e청소년의 4개 지원시스템도 통합하여 청소년 관련 기초 데이터를 시스템화하고 공공 디지털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

7) 법정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기준을 우선 따름.

- 청소년기본법제15조의2: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 : 인간존중의 정신·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해 경제적 도움이나 대가없이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각종 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포함

* 예시 : 재능기부활동, 일손돕기활동, 현장체험봉사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글로벌 봉사활동 등

⑤ 직업/진로 관련 활동 : 직업의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으로 직업체험관, 취업정보센터, 직업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시설 참여를 의미하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제외함

* 예시 :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설계·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⑥ 국내외 교류활동 : 개인적인 해외여행 등을 제외한, 세계문화의 이해, 외국 교류활동, 국제회의 및 친선교류 참가 등을 의미

* 예시 :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 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세대별 교류활동, 지역간 교류활동 등

⑦ 건강/보건 관련 활동 :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과 같이 건강과 보건지식의 증진활동을 포함

* 예시 : 건강관련 지식이해 활동, 생활습관 개선활동, 신체단련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 활동, 중대재해 예방활동 등

⑧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과 같이 자신의 인성계발을 위한 활동을 포함

* 예시 :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 수련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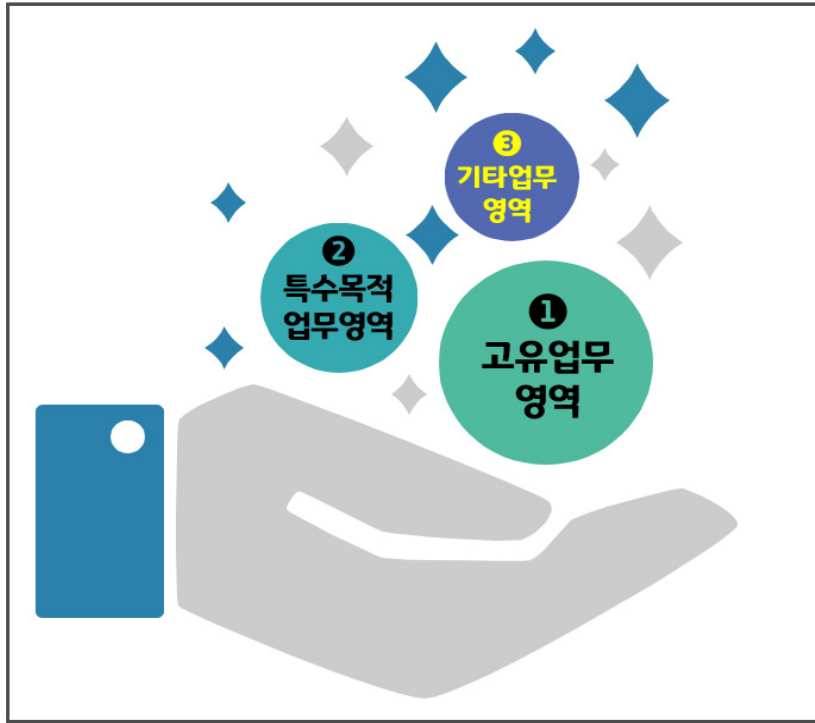
⑨ 환경 보존 관련 활동 : 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과 같은 환경 보호 활동을 포함

* 예시 :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활동, 환경보존활동 등

2] 청소년활동사업 운영의 구분

○ 청소년활동시설은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입재정 및 사업비의 종류에 따라 ①고유업무, ②특수목적업무, ③기타업무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영역의 구분 ■

- ① **고유업무영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적 업무와 사업을 의미함
- *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및 사업비는 현재 지방이양된 상황임. 지자체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는 점과 함께 중앙정부의 국가정책과제로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임
- 고유업무영역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 한, 청소년활동진흥법령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7차, 2023~2027)의 추진방향과 세부내용을 따라야 함
- 청소년활동 실천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한 사항이 바로 청소년활동진흥정책이자 사업이며 청소년관련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을 진흥함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는 과업임

○ 고유업무의 영역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고유업무영역별 세부지원내용 예시 ■

세부과제	세부과제별 내용	근거
1-1. 청소년참여 지원사업	1-1-1. 청소년참여활동지원사업 :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경험하도록 참여위, 운영위, 동아리연합회 등의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참여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 건강한 리더십을 추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기본법 2조, 5조, 5-2조, 활동진흥법 4조,
1-2.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사업	1-2-1. 청소년수련활동지원사업 :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인증제, 신고제 등과 같은 사업	활동진흥법 9-2조, 35조,
1-3.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1-3-1. 청소년교류활동지원 : 도시와 농산어촌, 도시간, 지역간, 국가간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얻도록 지원하는 사업	활동진흥법 53조, 54조
1-4.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사업	1-4-1. 청소년문화활동지원 :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증진을 위해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문화사각지대 해소하고 축제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활동진흥법 2조, 60조 활동진흥법 63조
1-5. 청소년근로보호 및 지원사업	1-5-1. 청소년 근로보호 및 지원사업 :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부당처우해결 등 근로권익보호지원, 근로인식 개선사업	기본법 3조, 8조, 8-2조, 기본법 52-3
1-6. 청소년시설 지원사업	1-6-1. 청소년시설설치지원사업 :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설치 및 지원함은 물론 안전한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관리감독, 보험,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본법 18조 활동진흥법 18-2조, 18-3조, 18-4조
	1-6-2. 청소년시설운영지원사업 :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문화의집, 기타 청소년시설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시설개보수 등 청소년시설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활동진흥법 11조 ②④, 16조 ③, 32조 ③
	1-6-3. 예비청소년지도사 실습지원 :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에 따른 현장 실습지원역량 강화	-
1-7. 기타 법령근거 지원사업	1-7-1. 청소년정책 연간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시책사업 : 국가가 수립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정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사업계획수립지원	기본법 14조

② **특수목적업무영역**은 청소년육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영역이지만 고유업무 외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높여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영역을 의미함

- * (예시)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청(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 * 고유업무 외,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에 의해 국가정책과제로 발굴된 이슈에 대하여 따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음

○ 고유업무영역 외에는 관련법령의 위배된 바 없는 범위내에서 그 대상사업의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수요와 기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고유업무영역과 그 외의 균형적 확대, 발전을 의도하는 것임
- 다양한 사업방식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적극 참여토록 유도 관리

○ 특수목적사업은 법적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파생 정책지원,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문제대응책 등이 여기에 포함

○ 특수목적사업의 영역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특수업무영역에 포함되는 영역의 예시 ■

1. 국도비 지원사업	1-1. 매칭사업지 지원	1-1-1. 국·도·시 매칭지원사업 : 청소년동아리활동, 어울림마당,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정책수요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
2. 청소년 자기주도성장 지원사업	2-1. 국내외 자기도전지원사업	1-2-2. 국제 및 자기도전포상제지원사업 :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도전 목표를 성취하는 정책지원사업
	2-2. 청소년 진로지원활동	1-3-1. 청소년진로정보제공사업 : 청소년맞춤형 진로정보 제공지원사업
		1-3-2. 청소년진로체험활동 및 교육지원사업 : 청소년진로 및 직업탐색을 위한 활동 및 교육지원사업
	1-3-3. 청소년진로체험센터운영지원사업 : 청소년진로 지원을 위한 센터, 시설, 기관운영지원사업	

3.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3-1. 청소년지도사 교육훈련 및 복지지원사업	3-2-1. 5대법정의무교육지원사업 : 청소년시설의 국가 5대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여성가족부 의무지정교육 지원사업
		3-2-1. 청소년지도사 복지증진지원사업 : 청소년지도사자격 수당, 각종 복지포인트 등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3-2.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운영지원사업	3-3-1. 청소년육성전담기구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정책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독립적 지원을 하는 사업
		3-3-2.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지원사업 :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담기구나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지원하는 사업
	3-3. 학교연계활동 지원사업	3-4-1. 교육과정 연계지원사업 :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연계(고교학점제,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3-4-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사업 : 방과후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학습, 활동, 보호 등 종합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교육부의 늘봄을 지원하는 사업
	3-4. 지역사회 협력지원사업	3-5-1. 청소년단체운영지원 :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기량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활환경에서 적극적 보호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3-5-2. 청소년시설협회 지원 : 청소년시설의 친목도모 및 다양한 협력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활동다각화를 위한 정보교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설간 협의체 구성 및 지원
		3-5-3. 지역사회 자원연계협력지원사업 : 마을자원,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수요를 충족 하도록 연계하는 지원사업
	4. 기타 특수목적지원사업	4-1. 지자체의 특수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특수목적 사업으로 특성화지원사업, 마을속 청소년코디네이터, 청소년동행캠프(예:서울시), 청소년예술제(경기) 등 지자체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춘 사업

- ③ 기타업무영역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각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지만, 청소년부재시 시설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각종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여 기관운영의 안정성 추구는 물론 청소년대상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활동내용을 의미함
- 청소년시설은 본래 목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전용공간의 의미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쉼과 여가, 창의성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활동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소년은 학령기 학생이 대다수여서 일정시간동안 유휴공간으로 남는 상황이 발생함
- 청소년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양 강좌, 문화활동, 지역사회 소통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이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이 없는 시간대와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또는 각종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기관의 재정적 유익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대상의 각종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의미 있음
- 청소년시설의 활동지원의 목적사업(고유, 특수, 기타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시설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청소년활동시설의 추진사업영역(안) ■

핵심기능	사업영역	세부 사업범주 및 내용설명
고유사업 영역	청소년참여 지원	1. 청소년참여위원회지원사업 2.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사업 3. 청소년정책참여(참여예산제 등)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1. 청소년수련활동지원사업 2.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 3. 청소년교류활동지원사업 4. 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지원사업
	청소년진로 지원	1. 청소년근로지원사업 2. 청소년진로체험지원사업
	청소년 활동시설	1.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2.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3. 청소년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

핵심기능		사업영역	세부 사업범주 및 내용설명
특수목적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인력양성지원	1.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2. 청소년지도사 실습지원사업 3. 청소년지도사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활동지원 관리 및 연계	국도비 매칭지원사업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배치지도사 지원, 방과후아카데미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됨
		학교연계협력 지원	1. 학교내 청소년활동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 자발적,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2. 찾아가는 청소년활동지원 : 학교가 원할 때 각종 수련 활동, 문화체험,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지원 활동 등 필요한 활동체험을 청소년시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활동 지원하는 기능 3. 학교연계사업은 교육청,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 교육과정 연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성 등 이루어지도록 지원
		청소년활동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협력지원	지역내 청소년시설 단체 및 기관, 민간자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자원공급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관련자원을 발굴하고 청소년시설에 연계하여 원활한 청소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관리 통합운영
	지방자치 단체환경 수반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재정, 환경, 생태 및 주요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와 달라서 지역숙원사업, 환경특화사업, 정책지원사업 등을 차별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
	수익사업	평생교육 문화지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의 특성상 이용시간대가 정해진 관계로 학교이외의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음
수익 및 대관지원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자립 및 지원시설의 형태로 운영 하면서 청소년관련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교육 사업, 대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익금으로 청소년목적사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③ 청소년활동시설 공공성

- 청소년활동시설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공공복지적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통해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야 함
- 청소년시설의 공공성이 부여되는 중요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시행할 기구로서 청소년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청소년지도자의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기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거리 등 3요소가 필수적이며 청소년활동정책을 능동적으로 실시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별 청소년활동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나이·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공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 자체의 인지 향상과 지역밀착적인 시설 운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지방 청소년활동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고유업무영역, ②특수목적업무영역의 청소년활동사업중 수련거리(프로그램)를 운영할 때에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기획·실행 및 평가 등의 과정으로 실행·실천(기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1. 의의

1] 추진배경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6차 기본계획의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이어 청소년활동 역량지표 개선 및 커리큘럼 개발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

1-2.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 ◆ 신산업, 환경, 경제 교육 등 미래세대로서 필요한 소양 함양 지원
- ◆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진로 교육 및 분야별 진로 활동 확대

1] 미래역량 제고 활동 확대

□ 청소년활동 역량지표 개선 및 커리큘럼 개발(여가부)

- 교육과정 개정 등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활동 역량지표를 개편(디지털 분야 추가 등)하고, 지표를 보급하여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대 청소년활동 역량지표(18) :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역량
 - *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자기관리, 자상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 청소년 성장단계별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 등 청소년 활동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 9~12세(초기), 13~15세(중초기), 16~18세(중후기), 19~24세(후기)

* 6차 기본계획('18~'22)에서도 청소년이 활동, 비형식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기회가 부족함을 언급하며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을 제기,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선정

-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의 목표를 핵심역량으로 설정하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변화 확인 가능, 이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을 평가 및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활동 기획 가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선정·발표('18.12.28.)하고,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설계 방법 등을 안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현장에서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정착을 지원중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량기반청소년활동 가이드북'은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운영 사례,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도구 온라인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짐

2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 역량의 정의
 - 지식이나 기술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심리사회적 자원(기술이나 태도 등)을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는 능력(OECD,2005)'이며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을 가지고 있음

■ 역량의 속성 ■

총체성	지식, 기술, 동기, 태도 등의 유기적 연계
수행성	지식, 기술, 전략 등을 새로운 상황에 맞는 형태로 재조정하는 능력
맥락성	맥락적이고 즉각적인 성격

- 핵심역량의 기준
 - 어떤 역량이 중요하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에 초점을 두고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핵심역량이라 함
 - 첫째, 삶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함
 - 둘째,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과 올바르게 기능하는 사회를 이끄는 데 공헌하여야 함
 - 셋째,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함(Rhchen & Salgnik, 2003)

-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실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의 정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활동의 특수성 3가지(광범위성, 다양성, 여러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성)를 고려하여 정의 및 선정
- ① 비판적 사고, ② 의사소통, ③ 협업, ④ 창의력, ⑤ 사회정서, ⑥ 진로개발, ⑦ 디지털 문해력 등 총 7가지 역량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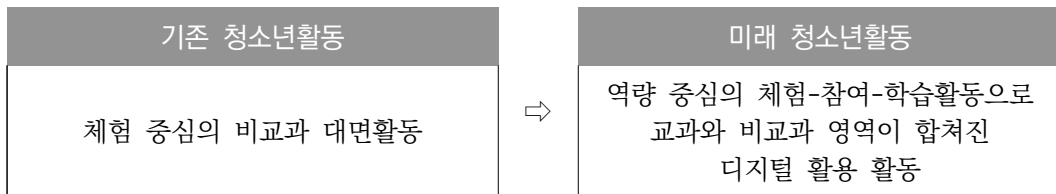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역량별 정의 ■

구분	정의	
비판적 사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주제와 원칙에 따라 배움으로 연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생각과 질문, 아이디어와 해결방법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	
협업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여러 명의 재능, 전문지식을 합치는 능력	
창의력	혁신하고 발명하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	
사회정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	
진로개발	평생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여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실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도구활용	필요와 목적에 맞게 디지털 도구를 선택하여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조직 및 창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디지털 정보·데이터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비교·평가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안전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선정 배경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3~'27)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앞으로 기본계획의 주기에 따라 재검토 예정(교육부 교육과정 개정과도 연계 계획)
- 4가지 역량(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 2015년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제시된 역량으로, 국제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종합적으로 수용 및 활용 가능하도록 선정
- 2가지 역량(사회정서, 진로개발) :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디지털 문해력 : 2022년에 개발된 역량으로 디지털·자연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삶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보편적 수요를 맞추기 위한 미래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미래 청소년활동의 특성 ▮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사업의 실천기술 추진절차는 PDS⁸⁾ 기반 ① 설계 → 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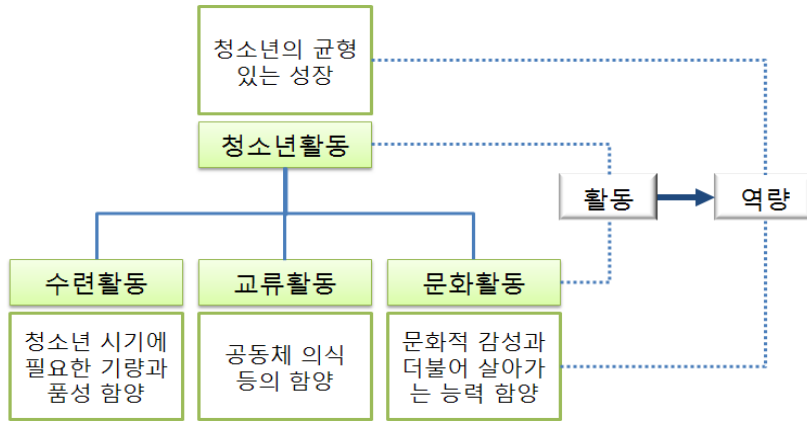
- ③ 평가의 3단계로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① 설계 : 프로그램 개요서 작성, 단위활동 프로그램 활동지도안 작성 등
- ② 운영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과 교육과정 연계, 프로젝트기반 청소년활동 확대, 진로 및 디지털 프로그램 모형 활용, 우수사례 참조 등
- ③ 평가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의 세부방법과 절차 등

8) PLAN(설계)- DO(운영) - SEE(평가)

2.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설계

①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의미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청소년의 역량 증진과 발휘로 설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즉,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활동을 설계·진행하는 것을 의미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을 설계할 경우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목표가 명확해지고, 효과적인 운영 및 평가 가능
- 설계대상의 역량기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인증신청 기준에 맞춰 실시하되 그 대상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써,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이동형) 활동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요구 및 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여러 유형에 초점을 두어 운영할 수도 있음
 - (1유형) 프로그램 모델 중심
 - (2유형) 사람중심
- 또한 이 안내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생활권 시설을 우선 적용하며, 대상 사업도 프로그램(수련거리) 운영에서 우선 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권고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확대함
- 다만, 여가부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등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수탁사업) 등에서 수련거리 또는 프로그램분야의 공모 및 우수 선정에 대해서는 위 표준모형의 운영 적용 대상에 우선 추천 예정(25년부터~)
 - ※ 개별 시행계획시 위 내용 포함, 확정 통보 예정



■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

②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설계의 원리와 방향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목적 및 목표는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명시함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활동 설계 원리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

활동의 목적 및 목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의 역할이나 기능, 능력 발휘
설계의 방향	활동과 현실과제의 연계
설계의 원리	과정 청소년이 직면하는 현실과제 중심의 연계·통합
	방법 청소년 주도적 활동
	평가 과정 평가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설계 방향 및 원리 ■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은 주제설정, 목적·목표 설정, 교육과정 연계 3요소를 통해 설계.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주제는 청소년통계, 빅카인즈 등 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현실과제를 검토하여 설정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주제를 설정한 이후, ① 활동의 내용과 방법, ②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활동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목적과 목표를 설정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목적과 목표는 7가지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사소통, 협업, 비판적사고,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 디지털 문해력) 중 선택하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의 가능

설계 절차	고려사항	참고 (자료 및 사이트)
1. 주제 설정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현실과제 검토	청소년통계,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등
	참여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등
2. 목적·목표 설정	활동의 내용 및 방법	목적 및 목표 설정 예시(p.8)
	실생활 속에서 어떤 기능,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 정도	
3. 교육과정 연계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교급별 교과목 선택	에듀넷티클리어 (https://www.edunet.net)
	교급별 교과목 성취기준 검색	학생평가지원포털 (https://stas.moe.go.kr)

-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현실과제를 토대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참여 대상과 주제 및 설계방향 설정
- 주제 및 설계방향을 토대로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즉 실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

- 청소년활동 설계의 원리는 과정 - 방법 - 평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활동의 과정은 청소년이 직면하는 현실과제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주도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함
 - 활동 평가는 청소년, 지도자로 구분하여 설계
 - 청소년은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활동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평가
 - 지도자는 활동과정에서의 청소년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성취기준에 달성했는지를 중심으로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 전의 역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활동을 평가

3]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설계의 예시

- 다음의 개요서 양식은 목적 및 목표, 활동 과정, 방법, 평가 등을 고려하며 역량기반 활동을 설계할 수 있음

① 프로그램명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디자인 프로젝트 'D(ream)-DAY(디데이)'			
② 일정(기간/횟수)	5월 ~ 11월 / 27회	③ 대상	14세, 16세	
④ 인원	206명 (연 1,853명)	⑤ 지도자 수	4명	
⑥ 주 활동장소	시립마포청소년센터, 강하중학교, 동성중학교, 형석중학교, 온라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중복선택가능)
⑦ 운영 형태	<input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팀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중복선택가능)			
⑧ 활동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숙박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⑨ 목적 및 목표	○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 진로정보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진로 선택과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역량 설정	⑩-1. 핵심역량 (필수)	<input type="checkbox"/> 협업	<input type="checkbox"/> 창의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⑩-2. 자율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사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로개발	<input type="checkbox"/> 사회정서
⑪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중학교	1~3학년	진로와 직업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 탐색
	성취기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9진01-01],[9진01-02]		
성취기준	○ 진로의사 결정의 과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 등을 존중할 수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다.			
⑫ 회기/차수별 요약 ※ 세부내용은 '활동지도안'에 작성	⑬ 회기/차수 (소요시간)	⑭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⑮ 중점(특이) 사항
	0.T(120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줌 사용법 교육		현지 협력기관 지원
	1회기(120분)	〈감정 알려 DREAM〉 미래 진로역량 이해 및 행동유형 진단을 통한 강점 탐색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설계를 구체화
	2회기(120분)	〈창직 알려 DREAM〉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 탐색 및 관심사와 강점을 활용한 창직		진로와 직업을 구분
⑯ 결과물	○ (개인) 스스로 활동을 통해 달성하거나 얻은 점 등 ○ (팀) 협업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올바른 진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경험) ○ (멘토) 멘토링 활동을 통한 청소년과의 동반성장(멘토링 경험, 학과박람회(체험) 운영, 활동영상 제작)			
⑰ 평가	○ 사전·사후 효과성 설문 및 만족도 설문조사 ○ 진로선언문, 자기진로성장노트, 인터뷰 영상, 활동자료(패들렛 등)			
⑱ 기대효과	○ 진로정보소외지역 대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으로 진로활동에 대한 도농 간 격차 해소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진로 결정 능력 함양 ○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⑲ 인증/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증대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작성 방법』

- ①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이름
- ② 일정(기간 / 횟수) : 프로그램 총 운영기간 / 총 횟수
* 숙박형일 경우, ○박○일 형태로 표기
- ③ 대상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만 나이), 학생일 경우 학년 작성
- ④ 인원 : 참여 인원 수 표기
- ⑤ 지도자 수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의 최소 인원 및 적정 인원 표기
- 단위 프로그램별 지도자 수의 총합을 표기
- ⑥ 주 활동장소 : 프로그램 전반이 진행되는 장소(예, ○○원 회의실 등) 실내, 실외, 야외 등 선택 표기
- ⑦ 운영 형태 : 강의, 체험, 토론, 팀(모둠) 활동, 개별 활동 중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체크한 후 () 안에 운영 형태(방식) 작성
- ⑧ 활동유형(인증신청 기준에 맞춤)
-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써,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이동형) 활동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⑨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명시
- ⑩ 역량설정 : 청소년이 성취하거나 발휘하게 될 수 있는 핵심역량
- ⑩-1. (핵심역량)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7가지* 중 1~2가지 역량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구 분	정의 ⁹⁾	
① 비판적사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주제와 원칙에 따라 배움으로 연결하는 능력	
② 의사소통	생각과 질문, 아이디어와 해결방법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	
③ 협업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여러 명의 재능, 전문지식을 합치는 능력	
④ 창의력	혁신하고 발명하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	
⑤ 사회정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	
⑥ 진로개발	평생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유연하게 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여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실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⑦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도구 활용	필요와 목적에 맞게 디지털 도구를 선택하여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의 조직 및 창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창의적으로 구상하여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디지털 정보·데이터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비교·평가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안전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⑩-2. (자율역량)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역량을 목표로 기술

※ 단, 효과성 측정도구가 있는 역량으로 설정

⑪ 교육과정 연계 : 프로그램과 연관된 교육과정 성취기준 코드 및 성취기준 작성

* 교육과정 성취기준 코드 및 성취기준 찾는 방법

<p>① 학생평가 지원 포털 접속 (https://stas.moe.go.kr/cmnm/main)</p>	<p>② 참여 청소년의 연령을 참고하여 교급 선택 ⇒ '성취기준(평가기준) 검색' 클릭</p>
<p>③ '교육과정 시기'는 2015개정 선택 ⇒ '학교급', '학년(군)', '교과', '영역(단원) 검색</p>	<p>④ 검색결과에 따른 성취기준 코드 및 성취 기준 작성</p>

⑫ 회기/차시별 요약 :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활동 내용 및 중점(특이) 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히 작성 회기의 경우 1년에 몇 번 등을 표기할 때 사용하고, 차시는 기본형에서 숙박형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에서 사용을 권장. 횟수가 늘어날 경우 줄긋기(셀 나누기)를 통해 회기/차시 추가 가능

9) ① 비판적 사고, ② 의사소통, ③ 협업, ④ 창의력

World Economic Forum(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Switzerland; <http://www.p21.org/our-work/resources/for-policymakers/1007>

⑤ 사회정서역량

Zins et al.(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⑥ 진로개발역량

성은모, 최창욱(2014). 청소년역량 지수 개발 연구(13-R50. No. 11-1383000-000486-01).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효신(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⑬ 회기/차시 (소요시간) : 회기/차시와 소요시간을 표기 (예, ○회기 (○)분, ○차시 (○)분)
- ⑭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 회기/차시별 프로그램명을 표기하고, 주요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술
- ⑮ 중점(특이) 사항 : 프로그램별 핵심 사항과 필요한 전달 사항 기술
- ⑯ 결과물 :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개인/팀 결과물 또는 내용 기술
- ⑰ 평가 :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방법 기술(예, 만족도 설문조사, 사전·사후 효과성 조사*)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온라인 시스템(<http://survey.kywa.or.kr/>) 활용 가능
- ⑱ 기대효과 :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⑲ 인증/신고여부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단위활동 프로그램 활동지도(안)

단위활동 프로그램명	마을공동체 엮이기 (⑩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요서(안) 주요 프로그램 내용의 차시별 제목)		
㉑ 일정(시간)	1회기	대상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인원	20명	지도자 수	최소 2명, 적정 2명
활동장소	평촌청소년문화의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중복선택 가능)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중복선택 가능)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관계형성 역량과 사회정서역량을 함양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다.		
④ 역량 목표설정	1. 핵심역량 (필수)	<input type="checkbox"/> 협업 <input type="checkbox"/> 창의력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사고 <input type="checkbox"/> 진로개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정서
	2. 자율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성적사고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계형성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시민성	
교과영역연계	○ 중학교 : [사회·문화] - 사회화, 사회집단 ○ 고등학교 : [통합사회] - 삶의 이해와 환경		
㉒ 안전 및 유의사항	○ 활동 장소에서 뛰어나지 않는다. ○ 토론 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㉓ 준비물	노트북, 빔프로젝트, PPT, 매직(12색), 전지, 필기도구 등		
㉔ 활동단계	활동내용	시간	중점(특이) 사항
도입	○ 출결 확인 및 사전 설문지 작성(위원장, 담당자) ○ 사전 설문지(효과성 조사 포함) 진행 ○ 실내·외 안전교육 진행	10분	활동 안내 및 안전교육
전개	○ 마을공동체와 소통 전문교육 - 마을공동체의 정의 및 이해 -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효과 알기 - 분과별 토의 및 발표 토의 1. 내가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특징 찾기 토의 2. 내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란? 토의 3.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 마을 그리기 ○ 경로당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계획 수립 - 마을 경로당의 현 상황 점검 -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방법 고민 - 경로당의 다양한 변화사례 찾기 - 분과별 특색을 살린 경로당 상상하기	60분	프로그램 목적 및 전반적인 활동 내용 숙지, 연간 활동에 대한 기대 강화
정리	○ 팀별 평가회의 및 활동소감 공유 ○ 활동일지 및 회의록 작성 ○ 2회기 활동 준비(평촌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연락 등) ○ 활동홍보(페이스북, 블로그 등 게시)(홍보마케팅분과)	30분	활동내용 정리, 활동홍보
㉕ 결과물	(팀) 2회기 활동 준비 계획, 활동 홍보물		
㉖ 평가	팀별 평가회의 및 활동 소감 등을 통해 활동 평가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단위활동 프로그램 활동지도안 작성 방법: 프로그램 개요서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

- ㉔ 일정(시간)은 숙박형의 경우 일차와 시간을 함께 기재(예, 1일차 오후(130분))로 작성, 기본형과 이동형의 경우 일차 없이 시간(예, 130분)로 작성
- ㉕ 단위활동 프로그램에서의 역량 목표설정은 향상시키고 싶은 가장 핵심적 역량만 표기 ; 개요서에서 종합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단위활동 프로그램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역량만 표기
- ㉖ 안전 및 유의사항 : 전달 내용을 문구로 작성하거나 유의사항에 대한 상황 표기도 가능
- ㉗ 준비물은 워크북에서부터 필요 장비·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작성
- ㉘ 활동단계인 도입, 전개, 마무리는 기존 프로그램 적용 양식에 준하여 작성
- ㉙ 결과물 :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개인/팀 결과물 또는 내용 기술
- ㉚ 평가 :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방법 기술(예, 활동 소감 공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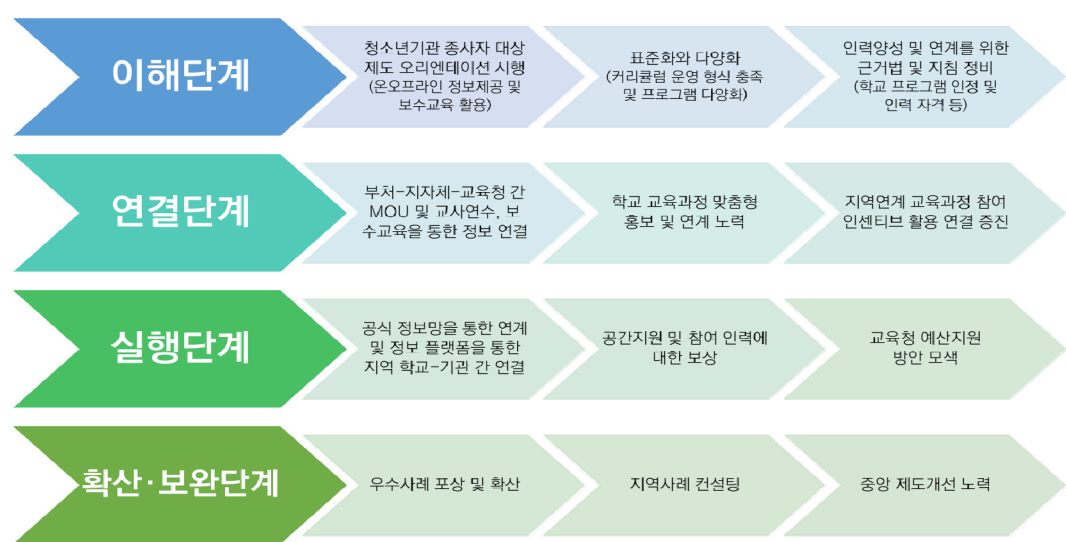
3.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운영

1] 역량기반 청소년활동과 교육과정 연계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참여 대상, 주제 및 설계방향, 목적 및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성취기준 선정. 성취기준을 정하기 전, 어떤 교과과정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 (예시.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하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활동은 사회과목, 물건에 가격을 매기는 등의 활동은 수학과목과 연계 가능
 - 연령, 교과 선정 후 '학생평가 지원포털'(https://stas.moe.go.kr)에서 활동에 맞는 성취코드 및 기준 찾기
 - 성취코드* 및 기준에 의한 작성방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량기반청소년 활동 가이드북' 참조
- 학교 교과과정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연계 증진을 위한 프레임¹⁰⁾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이 프레임은 ①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 상호이해를 위한 「이해단계」, ②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와 청소년기관간 「연결단계」, ③ 학교의 교과과정과 청소년기관의 상호교류 및 「실행단계」, ④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활동 연계의 「확산·보완단계」로 구성
 - ①이해단계는 학교-청소년기관 간 상호이해를 위한 과정으로 청소년기관종사자 대상 제도 오리엔테이션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보수교육 활용), 표준화와

10) 학교 교과과정 연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23.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다양화(커리큘럼 운영Chapter 4. 제언: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활동의 연계 방안형식 충족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인정 및 연계를 위한 근거법 및 지침 정비(학교 프로그램 인정 및 인력 자격 등) 등으로 구성
- ②연결단계는 상호이해를 거쳐 서로 필요한 기관 간 연결되어 상호 기획하는 단계로 부처-지자체-교육청 간 MOU 및 교사연수, 보수교육을 통한 정보 연결, 학교 교육과정 맞춤형 홍보 및 연계 노력, 지역연계교육과정 참여 인센티브 활용 연결 증진 등으로 구성
 - ③실행단계는 학교 교과과정프로그램과 청소년활동 간 연계가 이루어져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공식 정보망을 통한 연계 및 정보 플랫폼을 통한 지역 내 학교-기관 간 연결, 공간지원 및 참여 인력에 대한 보상, 교육청 예산 지원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
 - ④확산·보완단계는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우수사례 포상 및 확산, 지역사례 컨설팅, 중앙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구성



■ 학교 교과과정 연계 청소년활동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전체) ■

〈 청소년기본법 〉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

-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활동 확대

- 청소년이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필요(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하고 역량 중심 교육혁신 등 교육패러다임 변화(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 필요
- 청소년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활동 패러다임 전환 필요

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② 자기주도적 활동프로그램 확대

- 프로젝트 기반 학습활동 강화(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PBL방식 청소년활동 모델로 개발 보급
 - * Project Based Learning(PBL) : 제시된 문제를 학습자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주도형 학습방식'으로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협력, 의사소통 능력 등 향상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PBL방식 활동 모델 등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경남PBL) 중학교 도덕·사회과목 내용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 청소년활동모델 개발 운영('22년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진해청소년수련관, 함안군청소년수련관 협업)

- 청소년 주도성을 담보한 역량 중심 프로젝트 활동(PBL)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이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따로 운영모형이 없는 경우 PBL 모델은 ‘청소년 행위주체성(youth agency)’과 ‘청소년활동 7대 핵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설계한 PBL 방식 청소년활동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원은 매년 새로운 PBL 방식 청소년활동 모델(KYWA형 PBL 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보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 [주요 지원 내용] 지도자 교육, KYWA형 PBL 모델 운영 매뉴얼 제공, 컨설팅, 간담회, 효과유의성 측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③ 진로 및 디지털 프로그램 모형 활용

-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활동 부문 및 청소년사업 실천의 ‘진로’ 및 ‘디지털’에 중점을 둬

1-1. 청소년디지털역량 활동 강화

①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

-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여가부, 과기정통부)
 - 청소년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디지털 청소년활동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활동 콘텐츠 개발 제공

1-2. 청소년미래역량제고

②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 진로체험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여가부, 교육부, 지자체)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학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 국내외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프로그램 모형(안)¹¹⁾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연구('24.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조

1)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 모형

-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진로 개발 능력을 함양
-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 목표 : 평생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
- 프로그램의 영역과 목표 및 대상¹²⁾

영역	목표	초급	중급	고급
진로 이해	나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함			
진로 탐색	다양한 진로 체험과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함			
진로 계획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함			

- 진로 이해 : 나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단계(초급)
- 진로 탐색 : 다양한 진로 체험과 전문가와의 소통의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중급)
- 진로 계획 :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단계(고급)
- 영역별 활동 내용
 - 진로 이해 : 자아 인식, 직업의 세계 및 환경 이해
 - 진로 탐색 : 진로 체험, 진로 상담
 - 진로 계획 : 진로 준비 및 기획, 진로 실행 및 관리
- 활동 방법 및 전략
 - 학교 안과 밖의 연계 : 학교의 교육과정 및 인적·물적 자원 간의 협력을 통한 활동 운영
 - 자기주도적 맞춤형 진로프로젝트 : 청소년의 흥미와 목표에 따라 기획 및 운영
 - 진로 체험 중심 활동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 체험 : 대학, 소상공인, 기관 및 기업, 박물관 등

12) 진로 영역의 내용은 모든 대상에 필요한 내용임. 다만, 대상에 따라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영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진로 이해 영역은 진로 영역의 '초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진로 탐색 영역은 진로 영역의 '중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진로 계획 영역은 진로 영역의 '고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함.

- 진로 특강 :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학교 생활 및 진로 특강
- 진로 캠프 :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 관련 기관 등
- 다양한 활동 방식[대면활동, 비대면활동, 혼합활동(대면, 비대면)]
- 평가
 - 주체 : 운영자, 전문가, 청소년 등
 - 대상 : 청소년시설 및 운영기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등
 - 방법 및 내용 : 양적/질적 만족도 및 효과성 등

영역	내용 및 요소		
목적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진로 개발 능력을 함양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목표	평생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 및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		
영역 및 대상	영역	목표	초급 중급 고급
	진로 이해	나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함	
	진로 탐색	다양한 진로 체험과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함	
	진로 계획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함	
영역 별 대상	진로 이해	진로 탐색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인식 • 직업의 세계 및 환경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체험 • 진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준비 및 기획 • 진로 실행 및 관리
방법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연계를 통한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 - 학교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는 활동 - 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연계·협력 사업 -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적 맞춤형 진로 프로젝트 • 진로 체험 중심 활동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 체험(대학, 소상공인, 기관 및 기업, 박물관 등) • 진로 특강(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학교 생활 및 진로 특강) • 진로 캠프(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 관련 기관 등) • 다양한 활동 방식[대면활동, 비대면활동, 혼합활동(대면, 비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운영 기관의 운영자, 전문가, 청소년 등 • 대상: 청소년시설 및 운영기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등 • 방법 및 내용: 양적/질적 만족도 및 효과성 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운영 기관의 운영자, 전문가, 청소년 등 • 대상: 청소년시설 및 운영기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등 • 방법 및 내용: 양적/질적 만족도 및 효과성 등 		

■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 모형 ■

2) 청소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모형

- 목적 :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을 함양
-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 목표 :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소통·협력하며 능동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 프로그램의 영역과 목표 및 대상¹³⁾

영역	목표	초급	중급	고급
디지털 도구 활용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정보 조직 및 창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 재조직하거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상하여 새로운 정보 및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안전	디지털 환경에서 나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디지털 도구 활용 :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정보 조직 및 창출 :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 재조직하거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상하여 새로운 정보 및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13) 디지털 영역의 내용은 모든 대상에 필요한 내용임. 다만, 대상에 따라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영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안전 영역은 초급, 중급, 고급 영역에서 골고루 다루어야 할 영역임. 디지털 도구 활용 영역은 디지털 영역의 '초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영역은 디지털 영역의 '중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정보 조직 및 창출 영역은 디지털 영역의 '고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안전 : 디지털 환경에서 나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영역별 활동 내용
 - 디지털 도구 활용 : 디지털 도구 이해, 디지털 도구의 선택과 사용
 -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 디지털 정보 분석, 디지털 정보 평가
 - 정보 조직 및 창출 : 디지털 정보 생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디지털 안전 :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윤리, 저작물 보호
- 활동 방법 및 전략
 - 학교 안과 밖의 연계 : 학교의 교육과정 및 인적·물적 자원 간의 협력을 통한 활동 운영
 - 자기주도적 맞춤형 디지털 프로젝트 : 청소년의 흥미와 목표에 따라 기획 및 운영
 - 디지털 체험 중심 활동
 - 진로와 연계한 디지털 활동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활동(디지털 및 미디어 교육센터 등)
 - 다양한 활동 방식[대면활동, 비대면활동, 혼합활동(대면, 비대면)]
- 평가
 - 주체 : 운영자, 전문가, 청소년 등
 - 대상 : 청소년시설 및 운영기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등
 - 방법 및 내용 : 양적/질적 만족도 및 효과성 등

영역	내용 및 요소			
목적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을 함양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목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소통·협력하며 능동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영역 및 대상	영역	목표	초급 중급 고급	
	디지털 도구 활용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정보 조직 및 창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 재조직하거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상하여 새로운 정보 및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안전	디지털 환경에서 나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영역 별 대상	디지털 도구 활용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정보 조직 및 창출	디지털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도구 이해 디지털 도구의 선택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정보 분석 디지털 정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정보 생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윤리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연계를 통한 디지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 - 학교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는 활동 - 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센터 간 연계·협력 사업 -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적 맞춤형 디지털 프로젝트 디지털 체험 중심 활동 진로와 연계한 디지털 활동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활동(디지털 및 미디어 교육센터 등) 다양한 활동 방식[대면활동, 비대면활동, 혼합활동(대면, 비대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운영 기관의 운영자, 전문가, 청소년 등 대상: 청소년시설 및 운영기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등 방법 및 내용: 양적/질적 만족도 및 효과성 등 			

■ 청소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모형 ■

4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운영 사례

‘평촌동 사랑방 1호점’ 청소년과 어른신이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강점 및 특징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잘 반영하여 활동의 목적 및 목표 설정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활용을 통해 역량기반 활동 평가

□ 활동의 주요 내용 및 목적

- 청소년과 어른신이 협업하여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촌동 사랑방’조성과‘마을 이야기 책자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통 분위기를 확산하는 청소년주도형 기획·실천 활동

목 적	하 위 목 표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의 중요성 인식	1.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 사회정서역량) 2. 청소년과 어른신이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자율역량 측정 : 관계형성 역량 中 세부역량 :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자기개방성)
지역사회 관심과 소통분위기 확산	1.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자율역량 측정 : 감성적 사고력) 2. 청소년과 어른신이 협업하여 마을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홍보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 협업능력)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1. 사랑방 전시회와 책자발간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다.(자율역량 측정 : 공동체시민성 역량) 2.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실천 활동을 기반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 활동 개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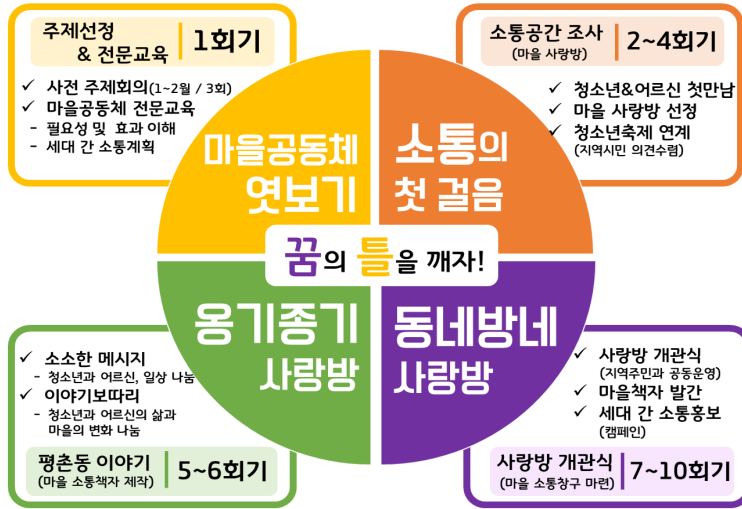
• 대상연령(학년) : 14~19세(중 1학년 ~ 고 3학년)				
• 기간/ 횟수 : 4월~11월/ 10회기		• 주요장소 : 평촌동 경로당, 평촌문화회집		
• 주요자료(준비물) : 노트북, 빔프로젝트, 카메라, 회의록, 매직, 홍보지 등				
• 운영형태(방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모둠) 활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동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숙박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통해 세대 간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다. ○ 사회정서 역량을 증진하여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역량 설정	핵심역량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업능력	<input type="checkbox"/> 창의력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능력
	자율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 사고력	<input type="checkbox"/> 진로개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정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성적 사고력 ¹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계형성 역량 ¹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시민성 ¹⁶⁾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요약	회기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중점(특이) 사항
	주제논의 및 선정 (3회)	▶ 지역사회 실천활동 기획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 및 문제점 인식 ○ 주요시정계획 검토 등 문제 : 주민들 간 관심 부족으로 인한 소통단절 해결 : 세대 간 소통 공간마련 및 활동 기획		※ 청소년 자체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문제점 인식 및 분석 ○ 기획 및 토론활동
	1회기 (180분)	▶ 마을공동체 엿보기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의 필요성 및 효과 이해 ○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중요성 이해 ○ 경로당을 활용한 세대 간 소통계획 수립 		※ 청소년 자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목적 이해 및 동기부여 ○ 전문강의 및 토론
	2회기 (240분)	▶ 소통의 첫걸음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연계 ○ 어르신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소통방법 조사 ○ 세대 간 소통장소 조사 및 마을 사랑방 선정 		※ 청소년&어르신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실태조사 및 어르신 욕구파악 ○ 마을 사랑방 선정
	3회기 (180분)	▶ 소통의 첫걸음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연간활동 안내, 서로 소개 ○ 청소년이 준비한 소통활동(관계형성) ○ 소통의 중심인 '사랑방'의 의미에 대해 논의 - 소통활동 기획 및 사랑방 공간디자인 등 		※ 청소년&어르신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목적이해 ○ 동기부여 및 소통 ○ 세대 간 라포형성
4회기 (240분)	▶ 소통의 첫걸음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청소년축제 연계 ○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소통방법 조사 ○ 마을 사랑방 상상활동 및 의견수렴 		※ 청소년&마을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의견수렴 ○ 축제 부스운영 	

	5회기 (180분)	▶ 용기종기 사랑방 I ○ 청소년, 어르신의 일상을 나누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공유하며 가깝게 소통하는 활동 ※ 작품은 사랑방에 전시(캐리커처 등)	※ 청소년&어르신연합 ○ 소통 및 체험활동 ○ 책자 제작준비
	6회기 (180분)	▶ 용기종기 사랑방 II ○ 청소년, 어르신의 삶의 과정과 마을의 변화과정을 공유하는 세대 간 소통활동 ※ 서로의 이야기는 정리하여 책자에 기록	※ 청소년&어르신연합 ○ 소통 및 공유활동 ○ 책자 제작준비
	7회기 (180분)	▶ 동네방네 사랑방 I ○ 마을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방 공간 조성 및 소통창구 마련 - 목공예 등을 활용한 가구 제작활동	※ 청소년&어르신연합 ○ 사랑방 공간조성 ○ 소통 및 공예체험
	8회기 (180분)	▶ 동네방네 사랑방 II ○ 마을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소통 창구 마련 마무리(목공, 홈패션 등) ○ 사랑방 개관식 및 책자 발간회 준비	※ 청소년&어르신연합 ○ 사랑방 공간조성 ○ 소통 및 공예체험
	9회기 (240분)	▶ 동네방네 사랑방 III ○ 평촌동 사랑방 홍보캠페인 - 사랑방의 장소와 의미 홍보 ○ 향후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활동 추천	※ 청소년&마을연계 ○ 시민들의 의견수렴 ○ 축제 부스운영
	10회기 (180분)	▶ 동네방네 사랑방 IV ○ 사랑방 개관식 및 책자 발간회 ○ 사랑방 전시회를 통한 소통공간 홍보 및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 홍보	※ 청소년&어르신&마을연계 ○ 활동 최종평가 ○ 활동결과물 공유
※ 사진촬영 : 안양예술고등학교 사진영상전공 연계 / 마을책자 기획 : 상시 진행			
결과물	(개인) 마을공동체와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어르신과 소통(인터뷰 등) 후 '평촌동 사랑방 이야기' 책자 제작 및 발간 (팀)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고 나아가 지역 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촌동 사랑방 마련 및 전시회 진행		
기대효과	○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인식 및 실천활동을 통해 자기주도력 함양 ○ 평촌동 사랑방 마련 및 전시회 등을 통한 청소년의 성취감 및 만족도 제고 ○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소통에 대한 관심 증진 및 화합의 분위기 확산		
인증/신고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증대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신고대상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14) 감성적 사고력이란,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 활동 세부내용

○ 4가지 활동(마을공동체 엿보기, 소통의 첫걸음, 옹기종기 사랑방, 동네방네 사랑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구분된 활동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은 전문교육으로 시작하여 전시회로 마무리가 되며,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월별 추진 흐름 및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업 내용	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전 주제회의 및 선정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	▶									
연차	마을공동체 엿보기 -전문교육-		▶								
	소통의 첫 걸음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			▶	▶						
	옹기종기 사랑방 -평촌동 이야기-					▶	▶				
	동네방네 사랑방 -사랑방 개관식 및 전시회 등-							▶	▶	▶	▶
지출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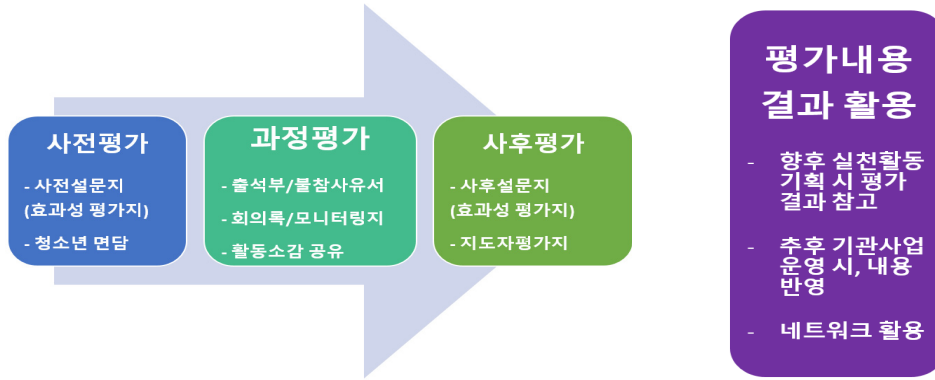
15) 관계형성역량이란, 타인의 감정·의도를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16) 공동체시민성이란, 참여와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는 주체로서의 시민적 덕성

□ 활동 평가 체계 및 내용

○ 평가 체계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적 절차에 따른 사전-과정-사후 평가체계 운영



○ 평가 내용

-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핵심역량, 자율역량 변화도 파악(효과성 검증)
-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정도 파악 및 향후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천 활동 기획에 반영

○ 평가대상(청소년)의 요구도 및 만족도 분석

○ 프로그램 지속 및 개선, 발전 및 연계사업의 기획·개발 활용

□ 평가 세부내용

○ 과정별(사전-과정-사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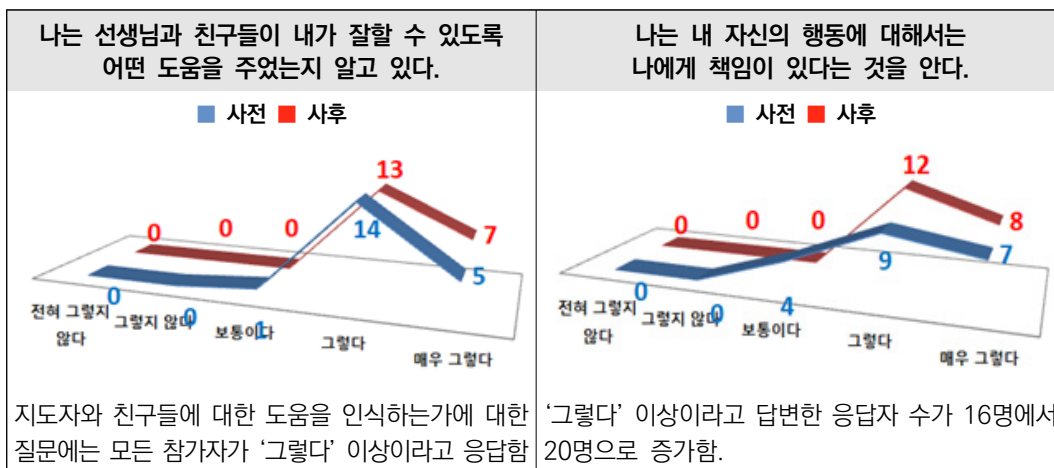
구분	대상	평가내용	평가도구	평가방법	시 기
사전	청소년	핵심역량, 자율역량	사전 설문지	청소년 수기 작성	3월
과정	청소년	청소년의 열의(참여도)	출석부	지도자 조사	4~11월
		활동 수행능력	활동일지	청소년 수기 작성	
		청소년 간 소통능력	분과 회의록	지도자 조사	
	임원진 회의록		임원진(청소년) 회의		
지도자	활동 구조 평가	지도자 평가서 및 활동 모니터링	회기별 활동 종료 후, 지도자 작성, 평가회의		
사후	청소년	만족도 조사	구조, 만족도조사지	전체 활동 종료 후, 청소년 수기 작성	11월
		핵심역량, 자율역량	활동 보고서		
	지도자	활동 내용 전체 평가	지도자 평가 확인서	전체 활동 종료 후, 지도자 수기 작성	

○ 목표별 자율역량 평가

목 표	자율역량	평가방법
청소년과 어른이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을 이룰 수 있다.	1. 관계형성 역량 中 세부역량 :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등	사전-사후 효과성 설문지 측정 · 사전 효과성 설문 결과로 참가 청소년들의 현 역량 수준 파악 · 사후 효과성 설문 결과로 프로그램 전-후 변화도 파악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감성적 사고력	
사랑방 전시회와 책자발간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다.	3. 공동체시민성 역량	

○ 역량평가 결과(*참고)

① 사회정서역량 변화



- ▶ 참가 청소년들의 사전-사후 사회정서 역량 변화도 측정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세대를 뛰어 넘은 소통

▶ 10회기 (7/27, 캐리커처 전달) 활동내용 소감 中

○ 김봄이 : 사랑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자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른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고,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멋진 시가 완성되어 뿌듯했다.

- ▶ 꿈틀과 어른신이 서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마을 책자에 청소년이 직접 지은 시, 그림으로 담아내어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이 되었다고 판단됨. “청소년과 어른신이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4. 청소년활동 역량 평가

① 절차

- 평가 계획 수립
 - 지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중 큰 비중 차지
 - 핵심역량과 교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계획 수립
- 지도자의 역할
 - 활동기간 동안 평가해야 할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준(예: 루브릭¹⁷⁾ 평가 문항 등) 작성 및 평가
 -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피드백하여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력
- 최종평가
 -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자가 작성한 관찰 기록과 청소년이 작성한 성찰일지 등을 종합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등을 활용하여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전후의 핵심역량 변화를 파악

②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실시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배양을 목적 및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과는 달리 청소년활동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17) 루브릭(Rubric) : 교육에서 루브릭은 "수행 과제에서 교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와 학습자의 수행 수준을 기술한 피드백"으로 정의, 지도자는 청소년활동에서 수행하려는 과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정하여 루브릭 작성 가능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조사는 자기보고식의 검사로,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역량기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청소년이 측정문항에 응답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번호를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통계적 측면에서 측정도구의 기준개발이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청소년 개인·집단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절대적 높고 낮음을 측정하고 상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청소년 개인·집단의 청소년활동 참여 사전-사후 비교와 같은 상대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는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

③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되어있는 문항을 기초로 하되, 문항의 내용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측정문항이 각 역량별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내용타당도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의 문항을 체계화하였다
- 2019년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적용 데이터를 토대로 양호도(타당성, 신뢰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총 62문항(비판적사고 6문항, 의사소통 9문항, 협업 9문항, 창의력 6문항, 사회정서 20문항, 진로개발 12문항)으로 보완하였다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의 하위요소 및 지표는 표의 내용과 같으며, 향후 지속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진로개발역량 문항의 경우 원저자의 측정문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표 양호도(타당성, 신뢰도) 검증과 측정도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루브릭 작성 가능하며, 청소년은 활동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 가능
 - 청소년활동핵심역량 7가지 중 4가지 역량(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창의력, 협업 능력) 루브릭 평가문항 예시 가능

■ 청소년활동핵심역량 평가문항 예시 ■

구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비판적 사고력	다수의 타당한 근거를 들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함	타당한 근거를 일부 들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함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문제해결의 필요성만 제시함
	새로운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	관점은 새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함	기존의 관점에서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함	설득력은 다소 부족하나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함	설득력이 부족한 해결책을 불명확하게 제시함
의사 소통	모든 사안에 대해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함	중요한 사안에 한해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함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함
	팀원 간 의견 대립 등 갈등이 있을 때 의사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함	팀원 간 의견 대립 등 갈등을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만 크게 기여하지 못함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팀원 간 갈등을 유발함
	팀 협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도출함	팀 협력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소통하나 합의점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함	팀 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회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합의점 도출에 기여하지 못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가 있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음
창의력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함
	흥미롭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흥미롭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함	아이디어가 평이함
	실용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함	흥미롭지만 실현 가능성 불분명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비실용적이며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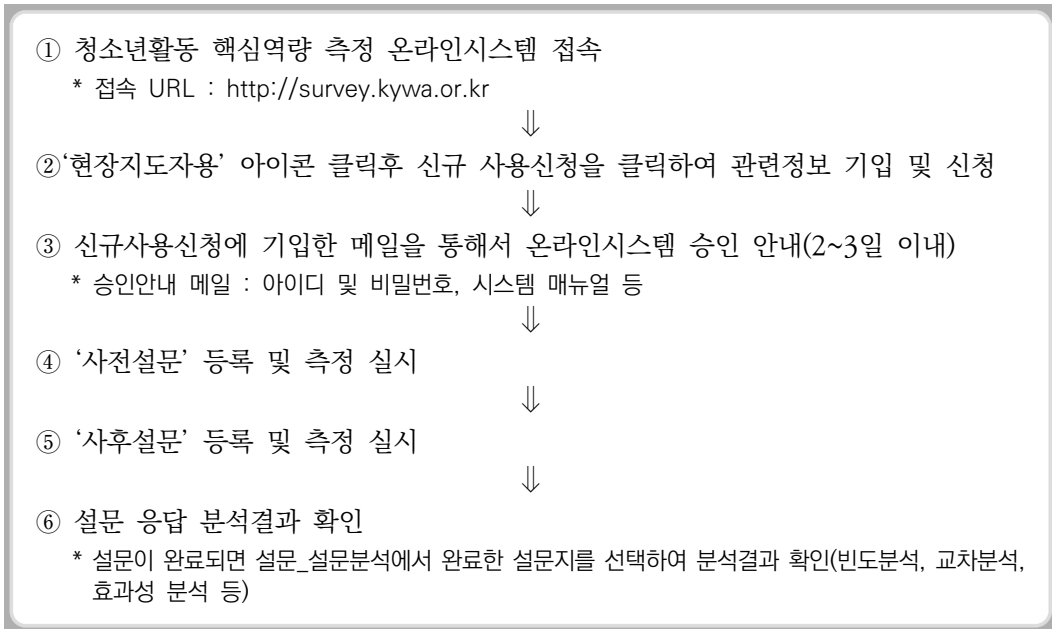
구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연령기	팀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	전반적으로 팀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	팀원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음	문제해결과 갈등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팀원 간 갈등을 유발함
	팀 협력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함	팀이 어떻게 협력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나 소극적이며, 마지못해 합의함	팀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논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함	다른 사람의 관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존중함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음

④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의 세부방법과 절차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의 목적 및 목표는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과는 달리 청소년활동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마련함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사용 시 권장사항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실시할 것을 권장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조사 방식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를 통한 조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역량기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야 함
 - 청소년이 측정문항에 응답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번호를 선택하지 않도록 안내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은 지자체 자체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우선 사용 가능

- 현재 없는 경우에는 신규개발하기보다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온라인시스템 활용 권고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핵심역량 측정도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 운영중(<http://survey.kywa.or.kr>)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운영기관등에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문항을 등록 하면 청소년은 QR코드, 웹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측정할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 및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세부 내용은 부록 1 참조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구성

-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된 문항을 기초로 구성, 2022년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대상 데이터를 토대로 측정도구의 양호도(타당성, 신뢰도) 검증
- 문항의 내용적·논리적 판단을 통해 각 역량별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내용타당도 측면에서 검토함

- 검증 결과에 따라 2023년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총 84문항(비판적 사고 : 6문항, 의사소통 : 9문항, 협업 : 8문항, 창의력 : 6문항, 사회정서 : 16문항, 진로개발 : 18문항, 디지털 문해력 : 21문항) 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한 아래 표 참조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

- 통계적 측면에서 측정도구의 기준개발이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므로, 청소년 개인·집단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절대적 높고 낮음을 측정하고 상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
- 다만, 청소년 개인·집단의 청소년활동 참여 사전-사후 비교와 같은 상대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는 의미 있게 활용 가능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 하위요소 및 지표(출처) ■

구 분	하위요소	지표(출처)	원저자
비판적 사고 (6문항)	비판적 사고력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은모 외 2명,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의사소통 (9문항)	공감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남궁지영 외, 2015)	KEDI 학생역량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5)
	소통		
협업 (8문항)	공동체성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남궁지영 외, 2015)	KEDI 학생역량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5)
	협동성		
창의력 (6문항)	창의적사고력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연구Ⅲ : 대학생 역량지수 개발연구 (김창환 외, 2014)	창의역량측정치표 및 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사회정서 (16문항)	의사결정 자기표현	강강술래 참여 아동의 사회정서 학습, 사회정서 발달 및 스트레스 해소의 관계 (송윤정, 2016)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Social-Emotional Learning Scale (Coryn, Spybrook, Evergreen, Blinkiewicz, 2009)
	또래관계기술		
	자기인식/ 관리 조절		

구 분	하위요소	지표(출처)	원저자
진로개발 (18문항)	진로이해	2017 학생진로개발 역량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2017 학생진로개발 역량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진로탐색		
	진로계획		
디지털 문해력 (21문항)	디지털도구의 활용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연구 (2022, KERIS)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연구 (2022, KERIS)
	정보의 조직 및 창출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2022, KERIS)	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2022, KERIS)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연구 (2022, KERIS)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연구 (2022, KERIS)
	디지털 안전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연구 (2022, KERIS)	수행형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도구 개발연구 (2022, KERIS)

※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하되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의 하위요소 및 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보완 예정

- 동일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따로 별도의 측정도구 및 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적극 권장 수용(향후 우수사례로 발굴 적극 검토)

5 청소년활동 성과관리로서 청소년영향평가(유스임팩트) 지원

- 청소년활동 내지는 청소년사업 실천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증거를 찾고 제공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어떤 성과를 내고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재정투자 및 외부 지원기관에 성과와 영향을 알릴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준비
- 이렇게 청소년영향평가는 ‘청소년 서비스 제공(youth provision)’의 측정 차원에서 사업(활동) 실무자들의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기술에 미치는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지원하는 측정에 대한 접근방식과 참여 방법은 크게 청소년 성과, 적용된 측정¹⁸⁾ 및 적절한 도구 개발¹⁹⁾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 거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역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지역관련기관 연계협력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 성과관리로서 청소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1. 이 안내는 원칙적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2~'26) 시행기간중 운영

- '25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적정성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수정 보완
 - 여가부 또는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서 수련거리 또는 프로그램분야의 공모 및 우수 선정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필요시 지속 보완
-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시, 관련 내용 및 절차를 준거로 참고 활용(지도) 요청
 - 반기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제출 협조(관련 서식 등 별도 통보 예정)
- 다음 기본계획 수립시 전면 재검토 하되, 개선사항은 매년 지속 보완 예정
 - 7차 중점 과제 : 진로 및 디지털 프로그램을 학교연계방식으로 활성화

2. 매뉴얼 제작·보급 및 교육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교육 자료 등 개정보완판 제작·보급

18) ㉠ 사회정서적 기술의 변화, ㉡ 행동의 변화 : ㉢ 청소년 참여도

19) 4가지 공개 측정 도구

- 청소년 참여 설문조사(YES, Youth Engagement Survey)
- 사회정서적 기술의 청소년 평가(YRSS, The Youth Rating of Socio-emotional Skills)
- 청소년 행동의 성인 평가(ARYB, The Adult Rating of Youth Behaviour)
- 프로그램 품질 평가(PQA, The Programme Quality Assessment) : 프로그램의 사회정서적 학습 효과 측정

- (청소년활동진흥원) 역량기반 청소년활동가이드북
- (한수협) 활동시설별 운영매뉴얼(개정판, 예정)

○ 교육

- (방법) 워크숍,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교육내용) 역량기반 청소년활동가이드, PBL프로그램, 우수운영 사례 소개
- ※ 세부 시행계획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별도 확정 통보 예정

3.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사업 컨설팅

○ 컨설팅 목적

- 신규 청소년활동시설 사업 안정화 및 운영기관 발전방안 모색

○ 컨설팅 개요

- (대상) 신규 및 희망하는 기관
- (수행기관)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운영일정) 2~10월
- ※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확정 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포상

- 여가부 또는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서 수련거리 또는 프로그램분야의 공모 및 우수작 시상 선정 등에서는 관련 내용 및 절차 등 우선 적용

※ 개별 시행계획시 위 내용 포함, 확정 통보 예정

- 17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도 우수 사례 발굴 노력

- 시도별 시설1, 담당(지도사) 1 등 총 34점 추천 중
- 동 지침을 준거로 한 지역별 자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적극 추진 가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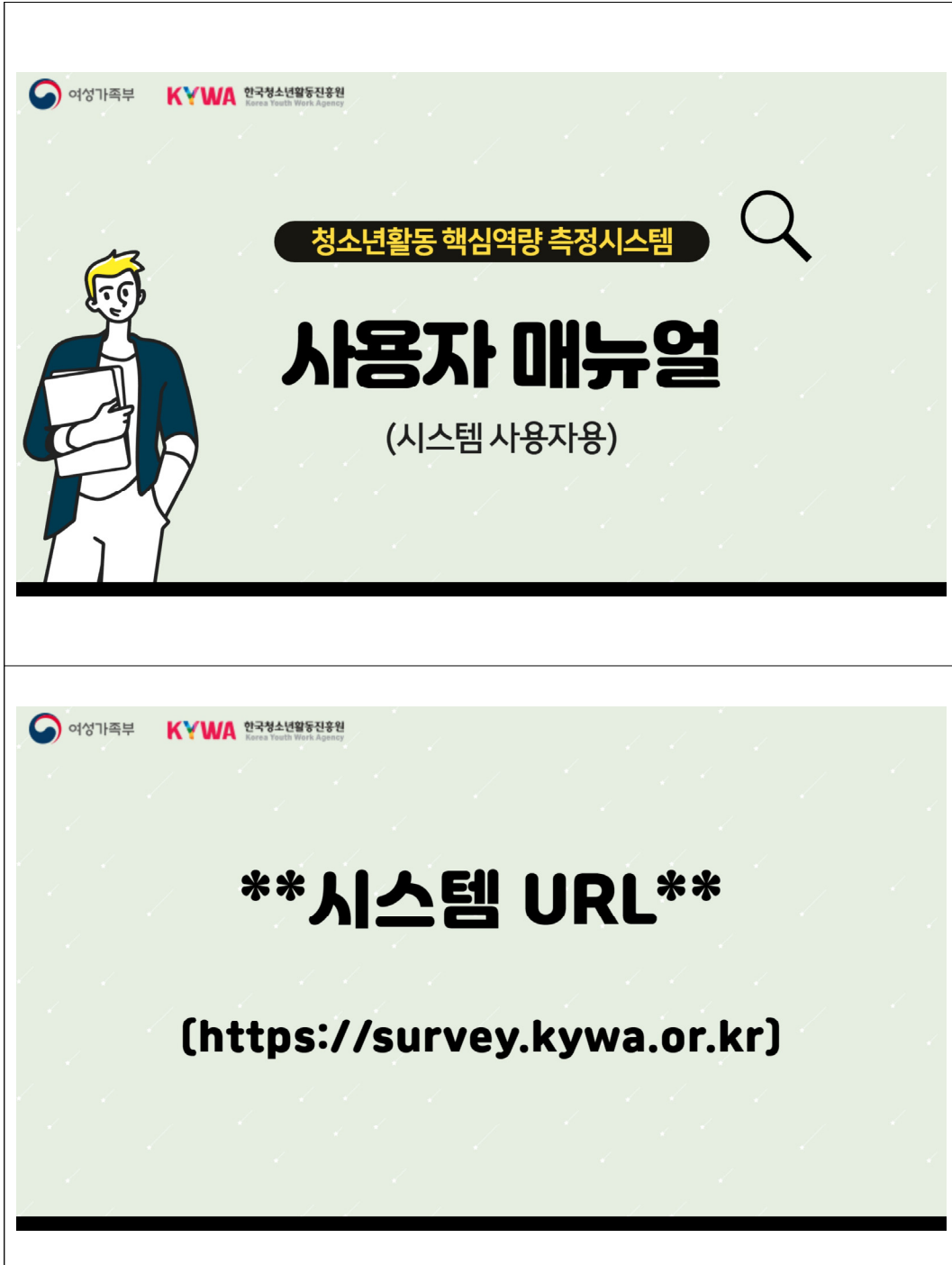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록

1.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온라인시스템 이용
2.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문항
3.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가이드북

[부록 1]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온라인시스템 이용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회원 가입하기

회원가입하기-사이트 접속 및 가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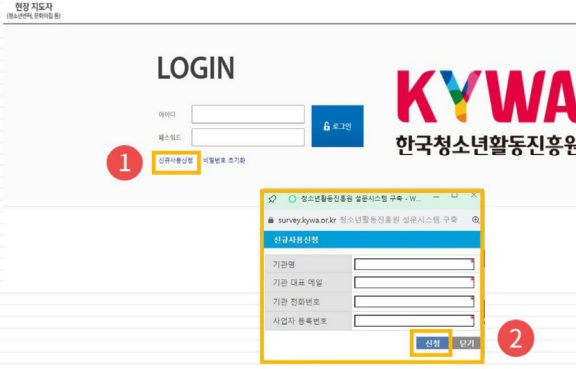
사이트 접속



1.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온라인 측정

시스템 로그인 후 현장 지도자 배너 클릭

회원가입하기-사이트 접속 및 가입신청



LOGIN

아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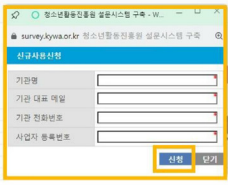
비밀번호:

회원가입

회원가입

1. 신규사용 신청 클릭 후 관련 팝업 확인
2. 팝업에 신청기관 관련 정보 기입 후 신청 클릭 >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가 관리자에게 발송되며, 관리자가 확인 후, 앞서 신청자가 기입한 이메일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발송함.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사전설문 생성하기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선택

2. 사전 설문 조사지 생성

-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 또는 중·후기 청소년 선택

초기 청소년 (만 9~14세) 중·후기 청소년 (만 15~24세) 사후설문

* 초기 청소년(만 9~14세) 또는 후기 청소년(만 15~24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사전 설문 조사지가 생성됩니다.

설문 선택

1.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온라인 측정 시스템 로그인 후 조사대상에 맞는 설문 클릭 (초기, 중후기)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지 작성

설문지 정보

설문지 이름 **1** 설문지

설문조사기간 **2** 19년 1월 1일 ~ 19년 1월 1일 무제한으로 설정

설문조사방법 홈페이지 SNS QR코드

공유여부 홈페이지 IP 쿠키 중복사용

사전사후 해당없음 사전설문

설문지 설명 **3** 2023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초·중·고등학생)

공유여부 **4** 단공용 다공용 **6** 문항보정 자동생성

진행률표시방법 **5** PAGE COUNT 순차적 보기 여부 미적용 적용

설문 체크 언어 국문 영문

기본정보 작성

- 1~4. 설문지 이름, 조사기간, 설명 입력 및

공유여부 선택

- * 추후 설문지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명 혹은 기관명, 담당자 명을 이름에 포함하는 것이 좋음

(예시) (PBL) 2024년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도구(AA청소년센터 스포츠동아리 캠프업)
(예시) (홍사) 자기주도 봉사동아리 포리에 포리를 꾸는 봉사단 효과성 설문

- 5~6. 진행률 표시방법 및 순차적 보기여부 선택

5. 페이지(%), 문항(%) 중 선택

6. 미적용(한 페이지 내 문항 노출),

적용(1번 문항 입력 시 2번 문항 노출)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지시안 정보

설문 안내 문구 **1** 조사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제4항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응답 완료 문구 **2** 고맙습니다.

PC 스킨 **3** [스킨] [색상] [배경화기]

모바일 스킨 **4** [모바일 스킨] [색상] [배경화기]

5 저장 새로고침

기본정보 작성

1~2. 안내문구 및 응답 완료 문구 수정 *필요시

3~4. PC 및 모바일 스킨(디자인) 수정 *필요시

5. 정보기입 완료 후 저장 클릭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문항 정보

1. *개인별 사전-사후 조사 값을 매칭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성별, 생년월일)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 전과 후, 핵심역량의 변화정도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안)>

수집 목적 : 개인식별 및 역량 측정 결과 제공
 수집 항목 : 성별, 생년월일, 사는 지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0)sec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성별 (0)sec
 남
 여

3. *생년월일 (0)sec

설문조사 항목 선택

1. 필수항목

-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및 성별,
 생년월일의 경우 필수항목으로 둘 것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4. * 비판적사고 **선택** 문항 이동 (0)sec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판적사고]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비판적사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상황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비판적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앞뒤가 맞는지 잘 따져본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비판적사고]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비판적사고]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 알맞은 근거를 찾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비판적사고] 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결정할 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설문조사 항목 선택

1.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등 각 역량별 항목 중

측정에 필요한 역량의 항목만 남기고

이외 역량관련 항목은 삭제

* 각 항목의 경우 역량명 옆의 '휴지통'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 가능하나, 삭제 후 다시 복구할 수 없어

설문지를 다시 생성해야 함.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설문지 작성

설문지 이동 | 설문지 목록

문항 정보

1. * 질문을 생성-내용-조사-인용-결과-해설 순서로 제작하기 위해 제작된 내용은 질문명(이름) 설정필수입니다. 질문명은 우선 및 이후에 변경이 가능 ➔ 그러나 후자를 가질 경우 필수 항목은 변경 불가, 필수사항이 변경됨을 확인하십시오.

▶ 질문명 수정 및 내용 확인하기

우선 제작 - 질문이름 및 역량 측정 결과 제공

우선 내용 - 설문, 설명필수 기능 지어

질문명/내용 후 수정하기 (1인)

필수 조건: 질문명/수준 및 내용에 대해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2. * 설문 후 show

보

예

설문조사 항목 선택완료

1. 설문조사 항목 선택 완료 후 상단 우측의

[작성완료] 클릭

* 각 항목의 경우 역량명 옆의 '휴지통'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 가능하나, 삭제 후 다시 복구할 수는 없음.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작성 확인 및 설문수정

- 화면의 설문지 관련 정보 확인
* 잘못된 항목이 있을 경우 아래 [수정] 버튼을 통해 작성정보 변경
- 설문지 수정하기
- [수정] 버튼 클릭을 통해 설문 수정메뉴 활성화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작성 확인 및 설문수정

- 설문지 수정
- 설문이름, 안내문구, 조사기간 등 기본정보 수정
- 목표응답수 기입(필요시)
- 수정사항 반영 후 저장 클릭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작성 확인 및 상태변경

1. 화면의 설문지 관련 정보 확인

* 잘못된 항목이 있을 경우 아래 [수정] 버튼을 통해

작성정보 변경

2. 설문 시작을 위한 상태 변경

- [설문 진행] 상태로 변경해야 정식설문이 가능

* 각 항목별 설명은 다음페이지 참조

* 더이상 설문지 수정이 필요없이 설문진행을 시작할 경우

[설문진행] 으로 상태를 변경

설문 생성하기-설문조사지 작성

진행단계	단계설명	설문응답	상태변경	수정
설문등록	설문지 작성 완료	X	O	O
설문테스트	정식설문 전 테스트 가능상태	O	O	O
설문진행	정식설문 조사 중	O	O	X
일시중지	설문 진행 중 응답 정지상태	X	O	X
설문완료	설문조사 종료	X	△	△

* (설문완료) 조사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문진행 단계로 변경 가능

설문 생성하기-설문 발송정보 확인

설문 발송정보 확인

1. 설문관련 링크 및 QR코드 확인 후 원하는 수단을 통해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참여수단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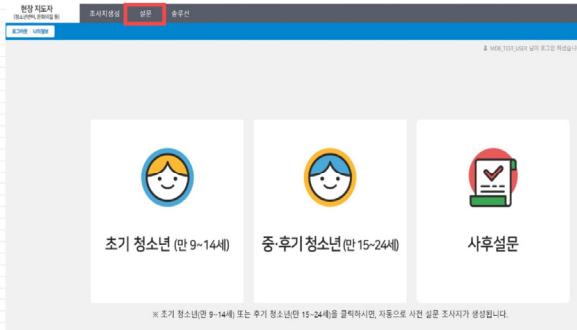


진행 중 설문 확인



진행 중 설문확인-진행 중 설문 확인하기

1



진행 중 설문 확인하기

1.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에서 [설문] > [설문진행]

클릭하여 설문진행관리 메뉴로 접속



진행 중 설문확인-진행 중 설문 확인하기

설문진행관리

설문 검색

등록자

설문 유형

등록일 -

* 설문진행 중 설문의 경우 종료기간이 오늘 이전이거나 종료유형이 종료하면 '설문완료'로 표시됩니다.

총 124 건 | 페이지수 1/13

<input type="checkbox"/>	설문 유형	사전/사후	설문 이름	설문조사기간
<input type="checkbox"/> <td>효과검토사</td> <td>사후설문</td> <td>ICT-NewsBalance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td> <td>2023-10-16 10:53 ~ 2023-11-17 10:53</td>	효과검토사	사후설문	ICT-NewsBalance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	2023-10-16 10:53 ~ 2023-11-17 10:53
<input type="checkbox"/> <td>효과검토사</td> <td>사전설문</td> <td>ICT-NewsBalance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td> <td>2023-05-01 09:42 ~ 2023-05-31 09:42</td>	효과검토사	사전설문	ICT-NewsBalance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	2023-05-01 09:42 ~ 2023-05-31 09:42

진행 중 설문 확인하기

1. 설문진행관리 메뉴에서 본인이 작성 후 진행중인

설문 검색

* 등록자, 혹은 설문이름으로 검색 가능

2. 검색결과에서 설문 이름을 클릭하여

설문 진행상태 및 등록정보 확인, 수정

* 설문등록/설문진행/설문완료 등

설문 이름

설문진행상태

사전/사후

분석공개여부

등록자	등록일	설문진행상태	분석공개여부	설문지
구입당량청소년문화센터 (youth067)	2023-03-21 10:54	설문등록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구입당량청소년문화센터 (youth067)	2023-03-21 09:45	설문진행	비공개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사후설문 생성 및 설문 진행

사후설문 생성 및 설문 진행-사후설문 생성

1

초기 청소년 (만 9~14세) 중·후기 청소년 (만 15~24세) **사후설문**

* 초기 청소년(만 9~14세) 또는 후기 청소년(만 15~24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사전 설문 조사가 생성됩니다.

사후설문 생성

1.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온라인 측정 시스템 로그인 후 사후설문 클릭



사후설문 생성 및 설문 진행-사후설문 생성

1. [돌보기 아이콘] 클릭 > '효과성 조사 입력'

2. 리스트 보기 클릭 > 사전설문 불러오기 > '설문 이름' 설정 (* 사전설문 이름이랑 동일할 경우 오류)

3. 기타 관련정보 기입 및 저장

* 저장 후 사전 설문과 동일하게 설문진행

사후설문 생성

1. [돌보기 아이콘] 클릭 > '효과성 조사 입력'

2. 리스트 보기 클릭 > 사전설문 불러오기
> '설문 이름' 설정 (* 사전설문 이름이랑 동일할 경우 오류)

survey.kywa.or.kr의 메시지

설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일은 20250601이 'TEXT' 사전 설문지 매뉴얼 테스트* 이름으로 이미 생성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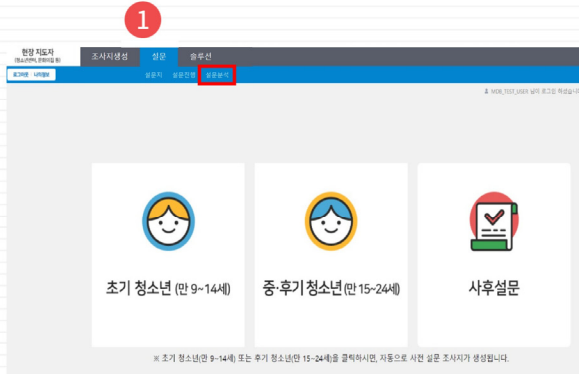
확인

3. 기타 관련정보 기입 및 저장

* 저장 후 사전 설문과 동일하게 설문진행

설문결과 확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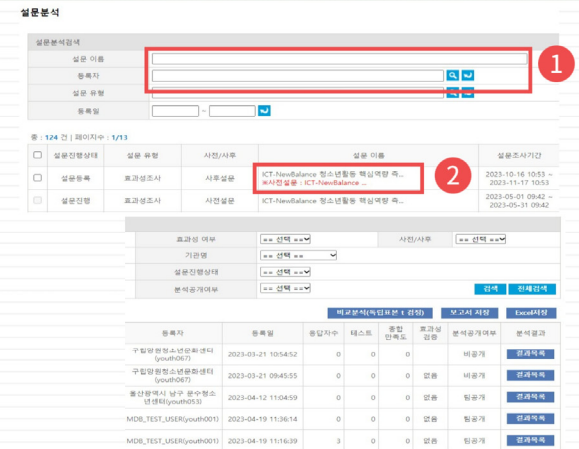
설문결과 확인·분석-사후설문 불러오기



사후설문 불러오기

1.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에서 [설문] > [설문분석] 클릭하여 설문 분석메뉴로 접속

설문결과 확인·분석-사후설문 불러오기



설문 검색 및 진행현황 확인

1. 설문 분석메뉴에서 본인이 작성 후 진행중인 '사후설문' 검색
* 사전설문명이 붉은색으로 설문이름 아래에 함께 있음
2. 검색결과에서 설문 이름을 클릭하여 설문 지표 및 집계표 등 응답현황 확인



설문결과 확인·분석-데이터 저장 및 분석실행

설문결과 확인·분석-데이터 저장 및 분석실행

설문결과 확인 | 데이터 관리 | 설문관리 | 통계분석 | 요청관리

3

3.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명

설문일

설문기간

설문대상

설문조사명: [선택] | 설문일: [선택] | 설문기간: [선택] | 설문대상: [선택]

설문조사명

설문일

설문기간

설문대상

설문조사명: [선택] | 설문일: [선택] | 설문기간: [선택] | 설문대상: [선택]

1

데이터 저장 및 분석

1. 해당 메뉴에서 설문분석 결과 및 RAW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2. 분석실행 클릭 시 페이지 아래쪽으로 '빈도분석' 결과 확인 가능
3. 빈도분석, 교차분석, 효과성 분석 등 희망하는 방식의 분석 메뉴로 이동하여 분석 진행 및 결과 확인 가능

* 각 분석기능별 결과보고서를 엑셀형태로 저장 및 다운로드 가능

[부록 2]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문항

본 조사는 '핵심역량 중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문항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신 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필수]는 응답자 누구나 작성(표기) 해주셔야 하며, [선택]은 개요서 작성 시, 선택해주신 핵심역량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본 조사의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되어있는 문항들을 기초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향후 타당화 작업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성 별	* 작성에서 여 또는 남	생년월일	()년 ()월 ()일
사는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 성별, 생년월일, 사는 지역은 개인별 사전-사후 조사 값을 매칭하기 위함입니다. 별도 내역을 통해 매칭이 가능하시다면 개인정보수집의 내역은 변경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안)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안)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전과 후, 본인의 핵심역량 변화정도 측정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목적 : 개인식별 및 역량측정 결과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는 지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8년

* 개인정보 이용기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만9세~24세/15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3년을 추가하여 18년으로 한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 전과 후, 핵심역량의 변화정도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구 분	하위 요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판적 사고 (6문항)	비판적 사고 (6문항)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부분적인 사항들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논리적인지 또는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알맞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의사 소통 (9문항)	공감 (4문항)	나는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의 마음(생각과 감정)을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소통 (5문항)	나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할지 미리 생각하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한 말을 골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면서 속마음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대화할 때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협업 (9문항)	공동체성 (4문항)	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내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협동성 (5문항)	나는 과제를 함께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이 힘들어 할 때 힘이 나도록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하위 요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여럿이 과제를 하다가 다투더라도 양보하며 끝까지 마무리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끼리 다투면 서로 화해하도록 나서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력 (6문항)	창의적 사고력 (6문항)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힘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실과 정반대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무 생각 없이 기존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들에 비해 질문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 정서 (20문항)	의사결정 자기표현 (6문항)	나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상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가진 관심사에 대하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목표를 향하고 있는 나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또래관계 기술 (7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한 감정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문화적 집단 사이의 다름을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다른 방법들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집단들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 사이의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 분	하위 요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기인식 / 관리조절 (7문항)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학교에서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떠한 상황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학교의 문제들에 대한 다른 해결방안들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한 다른 해결방안들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등 소속한 집단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 개발 (12문항)	생애기반 진로선택 및 준비 (7문항)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진로와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특성(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과 관심 있는 직업의 특성(하는 일, 자격요건, 근무환경 등)을 비교하여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진로목표(고교 및 대학진학, 희망직업 진출 등) 달성을 위한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나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스스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아하는 과목 뿐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 관련 창의성 및 적응력 함양 (5문항)	나는 직업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견딜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진로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적응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참고]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최종 문항

영역	하위요소	성취기준	문항
1. 자기 관리	1-1.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1-1-1.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주변 사람들(가족, 선생님, 친구 등)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1-1-2. 자신의 성취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할 자신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만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1-2. 자기이해	1-2-1.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잘 하는 일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1-2-2. 자신의 특성을 진로에 연결시켜 이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구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능력(언어능력, 수리·논리력, 음악능력, 신체·운동능력 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의 특성과 잘 맞는 직업 또는 직업의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칭찬, 감사, 존중 등)을 잘한다.
1-3. 사회적 기술 함양	1-3-1.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들어준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듣는다.	
	1-3-2.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2-1-1. 다양한 진로정보원 및 방법을 활용하여 진로	<input type="checkbox"/> 나는 주변 사람들(가족, 선생님, 친구 등)로부터 진로(직업, 진학 등)에 관한 정보를 구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책,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통해 진로정보를 찾아 수집한다.
2. 진로 정보탐색 및 활용	2-1. 진로정보 탐색 및 수집		

영역	하위요소	성취기준	문항
		정보를 탐색·수집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진로정보를 찾아 수집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진로상담을 통해 모르거나 궁금한 진로정보를 찾아 수집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는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찾아 수집한다.
		2-1-2. 다양한 측면에서 진로정보를 비교·분석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의 희망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정보(하는 일, 자격요건, 근무환경 등)를 찾아 비교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의 희망 직업과 관련 있는 진학정보(학교 및 전공 등)를 찾아 비교한다.
	2-2. 직업세계 이해	2-2-1. 미래 직업세계를 이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10~2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 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10~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 할지 설명할 수 있다.
		2-2-2. 관심 있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질 및 특성을 이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느 학교에 진학 하여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설명할 수 있다.			
2-3. 바람직한 직업관 및 직업태도 함양	2-3-1. 직업의 개인적·사회적 기능을 이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직업을 통해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직업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2. 바람직한 직업태도를 갖는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성별, 인종, 문화 등에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미래 직업생활에서 직업인으로서 지켜야할 규범(근무시간, 복장, 도덕적 원칙 등)을 지킬 자신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미래 직업생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미래 직업생활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자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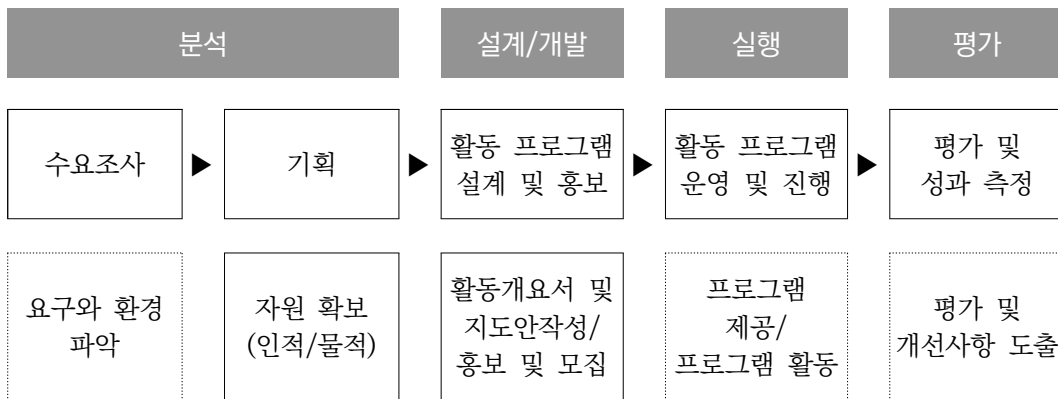
영역	하위요소	성취기준	문항
3. 진로 설계 및 관리	3-1. 생애기반 진로 선택 및 준비	3-1-1. 삶, 진로, 직업의 의미를 인식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진로와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3-1-2.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진로 계획을 세운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나의 특성(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과 관심 있는 직업의 특성(하는 일, 자격요건, 근무환경 등)을 비교하여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진로목표(고교 및 대학 진학, 희망직업 진출 등) 달성을 위한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스스로 공부한다.
	3-2. 진로관련 창의성 및 적응력 함양	3-2-1.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척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직업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보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
		3-2-2. 유연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한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견딜 자신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진로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적응할 자신이 있다.			

[부록 3]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가이드북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운영 절차 개요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진로개발 역량과 디지털 문해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ADDIE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임.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모형을 기초로 현장에서 진로 활동 프로그램/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설계 모형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함. 먼저,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해야 함. 또한 청소년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수준의 공급 가능성도 고려하여 자원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실제적인 체험 활동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의 이해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모형(안)에서 제시한,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목표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진로개발역량,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문해력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가 이뤄지도록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세우는 단계가 기획 단계이다.

구분	목표
청소년 진로 활동	평생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
청소년 디지털 활동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제시한 활동 목표는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평가와도 연관 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성과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갖출 능력을 목표로 하여, ‘가르치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함. 이러한 수행평가²⁰⁾와 루브릭의 활용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음. 청소년활동의 목표에 따라 루브릭으로 참여자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특정 변화를 관찰해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동안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역량에 기반한 평가가 요구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역량기반 청소년활동이 추진하면서 역량별 측정 문항을 활용해 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참고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평가를 위한 루브릭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또는 강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과 청소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기대 수준을 찾고, 이를 활동 지도안의 세부활동목표로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루브릭을 구성함. 이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에서 활동 개요를 구성하고, 연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루브릭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20) ‘수행평가’는 1996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도입된 이후 기존의 암기 중심 평가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배호순, 2000; 이재희, 2006; 한지영, 2004; Andrade & Du, 2005; Arter, 2000; Arter & Mctighe, 2001). 특히, 수행평가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고차적 인지 능력과 다양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하다. 타당한 루브릭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참여자의 역량 수준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다(배호순, 2000).

○ (예시) 청소년 진로 활동 루브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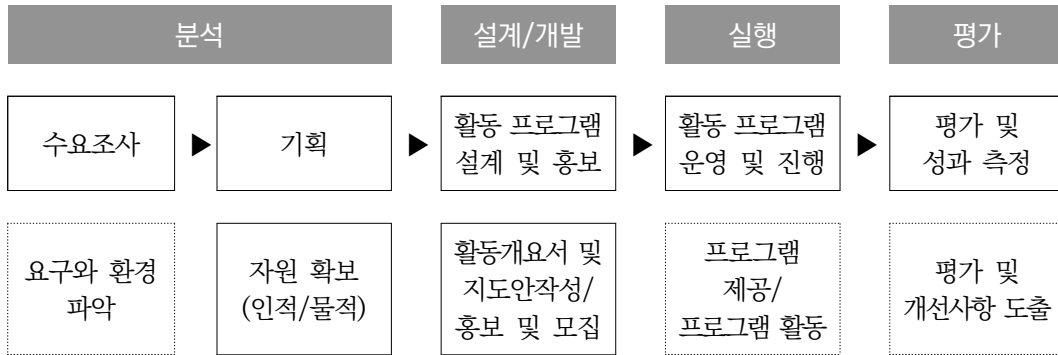
하위 역량	A	B	C	D	E
진로 이해	자기 이해를 통해 장기적 진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목표와 실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기반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의 흥미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진로 탐색	다양한 직업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직업 정보를 탐색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 정보를 탐색하여 흥미를 느끼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직업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기본적인 직업 정보를 알고 나열할 수 있다.
진로 계획	장기적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수 있다.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간단한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본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진로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 (예시) 청소년 디지털 활동 루브릭 예시

하위 역량	A	B	C	D	E
디지털 안전 및 윤리 의식	디지털 윤리와 안전 규칙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할 수 있다.	디지털 윤리와 안전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디지털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 안전 수칙을 알고 지킬 수 있다.	디지털 안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활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를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기본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 디지털 도구의 기능을 이해하고 간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도구의 기본 사용법을 이해하고 간단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정보·데이터 분석 및 평가 능력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제에 맞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간단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어진 기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하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정보 조직 및 창출 능력	정보를 수집, 조직, 재해석하여 창의적인 결과물로 발표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에 맞게 재조직하여 간단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주어진 형식에 맞게 나열할 수 있다.	간단한 정보를 찾아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단계별 운영 절차 및 내용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단계별 세부 운영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분석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요조사와 기획 및 자원확보 단계가 적용된다.

- 수요조사 : 프로그램 수요를 의도한 수집과정 또는 여러 경로에서 확보하게 되는 단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환경 분석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분석 :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 청소년활동역량 수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활동 내용과 방법 등

- 기획 및 자원확보 : 활동의 목표를 설계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단계

* 기획단계와 자원확보 단계는 동시에 이뤄지거나, 순서 이동이 발생하기도 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수요조사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교육장소 및 장비 확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② 설계 및 개발 단계

- 활동지도안 작성 : 활동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사전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목표, 활동내용 및 자료개발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법 및 전략 개발 : 프로젝트활동, 문제해결활동, 탐구 및 탐색활동, 사례조사활동 등
- 홍보 및 모집 :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 또는 (학교)단체를 모집하는 단계
 - * 앞 단계에서 대상이 결정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참여 공문 발송
 - 온라인 홍보물 개발 및 배포(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등 개발 및 부착 등

③ 실행 단계

- 운영/진행 :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설에서 직접 진행 및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평가 방법에 따라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함께 이루어 짐.
 - 청소년들의 활동을 제공하고, 지도하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과정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지도자 및 운영요원, 안전 등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단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효과성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④ 평가 단계

- 평가 및 성과분석 : 측정된 자료 및 의견들을 토대로 성과를 정리하는 단계
 - * 참여/관계자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피드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로서의 가치와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 : 프로그램의 가치와 장점, 프로그램의 목적달성 정도,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 등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선에 환류

4) 단계별 세부 운영 내용

(1) 분석 단계

① 프로그램 수요조사

○ 사회적 요구 조사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시대적 요구사항 조사
- 예시 :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시대/미래사회/지역사회 인재상 등 조사

○ 대상자 조사

- 청소년의 관심사, 흥미, 필요성, 활동역량 등을 조사하는 설문 및 인터뷰 실시
- 예시 : 방과 후 프로젝트와 주말 활동의 참여 의향 조사, 청소년활동역량 조사, 진로/디지털 특강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요구 파악 등

○ 학교 수요조사 :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프로그램 요구를 파악

- 예시 : 학교/학년별 교육 수요 조사, 교사 등 의견 수렴한 맞춤형 활동 등 설정

○ 유휴 공간 조사 : 학교 내 유휴 교실, 특별실(예 : 컴퓨터실, 과학실)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조사

○ 교과 연계 조사 : 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등 연계 활용 가능성 조사

- 예시: 진로탐색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지, 국어 과목과 연계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

○ 실행 가능성 검토 : 활동별 내/외부 예산 반영 수준 검토 및 안전관리 항목 검토

- 예시: 청소년센터/학교가 각각 집행 가능한 예산 수준 공유, 활동 장소/이동 동선 등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응급상황 대응 필요자원 확보

○ 요구 분석 및 기존 프로그램 피드백 결과 환류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방법 등 분석
- 취약계층, 소외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연령별 요구 분석
- 사회적 배경을 검토해 특별지원(참가비 지원 등) 사항 고려
- 예시 : 청소년포상제와 연계 가능한 활동 설계,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수요 조사

② 프로그램 기획

- 수요조사 근거 기반 목표 설정 : 연령대별로 활동의 목표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프로그램 개요서 등 기본 계획관련 문서 작성
 - 예시 : 자기주도적 탐색을 위한 방과 후 진로 프로젝트 목표 설정, 디지털 미디어 교육 및 안전 교육 목표 반영
- 활동 방식 설정 : 프로그램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활동 방식을 설정
 - 예시 : 특강과 캠프 활동의 경우, 비대면 강의와 대면 캠프 활동을 혼합하여 설정
- 정책 연계 요소 반영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포상제 기준에 맞춰 인증 및 포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 반영
 - 예시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한 활동내용 기획, 수련시설 및 체험센터 연계 활동 구성, 학교와 협력하여 현장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역 수련시설에서 직업체험 활동을 포함한 진로캠프 기획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목표 설정 : 각 성취 기준에 맞춰 목표 설정
 - 예시 :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목과 연계하여 진로 탐구 주제를 설정, 중학교 정보 과목과 연계해 디지털 윤리 교육 포함
- 학교 방문 프로그램 설계 :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진로 특강 및 체험 활동을 설계
 - 예시 : 중학생 진로특강 교실에서 진행, 고등학생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 강당 진행
- 안전사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활동에 필요한 안전사고/응급상황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
 - 예시 : 활동 공간 및 이동동선에 맞는 구급/이송, 응급처치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사전 안전교육 및 위험요소 관리계획 수립 등

③ 자원 확보

- 예산 확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 예시 : 각 청소년활동센터의 예산 확보, 지역사회의 지원 예산 확보 등
- 인적 자원 확보 : 방과 후 및 주말 활동, 진로 특강 및 캠프를 위한 전문가 섭외
 - 예시 : 학부모 대상 특강 강사,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강사 섭외

- 물적 자원 준비 : 활동에 필요한 장비 자원 확보(예 :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등)
 - 예시 : 디지털 캠프를 위한 태블릿, 비대면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준비
- 지역사회 연계 자원 확보 : 지역 내 대학, 소상공인, 박물관 등의 협력으로 자원 마련
 - 예시 :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창업 교육 진행 등
- 학교 시설 자원 확보 : 학교 내 유휴 공간(교실, 컴퓨터실 등)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시설 사용 허가 확보
 - 예시 : 컴퓨터실에서 디지털 편집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
- 수련시설 및 체험센터 인적 자원 확보 : 학교와 협력해 외부 전문가 섭외
 - 예시 : 국립청소년수련원 강사, 체험센터의 디지털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습 진행
-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Check
프로그램 수요조사 단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 조사	<input type="checkbox"/>
	학교와의 협의 통한 프로그램 수요 조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특성 분석 : 청소년활동 역량수준, 청소년시설 인식, 정보획득경로 조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요구 분석 : 활동 방식(대면/비대면), 활동내용, 활동방법, 시기 등 선호도 조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청소년포상제 연계 요소 분석	<input type="checkbox"/>
	기존 피드백 자료 검토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기획 단계	프로그램 수요조사 자료 근거와 연동	<input type="checkbox"/>
	기본 계획서 작성 및 개요서-루브릭 검토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기획 단계 연동	<input type="checkbox"/>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목표 설정	<input type="checkbox"/>
	학교연계시 활동공간(학교에서 이동시 이동수단 포함) 협의	<input type="checkbox"/>
자원확보 단계	프로그램 기획단계 연동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 확보 및 승인	<input type="checkbox"/>
	인적 / 물적 / 지역사회 자원 리스트 구성	<input type="checkbox"/>
	학교 내 공간 및 장비 사용 승인	<input type="checkbox"/>
	연계할 시설의 인적/물적자원 사용 승인	<input type="checkbox"/>

(2) 설계 및 개발 단계

① 활동 개요서 및 지도안 작성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명 :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름을 간단하게 작성함(예시 : “진로 탐색 및 설계 프로젝트”)
- 일정(기간/횟수) : 프로그램의 총 운영 기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예시 : 3개월 동안 주 1회, 총 12회 운영)
- 대상 및 인원 : 각 연령대별 청소년 대상과 예상 인원을 기재 (예시 : 고등학생 2학년, 총 30명)
- 지도자 수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도자의 최소 및 적정 인원을 표기함. (예시 : 진로 상담 전문가 1명, 디지털활동 멘토 1명)

○ 주 활동장소와 운영형태

- 주 활동장소 : 프로그램이 진행될 주요 장소를 명시(예시 : ○○청소년센터 강당)
- 운영형태 : 강의, 체험, 토론, 팀 활동, 프로젝트활동, 문제해결활동, 탐구 및 탐색활동, 사례조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선택, 구체적 기술 (예시 : 강의, 팀 활동(직업 체험 워크숍), 토론)

○ 활동유형 및 활동목적

- 활동유형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중 선택하며,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을 고려해 작성 (예시 : 기본형, 총 3시간 내외)
- 프로그램 목적/목표
 - ‘목적’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청소년이 변화하게 될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활동의 핵심가치를 포함하되 간결하게 작성 (예시 :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설계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용 능력을 기른다.”
또는 이를 간결히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 함양” 형식으로 작성)

- ‘목표’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작성하고, 그 방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할 성취기준을 작성하는 것임. 특히, 지도자/교사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 중심으로 관찰 가능한 목표를 작성하는 것 필요
(예시 : “청소년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해 자기 진로 로드맵을 발표한다.” (진로)
“디지털 윤리 사례를 탐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글로 작성한다.” (디지털))
 - 관찰 가능한 목표를 구체화하여 ‘발표 자료의 완성 수준’, ‘전달력/표현력’ 등으로 평가 기준을 구성해 루브릭으로 활용
- 역량 설정
- 핵심역량 : 청소년이 성취해야 할 주요 역량을 설정(예시 : 진로 개발, 문제 해결)
 - 자율역량: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역량을 목표로 설정
(예시 : 자기 주도성,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 교육과정 연계
- 교육과정 성취기준 코드와 성취기준: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해 성취기준을 기재
(예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생평가지원포털에서 디지털의 경우 ‘정보’과목 선택 / 진로의 경우 중학교 선택과목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 후 해당 활동에 적합한 성취기준 코드 및 성취기준 확인 가능. 고등학생의 경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교육과정 자료실의 성취기준 자료에서 과목별 기준 확인 가능)
- 회기/차시별 요약 및 소요시간
- 회기/차시별 요약 : 각 회기의 주요 활동 내용과 중점을 간략히 작성
(예시 : 1회기 - 진로 탐색과 흥미 분석 활동)
 - 소요시간 : 각 회기의 예상 소요 시간을 작성함(예시 : 1회기 90분)
-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및 중점 사항
- 프로그램 내용 개요 : 회기/차시별 주요 활동을 개조식으로 작성함
(예시, 1회기 : 진로 탐색 설문 조사 및 흥미 분석 활동,
2회기 : 직업군 탐색 워크숍 / 3회기 : 진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활동)
 - 중점 사항 : 프로그램별 핵심 사항과 필요한 전달 사항을 기술함
(예시 :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자료와 예시를 풍부하게 제공)

○ 결과물과 평가

- 결과물 :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도출할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나 성과를 기술
(예시, 참가자가 작성한 진로 포트폴리오 및 목표 계획서)
- 평가 : 프로그램 진행시 측정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효과성 조사를 수행하거나, 루브릭을 활용해 진행(예시 : 첨부된 루브릭 활용)
- 기대효과 :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얻게 될 긍정적 효과나 성장을 명시함
(예시 : 청소년들이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미래 직업 선택에 필요한 자신감을 키움)

② 홍보 및 모집

- 홍보 자료 작성 : 방과 후 활동, 진로 특강, 취약계층 대상 활동 등 목적에 맞춘 홍보 자료 제작
 - 예시 : 청소년 관련기관 홍보자료 및 협조 공문 발송, SNS 및 지역 내 포스터 배포,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디지털 접근 지원 홍보,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등 개발 및 부착 등
- 모집 및 등록 절차 : 각 활동에 대한 모집 공고 작성 및 등록 절차 관리
 - 예시 : 진로 캠프 및 디지털 활동 참가자 모집 안내
- 학교 내부망 활용 : 학교 게시판, 웹사이트,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
 - 예시 : 학급별 홍보 포스터 게시, 프로그램의 목적과 주요 활동에 대해 학부모에게 설명 자료 제공 후 배포
- 교사와 협력한 모집 활동 : 교사와 협력하여 학급별 안내를 통해 모집 진행
 - 예시 : 진로담당 교사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신청서 배포
- 직접 연계된 보호자(학부모) 안내 : 프로그램의 목적과 주요 활동 설명 자료 제공

○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Check
활동개요서 및 지도안 작성 단계	수요조사 결과 반영 정도: 사회적 요구, 학교의 요구, 청소년의 요구 등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활동지도안 작성: 목표-역량-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input type="checkbox"/>
	루브릭 평가 기준 및 기대효과 작성	<input type="checkbox"/>
	외부 강사 연계시 측정 및 피드백방식 협의	<input type="checkbox"/>
홍보 및 모집 단계	청소년 관련 기관 참여공문 및 홍보자료 발송	<input type="checkbox"/>
	학교 홍보 : 교사활용자료, 학교 게시판, 교내 웹사이트, 가정통신문 활용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루트(SNS, 포스터 등)의 청소년 및 보호자 등 지역사회 홍보 자료 마련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정보 수집과 등록 관리 시스템 준비	<input type="checkbox"/>

(3) 실행 단계 :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 단계별 활동 진행 : 대면 및 비대면 활동 실행: 혼합 활동 시 활동 방식에 맞춰 대면/비대면으로 구분하여 운영
 - 예시 : 특강은 비대면 강의로, 캠프는 대면 체험으로 진행
-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활동 : 소상공인, 대학, 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 예시 : 소상공인과의 창업 프로젝트, 박물관에서의 문화 체험 활동
- 외부시설 연계 활동 : 타 수련시설 및 체험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체험 운영
 - 예시 : 직업 체험이 가능한 지역 수련시설에서 진로캠프 운영
- 학교 방문 프로그램 운영 : 교내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학교 방문 프로그램으로 진행
 - 예시 : 학교 강당에서 전문가 멘토링, 진로 및 디지털 특강 등 진행, 학교 공간만 단순활용 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내용 진행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안전사고 및 돌발상황 대처 방안 마련
 - 예시 : 시설간 이동시 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지도자 및 운영요원, 안전 등을 수시 점검,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운영진의 역할분담)

○ 루브릭 평가 및 피드백 제공

- 각 회기마다 루브릭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자가 평가하도록 지원

○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Check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단계	안전사고 관리 ①: '학교 → 시설' 활동시 이동 / 관리항목 검토	<input type="checkbox"/>
	안전사고 관리 ②: '시설 → 학교/협력자원' 활동시 연계 / 관리항목 검토	<input type="checkbox"/>
	외부 강사 연계시 안정된 운영에 요구되는 관리항목 검토 및 즉각 대응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요인 검토 및 즉각 대응	<input type="checkbox"/>
	루브릭 평가 기준을 적용해 피드백 제공 방안	<input type="checkbox"/>

(4) 평가 단계 : 평가 및 성과 분석

○ 평가 계획 및 평가도구 개발

- 사전 평가(기초 이해), 활동 중 평가(중간 피드백), 활동 후 평가(최종 성과물)로 구분하여 계획 및 평가도구 개발
- 예시 : 청소년활동역량 사전-사후 평가, 청소년활동 포트폴리오 평가, 청소년 활동 관련 효과성 평가(만족도,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 등) 등의 평가도구 개발 및 준비

○ 성과물 평가 : 프로그램 활동 종료 후, 청소년들이 제출한 성과물(예 :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계획서)을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

- 예시 : 디지털 활동의 경우, 참여자들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창의성, 기술 활용 능력, 윤리 인식을 평가하여 피드백 제공

○ 활동 성과 분석 :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미친 효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분석

- 예시 : 진로 특강 및 캠프 활동 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 청소년포상제 연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증서나 포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분석

- 성과 공유 및 향후 개선점 도출: 평가 결과 수요자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설정
 - 예시 : 학부모에게 활동 보고서 제공, 지역사회와의 협력 성과를 지역사회 뉴스레터나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향 논의
-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Check
평가 및 성과 분석 단계	각 활동별 목표 달성도와 루브릭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완료	<input type="checkbox"/>
	각 활동별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를 활용한 평가 완료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활동 정책 연계 효과 분석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과 분석	<input type="checkbox"/>
	성찰 일지와 관찰 기록을 통한 성과 분석 및 향후 개선점 기록 완료	<input type="checkbox"/>
	학교 및 학부모에게 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점 논의	<input type="checkbox"/>

3.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전략 및 방법

1) 학교 연계를 통한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각 학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활동이 학교 맞춤형 교육 자원으로 인식되도록 함
 - 예시 :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진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직업 경험 제공,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별 관심 분야에 맞춘 콘텐츠 제작을 지원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의 연계 강화: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수업 외 시간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연계함
 - 예시 : 자유학기제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직업 체험이나 디지털 안전 캠프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교 구성원과의 정기적인 협의 : 학교와의 협력 과정에서 학교의 교원이 프로그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교와의 소통을 유지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예시1)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의 협력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음. 특히, 교육청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력가능 범위를 각 학교로 정기적으로 전해 교사들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협의
 - 예시2) 매 학기마다 학교와의 성과공유 미팅을 통해 프로그램 경과-주요성과를 공유함.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에 따라 교과/비교과 연계, 활동 방식 및 활동 장소 등을 협의함
 - 예시3)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교급별 교장단협의체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정례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학교-청소년현장 연간(교육)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계획 집중수립기간인 2~3월초를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예시4) 교과별/기능별 교사협의회와 연계해 실제 실무단위에서 필요한 부분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교장단협의체와 동시-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지역 내 교사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차별화된 강점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학기 초에 학교 교사 및 교육 관계자 대상 프로그램 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 목표와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공공 청소년활동의 차별화된 장점 홍보
- 성과 공유 및 후속 조치 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와 협력한 사례와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학교와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활동이 학교와의 협력에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 예시 : 청소년의 활동 전후 효과성의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디지털 안전 인식 개선 데이터를 공유하여, 학교 교사와 함께 학생별 피드백을 반영한 후속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함. 학생들이 참여 후 남긴 피드백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그램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학교와 공유하여, 추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함

2) 청소년 체험 중심의 자기주도적 맞춤형 프로젝트 운영

- 맞춤형 활동 목표 설정 : 청소년활동이 학생의 개별 관심과 목표에 맞춰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목표를 세분화하여 설계함
 - 예시 : 진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흥미에 맞는 직업 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활동을 통해 각자 수준에 맞는 성취를 추구함
- 자기주도적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해지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 주도성이 중요해짐. 이를 강화하여 학교 수업과 차별화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이 요구됨
 - 예시 : 진로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직업군을 탐색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기 탐색 중심 활동을 마련, 디지털 활동에서는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주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양한 교과와 주제 융합 프로젝트 개발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융합형 학습이 강조되고, 청소년활동에서도 진로와 디지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체험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을 할 수 있음
 - 예시 : 진로 프로그램에서 진로와 환경,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에서 디지털과 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학제간 융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함
- 지역 사회협업형 프로젝트 제공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서 학교의 틀 안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실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제공함. 지역사회와 연결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학교에 보여줌
 - 예시 : 진로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내 직업군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적 협업과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 문제나 지역 복지와 관련된 주제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3)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 활동 강화

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 활동

- 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지역 기관, 소상공인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자원을 확보함
 - 예시 : 지역 박물관과 협력하여 역사 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
- 현장 체험 학습 운영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 이해를 제공함
 - 예시 : 소상공인과 연계해 창업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
- 성과 공유 : 체험 결과와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
 - 예시 : 현직자 초청 행사 결과와 피드백을 모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협력 강화

②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디지털 활동

- 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함
 - 예시 : 지역 대학의 컴퓨터 및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수 초청, 또는 지역 도서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기기 실습 장소를 제공함
- 현장 체험 학습 운영 :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해 디지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 습득을 제공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함
 - 예시 : 지역 기업과 협력해 IT 장비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
- 성과 공유 : 체험 학습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
 - 예시 : 지역사회에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함

4.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개요서

1)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예시)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초급(9~13세)

청소년 진로 / 디지털 활동 “0000 프로젝트” 개요서(안)					
활동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로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교급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13세 또는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4~16세 또는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17~19세 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명	가칭) 나의 꿈 찾기				
일정(기간/횟수)	6주간 주 1회, 총 6회(12차수)		대상/인원	초등학교 4~6학년 / 총 20명	
주 활동장소	00청소년센터 활동장 또는 00학교 교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및 목표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흥미와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성취기준 코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	-
	성취기준		다양한 직업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을 탐구할 수 있다.		
회기/차수별 요약	회기/차수 (소요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비고
	1회기 (80분)	다양한 직업 소개 및 역할 이해			강의 및 체험
	2회기 (80분)	나의 흥미와 강점 발견하기			자아 탐구
	3회기 (80분)	흥미와 강점에 관련된 직업 조사 및 발표			발표 및 토론
	4회기 (80분)	다양한 직업 체험(간단한 역할 놀이)			체험
	5회기 (80분)	직업 포트폴리오 만들기			개별 활동
	6회기 (80분)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발표
결과물	- 직업 포트폴리오 및 활동 보고서				
평가	- 직업 이해도 평가 - 자신만의 흥미와 강점 발견 정도 평가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을 탐구할 수 있다. - 자아 탐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 (예시)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중급(14~16세)

청소년 진로 / 디지털 활동 “0000 프로젝트” 개요서(안)					
활동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로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교급 구분	<input type="checkbox"/> 9~13세 또는 초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16세 또는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17~19세 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명	가칭) 진로 탐험가				
일정(기간/횟수)	6주 동안 주 1회, 총 6회(12차수)		대상/인원	중학생 1~3학년, 15명	
주 활동장소	00청소년센터 활동장 또는 00학교 교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및 목표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진로 목표를 구체화함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성취기준 코드
	중학교	1학년	-	-	-
	성취기준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회기/차수별 요약	회기/차수 (소요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비고
	1회기 (90분)	진로와 직업 탐구의 필요성 이해			강의
	2회기 (90분)	진로 탐색 및 흥미 탐구			자아 탐구
	3회기 (90분)	다양한 직업군 체험			체험
	4회기 (90분)	직업 전문가와의 상담			토론
	5회기 (90분)	진로 목표 설정 및 포트폴리오 작성			개별 활동
	6회기 (90분)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발표
결과물	- 진로 포트폴리오 및 활동 결과 발표 자료				
평가	- 진로 목표 설정 능력 평가 - 직업 탐색과 흥미 이해도 평가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 (예시) 청소년 진로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고급(17~19세)

청소년 진로 / 디지털 활동 “0000 프로젝트” 개요서(안)				
활동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로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고급 구분	<input type="checkbox"/> 9~13세 또는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4~16세 또는 중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7~19세 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명	가칭) 나의 미래 설계			
일정(기간/횟수)	6주 동안 주 1회, 총 6회(12차수)	대상/인원	고등학생 1~3학년, 10명	
주 활동장소	00청소년센터 활동장 또는 00학교 교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및 목표	-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진로 및 진학 컨설팅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고등학교	1~3학년	진로와 직업	-
	성취기준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회기/차수별 요약	회기/차수 (소요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비고
	1회기 (100분)	진로 목표 설정 및 진로 계획 수립 기초		강의
	2회기 (100분)	직업 탐색과 트렌드 분석		조사 및 분석
	3회기 (100분)	진로 컨설팅을 통한 목표 설정 구체화		개별 활동
	4회기 (100분)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및 미래 계획		포트폴리오
	5회기 (100분)	진로 준비 계획과 진학 정보 조사		조사
	6회기 (100분)	활동 결과 발표 및 진로 계획 피드백		발표
결과물	- 진로 포트폴리오 및 미래 설계 보고서			
평가	- 진로 목표 설정 및 구체성 평가 - 진학과 직업 준비 정도 평가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진로와 진학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 청소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예시) 청소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초급(9~13세)

청소년 진로 / 디지털 활동 “0000 프로젝트” 개요서(안)					
활동 구분	<input type="checkbox"/> 진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지털				
교급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9~13세 또는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4~16세 또는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17~19세 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명	가칭) 디지털 세상 탐험				
일정(기간/횟수)	6주 동안 주 1회, 총 6회(12차수)	대상/인원	초등학생 4~6학년, 20명		
주 활동장소	00청소년센터 미디어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및 목표	-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형성함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성취기준 코드
	초등학교	5~6학년	-	-	-
	성취기준		-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회기/차수별 요약	회기/차수 (소요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비고
	1회기 (80분)	디지털 기기 기본 사용법 배우기			강의 및 체험
	2회기 (80분)	비밀번호 설정과 정보 보호 기본 교육			체험
	3회기 (80분)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토론
	4회기 (80분)	올바른 온라인 행동 이해와 실습			강의 및 실습
	5회기 (80분)	안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법			체험
	6회기 (80분)	활동 결과물 공유 및 피드백			발표 및 토론
결과물	- 안전한 디지털 사용에 대한 발표 자료 및 실습 보고서				
평가	- 디지털 기기 사용법 습득도 평가 - 정보 보호 인식 변화 평가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청소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중급(14~16세)

청소년 진로 / 디지털 활동 “0000 프로젝트” 개요서(안)				
활동 구분	<input type="checkbox"/> 진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지털			
교급 구분	<input type="checkbox"/> 9~13세 또는 초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16세 또는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17~19세 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명	가칭) 데이터와 정보의 세계			
일정(기간/횟수)	6주 동안 주 1회, 총 6회(12차수)	대상/인원	중학생 1~3학년, 10명	
주 활동장소	00청소년센터 컴퓨터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및 목표	-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중학교	1학년	-	-
	성취기준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기/차수별 요약	회기/차수 (소요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비고
	1회기 (90분)	디지털 정보의 이해와 중요성		강의
	2회기 (90분)	간단한 데이터 수집 및 정리		실습
	3회기 (90분)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상황 분석 및 논의		개별 활동
	4회기 (90분)	팀별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도출		팀 활동
	5회기 (90분)	디지털 정보 활용 사례 발표 준비		실습
	6회기 (90분)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발표 및 토론
결과물	- 팀별로 분석한 데이터 자료 및 문제 해결 계획서			
평가	- 디지털 정보 이해 및 분석 능력 평가 -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 및 소통 능력 평가			
기대효과	-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협력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 - 팀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함			

○ (예시) 청소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 고급(17~19세)

청소년 진로 / 디지털 활동 “0000 프로젝트” 개요서(안)				
활동 구분	<input type="checkbox"/> 진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지털			
고급 구분	<input type="checkbox"/> 9~13세 또는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4~16세 또는 중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7~19세 또는 고등학교			
프로그램명	가칭)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			
일정(기간/횟수)	6주 동안 주 1회, 총 6회(12차수)	대상/인원	고등학생 1~3학년, 15명	
주 활동장소	00청소년센터 미디어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내 <input type="checkbox"/> 실외 <input type="checkbox"/> 야외			
운영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 <input type="checkbox"/> 개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 및 목표	- 청소년들이 콘텐츠 제작 기술을 익히고, 디지털 윤리를 인식하며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	학년(군)	과목	영역(단원)
	고등학교	1~3학년	-	-
	성취기준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 윤리를 고려함	
회기/차수별 요약	회기/차수 (소요시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개요		비고
	1회기 (100분)	콘텐츠 기획과 스토리보드 작성		강의 및 토론
	2회기 (100분)	영상 편집 기초 배우기		체험
	3회기 (100분)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 이해하기		강의
	4회기 (100분)	콘텐츠 제작 실습 : 영상 촬영과 편집		실습
	5회기 (100분)	디지털 윤리를 고려한 최종 콘텐츠 완성		팀 활동
	6회기 (100분)	완성된 콘텐츠 발표 및 피드백		발표 및 토론
결과물	- 제작된 영상 콘텐츠 및 스토리보드			
평가	- 콘텐츠 제작 기술 습득도 평가 - 디지털 윤리 인식 변화 평가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함			

3) 청소년 진로/디지털 활동 지도안

① 청소년 진로 활동 지도안

청소년 진로활동 “0000 프로젝트”					
과정명	진로 탐색과 목표 설정 프로그램	강의 시간	-	대상	중 2 / 15명
주제	청소년과 직업전문가 소통을 통한 진로 경험과 목표 구상	차시	단회기 / 90분	장소	00청소년센터 다목적실
최종활동목표	-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목표를 설정함				
세부활동목표	- 주어진 정보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함 - 직업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함				
준비물	지도자/교사		참여자		
	교육 PPT, 직업 카드, 진로 목표 작성 템플릿, 루브릭 평가표		필기구, 진로 탐색 설문지, 포트폴리오 작성지 등		
운영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모둠) 활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자기평가)				
단계	학습과제	활동-교육 과정		참여자 활동	참고
도입	주의집중	- 아이스브레이킹 : 직업 카드를 활용해 자신이 가장 흥미로운 직업군을 선택하고 이유 발표		- 흥미로운 직업군 선택 후 발표	직업 카드 활용
	학습목표 제시	- 활동 목표와 최종 목표를 PPT로 안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음을 독려		- 목표 확인 및 활동 참여 준비	교육 PPT
전개	진로탐색 활동	- 진로 탐색 설문지 작성 후, 흥미가 있는 직업군을 중심으로 직업 특성 조사		- 설문지 작성 및 직업군 탐색	진로 탐색 설문지
	전문가 소통	- (예시)직업상담사와의 대화 통해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전문가 소통 및 진로 정보 수집	직업상담사, 질의응답 시트
	진로목표 설정	- 포트폴리오 작성지에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진로 목표 설정 후 발표	포트폴리오 작성지
정리	정리 및 피드백	- 루브릭 평가표를 활용한 자가 평가와 지도자의 피드백 제공		- 자기 평가 및 활동 성찰	루브릭 평가표 진로 목표 성찰지

청소년 진로활동 “0000 프로젝트”평가 루브릭				
평가항목		평가요소		
		A	B	C
활동	직업 탐색 능력	다양한 직업군을 정확히 이해하고 탐색함	일부 직업군에 대한 탐색 수행	직업 탐색에 어려움이 있음
	소통 능력	직업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필요한 정보 습득	일부 질문과 답변으로 정보 이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목표 설정 능력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이 불분명함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② 청소년 디지털 활동지도안

청소년 디지털활동 “0000 프로젝트”					
과정명	디지털 정보 분석과 협력 탐험	강의 시간	-	대상	중 2 / 15명
주제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향상	차시	단회기 / 2시간 (90분)	장소	000센터 IT 교육실
최종활동목표	-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세부활동목표	-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초를 이해한다. -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준비물	지도자/교사		참여자		
	교육 PPT, 데이터 샘플, 시각화도구, 루브릭 평가표		필기구, 기획 노트, 개인 스마트기기		
운영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모둠) 활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자기평가)				
단계	학습과제	활동-교육 과정		참여자 활동	참고
도입	주의집중	- 아이스브레이킹 :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 사례 공유		- 각자 사례 공유 및 의견 나누기	개인 스마트기기
	학습목표 제시	- 디지털 정보 분석과 협력의 중요성 설명 - 프로그램 목표와 기대효과 안내		- 목표 이해 및 활동 준비	교육 PPT
전개	정보수집 정리	- 사례 데이터 제공 - 데이터를 정리하고 간단히 시각화하는 방법 안내		- 제공된 데이터를 정리/시각화 실습	데이터 샘플, 시각화 도구
	정보분석 토론	- 팀별 데이터 분석 및 문제 상황 도출 - 도출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 논의		- 팀원들과 협력해 문제 분석/토론	팀별 협력 시트
	해결방안 도출	- 협력 결과를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발표 준비		- 팀별로 발표 자료 작성	발표 준비 자료
정리	발표 및 피드백	- 팀별 발표 및 질의응답 - 루브릭 평가표 활용하여 피드백 제공		- 발표 후 자기평가 팀별 피드백 공유	루브릭 평가표, 자가 평가 일지

청소년 디지털활동 “0000 프로젝트”평가 루브릭				
평가항목		평가요소		
		A	B	C
활동	정보 분석 능력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하고 분석함	일부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함	분석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
	협력 능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함	협력이 다소 부족함	협력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문제 해결 능력	적절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함	일부 해결 방안이 미흡함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움

IV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유도

나.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평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시·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8. 6. 13일부터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사업 주요내용

- (평가대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흡수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짝수해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사업기간) '25. 1월 ~ '24. 12월(12개월)
- (평가대상 기간) '23. 1. 1 ~ '24. 12. 31(2년간)
 - ※ '23년도 중에 등록된 시설은 등록시점부터 '24.12.31까지 운영실적 평가
- (평가분야) 운영 및 관리, 청소년이용 및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 및 안전, 시설운영 발전의 총 5개 분야

○ (평가지표) '23년 확정*된 평가지표를 일부 개선하여 반영('25)

*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피 평가시설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 말 확정 완료

○ (평가방법)

- 수행기관이 주관하고 청소년학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개별시설에 평가결과(안)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이행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1 제1항의 사고, 제70조 및 제72조의 처벌(분) 결과 반영

○ (평가등급)

평가등급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점수 (100점기준)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미만

라. 평가등급의 조정 및 감점

○ 관련규정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5조

○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기간 중 아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의 사고 발생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및 제72조(과태료) 처벌(분)을 받은 경우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조정 및 감점 기준 ■

구 분	기 준
청소년활동진흥법 20조의2 제1항 사건발생	감점(10점) 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청소년활동진흥법70조(벌칙)	유죄확정시 등급조정
청소년활동진흥법72조(과태료)	1건당 1점 감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급 조정 또는 감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등급 조정 또는 감점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유예 가능
- 종합 안전·위생 점검과 연계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 시 보완이하*로 조정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평가
 - 평가자료 제출거부시 0점 처리

마. 평가거부의 기준

- 평가기간 중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평가거부로 보며,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미제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함

바.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 및 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대국민 공개*
 - *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 미이행시 시정명령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과태료부과,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독 실시
 - * 종합평가 자료제출 거부 및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흡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지자체에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여부 확인(년 2회 이상)
 - (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피드백
 - (기초지자체) 개별시설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수련시설) 지적사항 개선 추진
 - (유관기관 등)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등급이하 시설 컨설팅 강화

○ 성적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성적 우수시설에 대해 “최우수시설” 인증 표식 게시 (2년간)

* 종합평가 시설의 10% 수준 선정

- 장관상 시상 및 부상 제공* 등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등급 시설 중에서 20개소** 선정(시설유형 고려)

사. 사업추진 절차

계약단계	조달계약 의뢰, 입찰 공고	2024.11 ~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계약 의뢰(조달청) 및 입찰 공고 ■ 평가지표 확정 ■ 제안서 심사(기술능력 평가)
	계약	20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평가준비 단계	사업설명회 개최 및 평가위원회 구성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 보고 ■ 평가편람 작성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 종합평가 사업관련 설명회 개최
	자체평가표 작성·제출	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표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자체평가표 미제출 시설 평가참여 독려
평가실시 단계	서면평가 실시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시설별 서면조사표 심사
	현장평가 실시	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정리 및 확정	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중간보고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내용 심의 및 반영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단계	종합평가 결과 공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지자체 통보 ■ 평가결과 일반공개, 우수기관 포상 (여가부, 활동정보서비스)
	평가보고서 작성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후속조치 ■ 세부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 평가지표	미흡시설 컨설팅 및 평가지표 개발	2026. 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미흡등급 컨설팅 추진 ■ 평가지표 개발

※ 상기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가. 목 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설개선 및 안전성 확보

나. 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추진경과
 - 2006년부터 종합 안전점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평가실시 의무화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 2015. 8월부터 법적 결과공개 의무
 - 2018년부터 안전점검에 위생 분야 추가(시행 '17.9.22.)
 - 안전점검 미참여 수련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행 '18.6.13.)

다. 사업 주요내용

- (점검대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출수해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 짝수해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 점검주체별(여가부, 지자체) 점검시설 목록 및 일정은 별도 안내
- (점검분야) 7개 분야(건축·토목·기계·가스·소방·전기·위생)
- (등급판정)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 고
건축·토목·기계·소방	A, B, C, D, E(5등급)	D·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가스·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라. 세부 점검방법

1. 중앙 점검

- (점검대상) 점검시설 목록은 별도 안내
- (점검시기) 4월~10월 중 시설별 일정조율 후 추진
- (점검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문기관 연계점검

2. 지자체 점검

- (점검대상) 점검시설 목록은 별도 안내
- (점검기간) 4월~10월 중 시설별 일정조율 후 추진
 - * 지자체 여건(재난부서 예산사용 등)에 따라 (행안부)집중안전점검 연계(당해 점검 1회로 같음) 가능하며 이 경우 '25년 집중안전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시 지자체 자체수행시설로 등록
 - **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점검 시 점검표 양식은 필히 '종합 안전·위생 점검 점검표' 활용
- (청소년담당 공무원 점검) 운영* 및 위생**
 - *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규정사항
 - ** 시·군·구 위생부서 집단급식소 점검을 제외한 청소상태 등 환경 점검
 - ※ 집단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식약처 등 접부합동 점검 별도실시
- (전문가* 점검) : 시설(건축·토목·기계), 소방, 전기
 - *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각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차" 항목 참조)
- (점검결과) '25.10.31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시스템제출
 - * 시·군·구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YSMS) 내 결과 입력 및 점검결과표 스캔본 첨부 제출
 - * 광역 시·도 : 관할 시·군·구 점검 결과를 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및 최종 제출
 - * 시스템담당자 연락처 : ☎ 02-6959-7122, 7125(활동안전부)

마. 지자체공무원 대상 안전점검관련 교육실시

- 신규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실시
 - *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 나라배움터 탑재

바. 종합평가와 연계

- 7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가스·소방·전기·위생)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 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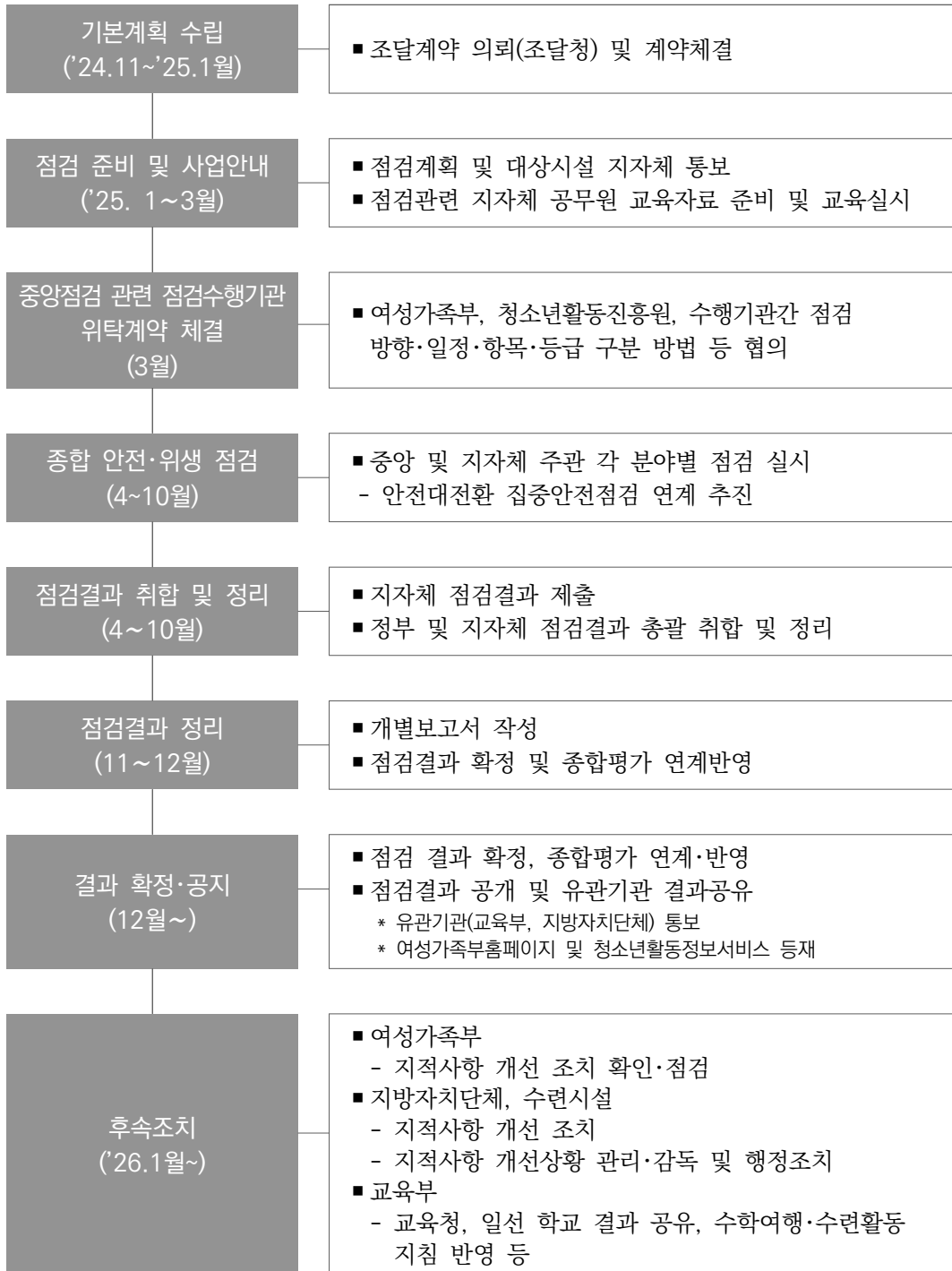
사. 점검결과 활용 및 조치

- (여가부) 점검 등급 등 결과를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공개 ⇒ 점검거부 시설명도 공개
- (여가부)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시설별 세부 점검 결과 안내(해당 시설 및 지자체)
 -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YSMS)에 점검결과표 등록
- (지자체) 결함 등 점검 지적사항은 개·보수 시정명령 및 조치이행 여부확인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치
- (지자체) 점검 거부 시설은 과태료 부과 조치

아. 지적사항 관리

- 종합안전·위생점검 지적사항 관리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YSMS)에서 지적사항 개선계획 및 개선여부 등 실시간 입력·관리

자. 사업추진 절차



차. 점검 인력 자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따른 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건설안전, 소방, 가스 등)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각 해당분야(건축, 전기·전자, 안전관리 기계 등)의 기사 취득 후 경력이 4년(산업기사의 경우 7년) 이상인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건축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소방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소방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의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전기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전자 직무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의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가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따른 가스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해당분야(건축, 토목, 소방 등) 안전점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공무원 포함

1

개요

가. 목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인성 함양,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 지도사의 배치 등)
- 추진경위
 - '03년도부터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사업을 추진
 - ※ 배치실적: ('11년) 316명, ('12년) 351명, ('13년) 349명, ('14년) 368명, ('15년) 374명, ('17년) 374명, ('18년) 374명, ('19년) 414명, ('20년) 430명, ('21년) 428명, ('22년) 430명, ('23년) 430명, ('24년) 430명

다. 2025년 예산

- '25년도 예산액(국비): 3,533백만원
 - ※ 1인당 연간 지원액(국비 30%+지방비 70%)
 - 기본급: 1급 2,688만원, 2급 2,632만원, 3급 2,608만원
 - * 월 1급 224만원 2급 219.3만원 3급 217.3만원 지원
 - 정규직전환 수당: 284.3만원 이내

2 기본 방향

- 활동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중심으로 수련활동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에 우선 배치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되, 1시설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청소년지도사의 배치(채용)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
- 배치 청소년지도사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또는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 담당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 운영프로그램 또는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실적 등의 성과(시설별 1개) 및 이용자(청소년, 학부모 등)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환류(분기별 1회 이상)

3 배치지원 계획

가. 배치대상 시설 및 인원 기준

- (지원 대상 및 인원)
 -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시설
 - * (청소년수련원) 기존 지원시설에 한하여 지원중
 - ※ '18년부터 기존 지원자 퇴사 시 추가지원 불가(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 시 발견 즉시 지원 중단) 다만, 생활권으로 전환 시 변경 보고 후 지원 가능
 - 지원 인원 :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30%)
- (지원 제외대상)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미준수 시설은 제외, 다만
 - ① 도서 및 산간 지역*으로 지도사 구인이 어려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 ② 퇴사로 인한 일시적인 배치기준 미준수 시설은 지원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 기존 지원시설 중 배치기준을 미준수 시설은 준수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도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25.7월까지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 시 구인공고실적도 함께 제출(미제출 및 미공고 시설은 익년도 사업 제외)

- 청소년수련관 내 문화의집

※ 청소년수련관(수련원 포함)내 문화의집이 설치된 경우 수련관 또는 문화의집 중 1개 시설에만 배치 지원

나. 지원 인원 및 지원액

○ '25년도 배치계획

구 분	시설수 (개소)	지원인원(명)			
		소계	1급	2급	3급
합 계	430	430	34	390	6
청소년수련관	142	142	9	132	1
청소년문화의집	285	285	25	255	5
청소년수련원	3	3	-	3	-

○ 1인당 월 국비 지원액(월 기본급의 30%)

1급 : 월 672천원, 2급 : 월 658천원, 3급 : 월 652천원

※ 지방비 포함 시 : (1급) 월 224만원 (2급) 월 219.3만원 (3급) 월 217.3만원

○ 기타 제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은 반드시 별도(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체임금 적용으로 국고보조금 월 기본급보다 자체임금의 기본급이 적은 경우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 배치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한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지방자치단체는 배치지도사 보수 책정시 지도사 간 임금불균형 해소 노력

○ 정규직 전환 수당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자체 직영시설 또는 직영에 준하는 위탁운영 형식의 시설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설립재단 등)에 채용된 인력
- 지원수당 : 연 853천원(국비)
 - ① 복지비 : 최대 145천원 / 년(483천원 × 30%)
 - ② 급식비 : 최대 468천원 / 년(130천원 × 12개월 × 30%)
 - ③ 명절휴가비 : 최대 240천원 / 년(400천원 × 2회 × 30%)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름

다. 배치 청소년지도사 담당임무(역할)

○ 청소년지도사 담당임무(역할)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
 - 청소년 대피훈련·이용자 안전교육 등 안전업무
- ※ 동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지적('18~'19)으로 성과 관리를 위한 필요성 대두(붙임 4-2)

(지적사항)

- 청소년지도사 활동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데 상세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
- 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우수평가 사례가 없어 아쉬움

○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위 담당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위탁법인 업무 등은 수행 불가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조건

- 각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70% 이상 확보해야함
- 배치 지도사 퇴사시 신규 인력 채용없이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환 금지
 - 다만, 기존 지도사를 배치지도사로 전환하고 공식인 자리에 다른 청소년지도사를 신규채용을 한 경우 예외 인정(급수 변경 불가)

- 시설(재단 포함)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업무가 변경된 경우도 인정
 - * 기존 미준수 시설 및 수련원 해당안됨
 - * 기존 근무자 지원 사실 발견시 차년도 지도사 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신규채용자는 정산보고 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제출)
 - * 7~8월 추진실적 점검시 관련 내용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안전점검 등 국가 시책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원 제외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 각 시·도에서는 반기별 추진실적 제출 시 배치기준 준수현황 포함 제출 :
 - 【붙임 3】 양식
 -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등 개별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는 배치기준에 따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라 인력 채용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배치할 경우 부족한 인건비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배정된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배치할 경우 보조금 잔액 반납
 - ※ 기 배치지도사자의 지도사 자격등급 변경으로 인한 상위등급 채용은 가능

4

배치 청소년지도사 선발 및 배치 절차

가. 청소년지도사 모집

- 모집 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 해당 청소년시설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체 모집 가능
 - ※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와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선발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 *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하고, 기타 세부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청소년 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링크 가능

○ 자격 요건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을 취득(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해당연도 자격연수 신청자 포함*)하고 창의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전담·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자
 -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
 - 청소년관련 전문연수 이수 등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 활동 실기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
 -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 분야에 폭 넓은 지식과 비전을 소유한 자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청소년시설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그 자격을 갖춘 자

○ 중도 퇴사 시 후임자 모집 시기

- 중도 퇴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재직 중인 청소년지도사에게 사전 공지)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전임자 퇴사 전에 모집

나. 청소년지도사 선발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원칙, 필요시 실기 추가 가능
- 선발원칙 : 공개모집 ☞ 반드시 자격요건에 맞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
 -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 향후 채용기간 연장 여부는 근무태도 및 업무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해당시설에서 판단
- 미 개원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 개원 일정을 고려하여 시·도별 자체계획을 수립,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발
 - * 개원 1개월 전부터 근무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근로조건 및 임금

○ 근로계약 체결

- 해당시설에서는 선발된 청소년지도사와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체결(근로기준법 준용)

☞【붙임1】 표준 근로계약서 참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탁단체(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등

-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단체(기관) 변경 시 청소년지도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중도 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

○ 근무조건, 임금 등

- 복무 : 근무시간, 공가·휴가, 업무분장 등은 해당시설의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준용
- 임금

〈기본급〉

- 지도사 1급 : 월 224만원 이상(국비 672천원, 지방비 1,568천원 이상)
- 지도사 2급 : 월 219.3만원 이상(국비 658천원, 지방비 1,535천원 이상)
- 지도사 3급 : 월 217.3만원 이상(국비 652천원, 지방비 1,521천원 이상)
- 지급 방법 : 보수는 매월 당해 시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도 퇴직자 및 충원으로 인한 후임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수 외 각종 수당 추가 지급〉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지도사에게 보수(국비·지방비부담)외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기말수당, 자격수당, 기타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4대 보험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가입
- 사용자 법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퇴직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 적용
 - 배치지도사에 대해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한 임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서 별도 예산으로 부담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시·도에서는 '25.1.10까지 국고 보조금 신청 :【붙임 2】 양식
- 여성가족부에서 3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시·도에서는 상반기 추진 실적을 7. 31.까지 배치 추진실적, 배치기준 준수현황, 담당임무(역할) 추진실적 제출 :【붙임 3】 양식
- '25.6월까지 공석이 발생한 경우 7.31까지 구인공고 실적 제출(향후 정산과 비교)
 - 구인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익년 사업에서 제외

횟수	구인실적			
1	구인공고기간		구인공고방법	
	관련자료 캡처			
2	구인공고기간		구인공고방법	

○ 시·도에서는 '26. 1. 31.까지 배치지원 사업 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

【붙임 4】 양식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결과 필히 포함(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배치 청소년지도사가 참여한 프로그램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②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현황

구 분	시설명	수용 정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A)				2025년 현재 배치현황(B) (국비지원 청소년지도사 제외)				증감(C=B-A)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기준 충족 여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420	1	1	2	4	1	2	1	4	0	1	-1	0	○
	○○청소년 수련관	750	1	1	3	5	0	2	3	5	-1	1	0	0	×
	소 계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의집	
	××문화의집	
	소 계	
청소년 수련원	○○수련원	
	××수련원	
	소 계	
합 계		

【붙임 4】

2025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 시·도명 :

□ 사업개요

- 목적 :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 지도를 통해 인성 함양, 도전정신 등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5. 00 ~ 00
- 지원내용 : 청소년지도사 00명 배치지원

□ 사업결과

- 배치지원 사업 추진실적 : 붙임 참조 ☞ 붙임4-1양식
- 배치 청소년지도사 추진 성과·실적(※세부결과 붙임) : ☞ 붙임4-2양식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세부결과 붙임) ☞ 붙임4-3양식, 시·도별 제출양식만 제출

시설수(개)	프로그램(개)	항목별 조사결과			
		1	2-1	2-2	2-3

□ 보조금 정산결과(※ 세부결과 붙임) ☞ 붙임4-1양식에 포함 (단위 : 원)

합 계				국비				지방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위와 같이 2025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1. .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4-2】

2025년도 배치 청소년지도사 추진 성과·실적 증빙자료 제출양식(시도명)

* 엑셀 양식에 작성 및 제출(①, ③)

① 배치 청소년지도사 운영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실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인원(연인원)
계			

② 청소년 안전교육 또는 활동프로그램 관련 외부 홍보실적 등 성과 제출(시설당 1개)

jpg파일 또는 pdf파일

〈보도날짜 기사제목(언론사) 순 기재〉
〈예시: 251221 청소년~~~(한국일보)〉

- ※ 대피·안전관리·안전교육 등의 안전과 관련 내용 홍보·성과 실적 제출 우선
(없으면 활동프로그램 홍보·성과 제출 가능)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기사 제출 필요X)
- ※ 용량이 클 경우 시·도 담당자가 시도별 10개 정도로 추려서 제출 가능

③ 청소년(또는 이용자) 대피훈련·안전교육 운영 실적 현황

운영일시	장소	내용	대상	참여인원
계				

【붙임 4-3】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도별 제출양식〉

□ 시·도명 :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시설수(전체) :
- 프로그램수(전체) :
- 조사인원(전체) : ○○명
- 항목별 조사결과

조사항목	조 사 결 과	비 고
1.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 분야별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1. 프로그램		평균점수 기재
2-2. 지도자		평균점수 기재
2-3. 시설/환경		평균점수 기재
3. 인식조사		
3-1. 참여 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2. 참여 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3. 참여희망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항목별 비율
3-4. 충족여부		평균점수 기재
3-5. 도움여부	① % ② %	항목별 비율
3-6. 도움이된 점		요약기재
4. 기타		요약기재

- ※ 1. 평균점수 : 5점 만점으로 기재
2. 각 시설별 설문조사결과 첨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설별 작성양식)

- 시 설 명 :
- 프로그램명 :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인원 : ○○명
 - 항목별 조사결과

항 목	조 사 결 과	비 고
1.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 분야별 만족도		평균점수 기재
2-1. 프로그램		평균점수 기재
2-2. 지도자		평균점수 기재
2-3. 시설/환경		평균점수 기재
3. 인식조사		
3-1. 참여 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2. 참여 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항목별 비율
3-3. 참여희망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항목별 비율
3-4. 충족여부		평균점수 기재
3-5. 도움여부	① % ② %	항목별 비율
3-6. 도움이된 점		요약기재
4. 기타		요약기재

※ 평균점수 : 5점 만점으로 기재

설문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 본 설문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시설 운영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각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해당 질문 만족도 체크란에 “✓” 표시를 해주시고, 단답형은 요점만 간략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교 급	성 별
초() 중() 고()	남() 여()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I. 다음은 참여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로그램명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II. 다음은 각 분야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분 야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러하 지 않다	매우 그러하지 않다
프로 그램	1.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2.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3. 흥미롭고 유익했다.	⑤	④	③	②	①
	4. 진행은 나의 수준에 적합했다.	⑤	④	③	②	①
	5.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자재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았다.	⑤	④	③	②	①
지도자	1. 친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2. 열성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3.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이끌어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4. 청소년들을 존중하며 활동을 지도했다.	⑤	④	③	②	①
	5. 폭언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가르쳐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시설/ 환경	1. 활동시설은 청소년에게 맞게 갖추어져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편의시설(매점, 자판기 등)이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대피로 등 시설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Ⅲ. 다음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어떠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① 자율적 청소년 활동 ② 학교의무 행사 ③ 자연친화적 활동 ④ 문화체험 활동
 ⑤ 강압적 극기 활동 ⑥ 공동체 활동 ⑦ 기타 (적어주세요:)
2. 귀 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떠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율적 청소년 활동 ② 학교의무 행사 ③ 자연친화적 활동 ④ 문화체험 활동
 ⑤ 강압적 극기 활동 ⑥ 공동체 활동 ⑦ 기타 (적어주세요:)
3. 귀 하가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한가지 만 선택해주세요.
 ① 봉사과 협동심 함양에 필요한 프로그램
 ② 인권폭력 예방에 필요한 청소년 인권보호 프로그램
 ③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④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⑤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⑥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⑦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⑧ 기타(적어주세요:)
4. 귀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부족했던 과정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① 매우 아니다
5. 귀하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Ⅳ.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VI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1

신고제 이해

1-1

사업 개요

- (개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련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1-2

신고 대상

- (신고 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신고 주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한 경우)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 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고 대상 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
 -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활동 범위)
 - 숙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2 신고 절차

2-1 신고제 추진체계

구분	주요기능
여성가족부	신고 업무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보완 요청
시·군·구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www.youth.go.kr) 운영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청소년수련활동 불편사항 등 접수 모니터링 신고지원 인력 확보(신고 교육, 모니터링, 보완사항 검토 등)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신고서 제출 신고 수리 후 규정 준수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2-2 신고 관련 업무 절차

- 주최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리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모집 14일 전)
 - 원칙적으로 신고시스템(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을 통해 신고 접수하도록 함
 - * 각 기관 민원담당 부서에 요청하여 새올행정시스템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신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
 - 오프라인으로 접수받아 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사항과 접수된 신고서 일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가 등록*
 -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내 업무지원서비스를 통해 등록
 - *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서 일체를 시스템(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삭제(음영) 처리 후 등록 실시
- 처리기관에서는 접수 후, 구비서류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처리하고, 보완요청의 경우 보완 요청 기한 내* 신고자가 보완요청사항 미 이행시 신고 반려 가능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력유무(有無) 등 조회 후 경력확인에 따라 별도확인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당 등록기준지 시·군·구에만 요청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조회는 시·군·구 담당자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권한을 각각 받아 모두 확인
 - 행안부·경찰청의 조회 절차개선에 따라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를 통합조회
 - * 하나의 조회메뉴를 통해 통합 조회 가능, 다수건(500~1,000건)조회도 일괄 처리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내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가이드' 등 참조

민원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자

구비 서류제로화(행정정보공동이용) 교육 안내

24.10.15.(화)까지 교육 참석자 명단 회신 요청



나의 이용사무

+ 나의 이용사무 관리

내부

결격사유 유무 조회

메뉴 이동

내부

범죄경력 유무조회

메뉴 이동

퀵 메뉴



마이스크린
설정



열람권한 신청



열람권한 신청 결 요구서 접수(방문)



전자증명서 조회



메뉴 추가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교육 자료실

- [필독] 하반기 (구비서류 제로화) 행정정보공동이용 기관 담당자 교육 참석 안내
- [필독]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개정에 따른 운영방안 변경 안내
- [필독]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안내
- [필독] 2024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점검 안내
- [필독] 전입신고 민원사무 관련 공지

범죄경력 유무조회 주의사항

1. 범죄경력 유무조회 처리완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판결문 등 확인필요시, 다수건 요청 시 연장가능)
2. 관할경찰서의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아래 화면에서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검증결과 수신' 버튼을 눌러 처리결과를 수신해야 합니다.
3. 범죄경력 처리결과에는 '대상자 검증일'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격범죄 통합조회 신청

전체 0건

번호	신청구분	대상자명	결과확인	등록일시	출간수	처리상태

출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관·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결격·범죄 통합조회 근거법령검색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번호	법령 구분	조회 요청	법령명	법령조회
1	범죄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법령조회 > 조문보기
2	범죄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법령조회 > 조문보기
3	범죄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범죄경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법령조회 > 조문보기

열람신청전에 사전동의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9조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동의를 받았음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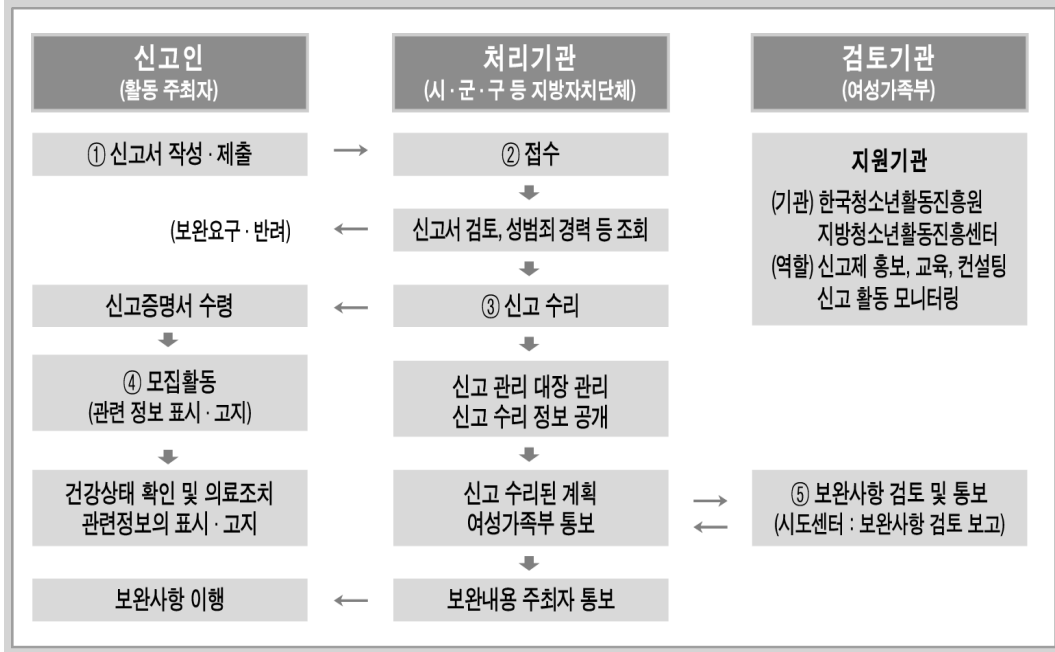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아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5.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6.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 7.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군·구 담당자가 “결격사유/범죄경력” 모두 체크하여 조회(또는 통합조회)하고, 근거법령은 반드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검색, 사전 동의는 별도 요하지 않음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2)

- 신고 수리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내 업무지원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신고 관리 대장에 기록
 -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경우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급 가능하며, 신고 수리 후 별도 정보 등록 절차 불필요
 - 신고관리대장의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등록 시(시스템 수리 완료 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이 자동 생성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 사전 등록 필요
- 처리기관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를 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보완사항 통보
 - * 시스템을 통해 신고 시 여가부로 자동 통보 되므로 별도 미 통보
 - ** 여성가족부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고 수리된 계획의 보완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처리기관에서는 주최기관에 활동 실시 전 보완을 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
- 주최자는 신고 수리 후 모집 시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
- 미신고자 또는 신고수리 후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신고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 금지
 - 신고수리 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합동으로 신고 수리 활동의 이행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모니터링) 실시
-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변경 사유, 관련 서류를 처리기관에 제출
 - 변경 가능 범위(예시)
 - *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 * (활동장소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 *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신고 수리 절차 ■



2-3 신고 시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1 운영기준 준수(시행규칙 제1조의2)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서로 제출
 - * 대규모(청소년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인증을 받아야 신고 수리 가능
 - * 유스호텔은 수련시설 설치 시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 내에서만 수련활동 운영 가능
 -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조치 후 프로그램을 주최 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표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준 2. 프로그램 운영 '사'항 참조)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보험증권 등 법 제25조에 따라 주최자가 가입한 보험 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보험가입 청약서 등 보험가입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서류는 신고제출 서류로 부적합
 - * 보험 보장금액이 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이상, 부상 1급 3천만원 이상 등 가입 확인

2-4 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 처리기간이 14일이나 가급적 빠른 처리로 주최기관의 참가자 모집 등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보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제2항 및 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에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됨(18. 9. 14일부터 시행)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연계·협력
 - 주최기관에서 신고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각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신고제 컨설팅 및 설명회, 불편 사항 처리, 신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신고제 업무에 지자체 적극 협조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전문기관임

-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확인 사항
 - 운영계획서 대신 첨부된 인증서의 각 항목과 신고서 및 세부내역서 일치 여부 확인
 - * 결격사유 조화, 세부내역서 및 보험가입 확인 등은 미인증 수련활동 신고 수리 검토 시와 동일



■ 필수 확인 사항

- 인증번호 일치 여부
- 운영기관명 일치 여부
- 활동명 일치 여부
- 인증기간(유효기간) 내 신고 여부
- 참여대상 및 인원 일치 여부
(신고서의 인원이 인증서의 인원보다 많은지 등 확인)

- 신고 된 활동이 법률 위반사실 없이 신고하였는지 시·군·구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신고 수리 후 신고 한 바와 같이 운영하는지 등 세심한 관리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보완 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한 경우 보완 내용을 주최자에 통보하고, 보완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시·군·구별 신고 현황과 신고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시·도에서 취합하여 여성가족부 제출
 - 상반기 : '25. 7. 15. 까지
 - 하반기 : '26. 1. 15. 까지

【참고】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유형 구분	프로그램명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 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 지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및 의무 인증 대상

구 분		신고대상	의무인증대상
영리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수련시설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회원 대상 실시의 경우)	×	×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비회원 대상 실시의 경우)	×	○
종교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보호자*와 함께 하는 활동 * 참가자개별보호자(부모)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타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 신고 제외 대상

제외대상	예 시
<p>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교육관계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p>※ 상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영리법인·단체는 신고 대상 ※ 지도·감독에 해당 않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에 따른 수련활동 실시 제한 대상</p>
<p>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p>	<p>- 참여 청소년의 개인별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p> <p>※ 모집 시 보호자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p>
<p>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활동</p> <p>※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및 개별단체 •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
<p>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p>	<p>-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미만인 수련활동</p> <p>-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p>

○ 신고 수리 시 점검 사항

구비서류	점 검 항 목		확인
1.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대상이 맞는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지도자가 함께하는 활동인가?)	
	②	신고서의 공란 및 첨부서류의 누락은 없는가?	
	③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활동인가?	
	④	신고가 모집 14일전까지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하였는가?	
	⑤	주최자가 법 제9조의6 제한 대상 단체(개인)에 포함되지 않는가?	
2.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①	신고서 및 운영계획서 등 제출한 다른 서류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②	세부내역서 내용을 충실히 모두 기재하였는가?	
	③	프로그램명과 활동기간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동일 프로그램의 경우 연 진행기간을 기재)	
	④	19세 미만 대상으로 위험도 높은 활동, 청소년 150명 이상의 의무인증이 필요한 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⑤	지도인력의 인원수는 작성하였는가? (지도자 명단과 일치확인)	
	⑥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명과 운영내용이 작성되어 있는가?	
	⑦	위탁프로그램은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시간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가?	
	⑧	신고활동의 명칭 등으로 볼 때 대표가 되는 사항을 위탁하고 있지 않은가?	
	⑨	제3자가 프로그램의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제3자의 위탁 활동의 보험 가입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가?	

구비서류	점 검 항 목	확인
3.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① 참여하려는 모든 지도자를 신고하였는가?	
	②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전문·일반·보조지도자)	
	③ 신고 된 모든 지도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였는가?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조회,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확인 등)	
	④ 신고 된 활동에 필요한 자격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가?	
4.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자유양식_인증 수련 활동의 경우 제출 면제)	① 프로그램 진행 내용과 일정 및 내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가?	
	② 사고, 환자 발생에 대비한 책임 소재 및 사전관리가 명확히 계획되어 있는가? (보험가입, 긴급후속대책, 사전 안전점검사항 확인)	
	③ 활동 전 참가자와 지도자의 안전교육 시행 계획이 있는가?	
	④ 활동 및 숙박 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⑤ 프로그램의 자원은 구체화시켰는가?(기자재, 소요 예산 등)	
	⑥ 프로그램 운영 중 충분한 휴식,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하려는가?	
	⑦ 지도자의 역할, 적정인원 배치 확인 할 수 있는가?	
	⑧ 지도자(제3자 운영활동 포함)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⑨ (이동형의 경우)이동 관리 계획을 포함하였는가?	
	⑩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 위법 사항이 없이 운영되는가?	
	⑪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인 경우 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가?	
5. 보험가입현황 확인	① 가입한 사실이 증명된 보험서류를 제출하였는가?	
	② 신고하려는 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	
	③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장금액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④ 가입한 보험이 신고한 활동 전체를 보장하고 있는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 업무 지원 담당자 연락처

지역	연락처	주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내선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울	02-849-04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	
	부산	051-852-346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대구	053-659-6210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인천	032-833-80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주	062-234-0755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7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D동 1층	
	대전	042-488-07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울산	052-227-0607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세종	044-864-7935 세종특별자치시 마우로 284 2층 (고운동, 고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경기	031-232-9383(내선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3층	
	강원	033-731-3704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033-641-399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청소년수련관 2층
	충북	043-256-450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충남	041-562-90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4층
	전북	063-232-047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
	전남	061-280-9002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304
	경북	054-850-1092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2층
	경남	055-711-135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층
제주	064-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7길 4(이도2동)	

2025년도 청소년사업 현황 및 방향

제1편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제2편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제3편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

제4편

VII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의 이해

1-1 목 적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 안전교육을 통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

1-2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안전교육), 시행규칙 제8조의3(안전교육)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규칙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수련시설 안전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 [별표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1-3 안전교육 대상

-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수련시설 종사자

2-1 청소년대상 안전교육

- 교육방법
 - 교육 실시자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 교육 대상자 :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안전교육에 포함 하여야 할 내용
 -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 시설별 안전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필요
 - 수련시설 형태 및 안전상황에 따라 시설별 안전교육 체계 마련
 - 시설별로 마련된 안전교육 내용을 시설 종사자 등이 숙지하고 시설이용자 및 참가청소년에 안내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 시 비상 대피로, 소화기 위치, 제세동기 구비 여부 및 위치, 비상 시 안내 요원 위치 등 안전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및 전문가) 실시
 - 시설 이용 시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이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하고,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교육 필요. 아울러 안전사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 형태로 시설 이용자 및 활동참가자가 수시로 안전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실시
 - 시설 상시이용자 대상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모의 훈련참여 등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각 시설별로 작성·보관

(※ 작성 시, 시설에서 교육을 행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포함하여 작성 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조치 필요)

교육	교육실시자	교육대상	실시일시	교육내용
작성예시)				
화재교육	김OO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00명	'23.3.00(수) 14:00~15:00	- 화재시 대피, 소방용품 사용법
안전교육	이OO 박OO	OO 프로그램 참가자 00명	'23.7.00(목) 16:00~16:30	- 시설 내 비상시 대처방법, 활동 중 성폭력·성희롱 대처방법

2-2 종사자대상 안전교육

○ 교육방법

- 교육실시자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교육대상자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을 통해 실시

<p>안전교육시스템(종사자 등)</p>	<p>나라배움터(공무원 대상)</p>

*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에서는 각 교육 대상·유형별(수련시설종사자 / 지역별 안전교육 / 공통안전교육 / 청소년 / 공무원·시도센터)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 또한 열린강좌 등 수시 안전교육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수강, 참여토록 독려

○ 안전교육 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교육
-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과 정 명	비 고
수련시설 종사자	청소년활동과 안전운영	'25년 신규과정
	복잡한 청소년활동 안전보험 알아보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요소 및 관리방법	
	청소년수련시설 대피훈련 운영과정	
	청소년수련시설 모험시설물·옥외구조물 안전운영 및 관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돌아보는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공통안전교육 (활동 지도자 및 청소년)	자연재난의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25년 신규과정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상적인 안전관리	
	청소년활동 이동안전(비행기, 선박, 차량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용품과 사용방법	
	마약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안전한 청소년활동 및 생활안전을 위한 해충(빈대) 예방법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청소년 국제교류 안전하게 운영하기	
청소년 대상 올바른 약물 및 의약품 사용법		
공무원, 시도센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5년 신규과정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안전(청소년용)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운영 교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제도 교육	

* 위 과정 외에도 직무교육 등을 포함, 다양한 안전교육과정이 수시 개설 중으로 적극 참여 필요

2-3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수련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 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1년(6시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 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최초 선임시
전기안전 관리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기술교육 - 3년마다 1회 특별교육 - 최초선임시 6개월 이내
위험물안전 관리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 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1시간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신규/정기(2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안전 보호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직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매년 1회(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전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매년 1회(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회(1시간) 이상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I)

2025년 1월 인쇄

2025년 1월 발행

발행인 신영숙

발행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인쇄처 중앙기획·인쇄
전화 / 02-736-2866 ~ 7
